

통일법제연구(Ⅲ)

# 北韓法律用語의 分析(Ⅱ)

- 刑事法 編 -

1996. 12. 30

研究者 : 朴相哲 (首席研究員)  
          金昌奎 (先任研究員)  
          金明淵 (先任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전』·『정치사전』·『김일성저작선집』 및 북한의 형법교과서 등에 표현되어 있는 용례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북한 형사법용어를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남·북한간의 형사법의 규범적 이질성을 감안하여 한국 형사법용어와 비교·검토를 하였으며, 부록으로 현행 북한 형사법전문과 함께 일반연구자들이 누구나 쉽게 북한 형사법용어를 찾아 볼 수 있도록 북한 형사법용어 색인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보고서가 북한법을 연구하는 분이나 통일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귀중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길 희망합니다. 이 방대한 작업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은 본원의 박상철 수석연구원과 김창규·김명연 선임연구원에게 다시 한번 치하하며, 이 연구에 많은 협력을 아끼지 않은 국민대학교의 박정원 박사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1996년 12월 30일

韓國法制研究院長  
法學博士 朴松圭

## 目次

第1章 序論 .....	9
第2章 北韓 刑事法の 概觀 .....	15
第1節 北韓 刑法 .....	15
I. 序 說 .....	15
II. 北韓 刑法의 變遷 .....	16
1. 北韓 刑法의 沿革 .....	16
2. 北韓의 1974년 刑法과 1987년 刑法의 比較 .....	19
III. 北韓 刑法의 特性 .....	20
1. 北韓 刑法의 理念 .....	20
2. 北韓 刑法의 任務 .....	21
IV. 韓國 刑法과 北韓 刑法의 比較 .....	23
V. 北韓 刑法上 人權保障의 問題點 .....	25
第2節 北韓 刑事訴訟法 .....	28
I. 北韓 刑事訴訟法の 意義 .....	28
II. 北韓 刑事訴訟法の 沿革 .....	29
III. 北韓 刑事訴訟法の 理念 .....	33
IV. 北韓 刑事訴訟法の 特性 .....	34
V. 北韓 刑事訴訟法上 人權保障의 問題點 .....	37
第3章 北韓 刑法上 用語의 概念 .....	43
第1節 刑法總則에 관한 用語의 概念 .....	43
I. 刑法의 基本에 관한 用語 .....	43
II. 犯罪 및 刑罰에 대한 一般規定에 관한 用語 .....	53
第2節 刑法各則에 관한 用語의 概念 .....	87

I. 反國家犯罪에 관한 用語	87
II. 社會主義經濟를 侵害하는 犯罪에 관한 用語	101
III. 社會主義文化를 侵害하는 犯罪에 관한 用語	128
IV. 國家의 一般行政秩序를 侵害하는 犯罪에 관한 用語	132
V. 社會主義的 共同生活秩序를 侵害하는 犯罪 등에 관한 用語	147
第4章 北韓 刑事訴訟法上 用語의 概念	153
第1節 刑事訴訟法의 一般에 관한 用語의 概念	153
I. 刑事訴訟法의 基本에 관한 用語	153
II. 刑事訴訟의 一般規定에 관한 用語	162
第2節 訴訟主體에 관한 用語의 概念	167
I. 裁判所에 관한 用語	167
II. 檢事に 관한 用語	175
III. 被訴者·辯護人에 관한 用語	178
第3節 搜查 및 豫審에 관한 用語의 概念	182
I. 搜查에 관한 用語	182
II. 豫審에 관한 用語	191
第4節 裁判 및 上訴·特別訴訟節次에 관한 用語의 概念	207
I. 裁判 및 上訴에 관한 用語	207
II. 特別訴訟節次에 관한 用語	217
〔부록 I〕 北韓의 刑事關聯 法令 立法動向	223
〔부록 II〕 現行 北韓 刑法 및 刑事訴訟法 全文	229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刑法	229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刑事訴訟法	250
北韓 刑事法上 法律用語 索引	293

## 第1章

# 序 論



## 第1章 序論

한국법제연구원의 『북한법률용어의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 시리즈는 남북한의 분단 상황을 '단순한 역사의 상흔'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그 해소과정에서 오히려 통일을 향한 충분한 준비기간으로 상정하여야 한다는 기본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북한법제의 법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법률용어는 북한 사회의 언어습관과 습속 그리고 정치·경제·사회적 현실태 및 지향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법제연구와 남북한 법제의 통합 내지 통일지향성의 목적달성에 있어서 용어분석의 정합성 여하에 따라 그 유용성을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95년에 발간한 『북한법률용어의 분석(I): 헌법편』은 『북한법률용어의 분석』시리즈의 제1차 연도 연구사업으로서 북한의 현행헌법의 법문장속에서 헌법용어를 추출하여 그 개념을 단순한 사전적 정의의 차원을 넘어서서 북한법의 체계 내지 구조속에서의 개념을 정립함과 아울러 북한헌법용어의 분단지향성·체제유지성·체제고유성·언어이질성 등을 반영하는 용어군으로 분류하여 실질적 의미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해당 용어가 속하는 헌법조항과 북한에서 간행된 『법학사전』·『조선말대사전』·『김일성저작선집』 등에 표현되어 있는 북한사용례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북한헌법용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제1장에서 북한법률용어분석의 필요성과 방향, 북한의 언어정책과 법률용어의 특징, 북한법을 보는 방법 등을 밝히고 있으며, 제2장에서 북한법제의 체계, 소군정기의 법령현황, 1948년 헌법의 특징과 하위법령현황, 1972년 헌법의 특징과 하위법령현황, 1992년 헌법의 특징과 하위법령현황을 소개하고 있고, 제3장에서 북한헌법용어의 특징과 개념규명의 원칙, 북한헌법용어를 근본원칙편·공민권편·국가기관편으로 나누어 개념규명하였으며 제4장에서 남북한헌법용어의 체계화를 검토함으로써 북한사회를 법제적 차원에서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도 형사법이라는 연구범주를 달리할 뿐 구체적인 분석 방법과 연구의 한계 또한 헌법편과 대동소이하다.<sup>1)</sup> 북한법제 중 형사관련 분야는<sup>2)</sup> 1950년에 기본법에 해당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이 제정되면서 『벌금에 관한 규정(1972.4.17)』, 『신소·청원 및 검열에 관한 규정(1970.2.3)』, 『판결, 판정의 집행에 관한 규정(1956.9.25)』, 『검찰기관에 관한 규정(1961.8.23)』 등 상당히 체계적인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는 1950년의 북한 형법 제7조에서 '죄의 정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침해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가벌적 행위'라고 규정한 것 처럼 형사관련 분야의 입법정비를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시하였던 것에서 연유한 것이다.

당시 북한 형법은 사회주의법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법으로서, 한국의 형법과는 그 입법목적이나 체계 등 모든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상반되고 있다. 한국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의 금지가 북한의 형법이론에서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는 봉건을 반대하여 투쟁한 부르주아지에 의하여 고안된 것이다. 부르주아지 형법학자들은 그것이 마치 지배계급의 전횡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며 판사를 말하는 기계로 만들고,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대헌장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라고 반박<sup>3)</sup>하면서 유추해석을 『사회적 위험행위가 수행된 이상 그에 해당하는 형식적인 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와 유사한 행위의 형태들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sup>4)</sup>,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있어

1) 자세한 내용은 박상철·김창규, 『북한법률용어의 분석(I)』: 헌법편(한국법제연구원, 1995), 11~29면 참조.

2) 북한의 형사관련법 분야의 연혁목록은 이 보고서의 [부록 I : 북한형사관련법령 입법동향] 참조.

3) 한락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무기로서의 공화국 형법", 『공화국 법은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평양: 사회과학원 출판사, 1955), 83면.



서도 一事不再理의 원칙에 폭넓은 예외규정을 두는 등 한국과는 상이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형사법의 특징은 1972년 소위 주체헌법 제정이후 더욱 단선적인 발전과정에 진입하게 되는데, 1974년 형법에 있어서는 1950년 형법과 비교하여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주의 형법의 주요특징과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다만 주체사상을 그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그 차이점을 드러낸다.<sup>5)</sup> 한편 북한의 1974년 형법은 1987년에 다시 개정되는데, 이는 이른 바 『주체의 형법리론』이 강조되고, 김정일의 주도하에 사회주의법무생활이 강화되어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법의 준수·집행에 관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 『형사소송법』의 경우 1950년에 제정된 이후 2차(1975년 1월 10일과 1992년 1월 15일)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이는 개략적으로 주체사상의 이념적 무장(1975년 형사소송법)과 그와 반대로 1990년대의 탈이데올로기라는 세계적 추세<sup>6)</sup>에 발 맞춰 명목상의 변화를 추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의 주요내용이 북한형사법상의 법률용어 분석에 있으므로 우선 현행 1987년 북한형법과 1992년 북한형사소송법상 법률용어 등을 관계조항과 용례를 주요자료로 하여 개념규정하고 향후 남북한 형사법의 법률용어 체계화를 위한 사전검토로서 한국 형사법상 용어들과 비교·검토를 시도한다. 이러한 분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2장에서 북한의 형사법을 간단히 개관한다.

4) 한락규, 위의 글, 82면.

5) 1974년 북한 형법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각칙의 일부만이 입수되어 있는 상황이다.

6) 大内憲昭, “朝鮮民主主義憲法”, 社會主義法研究會 編, 『아시아의社會主義法』(社會主義法研究年報 No. 9, 法律文化社, 1989), 4면.



## 第2章

# 北韓 刑事法の概観



## 第2章 北韓 刑事法の 概觀

### 第1節 北韓 刑法

#### I. 序 說

일반적으로 형법은 사회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북한 형법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북한 형법에 대해 정치적 색채가 짙은 이데올로기법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것을 잘 대변하는 말이다. 북한의 형사법제의 실제와 관련하여 북한인권의 실상은 국제인권단체 등의 보고를 통해 그 열악한 현실이 전해지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1995년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자유도'(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 관하여 최하인 7점으로 평가하고 비자유국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북한에서 자유권적 기본권 상황의 열악성을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하다. 그간 탈북자 및 귀순자 등의 증언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 등의 보고 및 평가는 북한이 인권사각지대이며, 북한의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해 왔다.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확인되었듯이 북한에서는 비인도적인 공개적인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바 '인민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공개처형은 일반형사범뿐만 아니라 '정치범수용소'에서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짐으로써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북한인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단면에 불과하다. 이 같은 행위가 자행될 수 있는 배경은 바로 북한의 형사법제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북한 형법은 체제유지와 강화수단으로 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북한 형법의 용어분석을 위해 기본적인 북한 형법의 본질과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북

한 형법의 발전에 관하여 형법사를 개관하고, 1987년형법의 내용을 1974년 형법과 비교하여 본다. 다음 북한 형법의 이념과 기본원칙을 간략하게 살피고, 한국의 형법과 비교한다. 그리고 북한 형법의 문제점을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 II. 北韓 刑法의 變遷

### 1. 北韓 刑法의 沿革

북한 형법은 이전의 개별적 형사법령<sup>7)</sup>을 체계화·통일화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1950.3.3)에서 처음 채택되었다. 이 법은 사회주의로의 과도기단계에서 이른 바 인민정권의 공고화와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소련의 1926년 형법을 모방하였다.<sup>8)</sup> 이 형법은 1974년 개정되었는데(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1974.12.19 이하에서는 1974년 형법이라고 함), 형식적으로는 1972년 헌법의 채택에 따른 법제정비의 일환이었으며, 실질적으로는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 및 '조선로동당'의 독재체제를 고착시키고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1974년 형법은 외부에 공포되지 않음으로써 그 비민주성·반인권성 내지 반통일성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sup>9)</sup> 1974년 형법은 1987년에 다시 개정되었는데(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 1987.2.5 이하에서는 1987년 형법이라고 함), 이는 이른 바 '주체의 형법리론'이 강조되고, 김정일의 주도하에 사회주의법무생활이 강화되어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법의 준수·집행에 관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7) 북한형법의 법원과 그 연원에 관해서는 김일수, "북한형법의 체계와 특색", 『북한법의 체계와 특색』(세종연구소, 1994), 176~186면.

8) 김일수, "북한형법 40년", 『북한법률행정논총』, 제8집(고려대 법학연구소, 1990), 60~77면.

9) 이에 관해서는 김일수, 위의 논문, 77~91면; 김일수, "구소련 형법이 북한형법의 변화에 미친 영향", 『북한법률행정논총』, 제9집(고려대 법학연구소, 1992), 266~277면; 북한연구소, 『북한형법의 실상』(1990), 17~106면.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sup>10)</sup>

북한의 1950년·1974년 및 1987년 형법전의 규정체계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다.

[북한의 1950년·1974년 및 1987년 형법전의 규정체계]

1987년 형법전 (8장 161조개조로 구성)	1974년 형법전 (5편17장 215개조로 구성)	1950년 형법전 (2편 23장 301개조로 구성)
제1장 형법의 기본 (제1조~제8조) 제2장 범죄 및 형벌에 대한 일반규정 제1절 범죄(제9조~제20조) 제2절 형벌(제21조~제43조) 제3장 반국가범죄 제1절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 (제44조~제51조) 제2절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제52조~제53조) 제3절 반국가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죄 (제54조~제55조) 제4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제1절 사회주의적 소유를 침해하는 범죄 (제56조-제65조) 제2절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66조-제83조) 제3절 국토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84조-제9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혁명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주권적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범죄 (제51조~제62조)</li> <li>· 조선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반혁명범죄 (제63조~제64조)</li> <li>· 반혁명범죄와의 투쟁을 반대하는 죄 (제65조~제66조)</li> </ul> </li> <li>● 사회주의적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의적 소유를 침해하는 범죄 (제67조~제76조)</li> <li>·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77조~제96조)</li> <li>· 국토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97조~제104조)</li> <li>· 사회주의로동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105조~제110조)</li> </ul> </li> <li>●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하는 범죄 (제111조~제117조)</li> </ul>	제1편 총론 제1장 일반적 규정 (제1조~제6조) 제2장 형사정책의 일반원칙 (제7조~제17조) 제3장 예비와 미수 (제18조~제12조) 제4장 공 범 (제22조~제26조) 제5장 형벌 (제27조~제45조) 제6장 형벌의 적용절차 (제46조~제49조) 제7장 범죄의 병합 (제50조~제52조) 제8장 집행유예 (제53조~제55조) 제9장 만기전 석방 (제56조~제58조) 제10장 형사소추의 시효 (제59조~제60조) 제11장 사면 (제61조) 제12장 전과의 소멸 (제62조~제63조)

10) 김일수, "구소련형법이 북한형법의 변화에 미친 영향", 앞의 책, 278~281면 ;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Ⅱ) : 형사관계법』(법무자료 제169집, 1993), 123~131면.

1987년 형법전 (8장 161개조로 구성)	1974년 형법전 (5편17장 215개조로 구성)	1950년 형법전 (2편 23장 301개조로 구성)
<p>제4절 사회주의노동행정 질서를 침해하는 범 죄 (제92조-제96조)</p> <p>제5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 하는 범죄 (제97조-제102조)</p> <p>제6장 국가의 일반행정질서 를침해하는 범죄</p> <p>제1절 일반행정질서를 침 해하는 범죄 (제103조-제123조)</p> <p>제2절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 (제124조-제130조)</p> <p>제7장 사회주의적 공동생활 을 침해하는 범죄 (제131조-제140조)</p> <p>제8장 국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p> <p>제1절 국민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 (제141조-제154조)</p> <p>제2절 국민의 개인소유를 침해하는 범죄 (제155조-제161조)</p>	<p>● 국가의 행정질서를 침해하 는 범죄 · 국가의 행정질서 일반을 침해하는 범죄 (제118조~제123조)</p> <p>· 국민의 국방상의 의무위 반죄 (제124조~제130조)</p> <p>· 국가·군사비밀보호질서 침해죄 (제131조~제132조)</p> <p>· 국경출입·항해질서 침해죄 (제133조~제136조)</p> <p>· 범죄와 투쟁을 저해하는 죄 (제137조~제140조)</p> <p>· 관리책임자의 직무상의 범죄 (제141조~제148조)</p> <p>● 사회주의적 공동생활 질서 를 침해하는 범죄 (제149조~제159조)</p> <p>● 국민의 생명, 재산을 침해 하는 범죄 · 국민의 생명, 건강, 인격 을 침해하는 범죄 (제160조~제173조)</p> <p>· 국민의 개인 소유를 침해 하는 범죄 (제174조~제180조)</p>	<p>제2편 각론</p> <p>제13장 국가주권적대에 관 한 죄 (제64조~제81조)</p> <p>제14장 국가관리침해에 관한 죄 (제82조~제102조)</p> <p>제15장 국가소유, 사회 및 협동단체소유침해에 대한 죄 (제103조~제111조)</p> <p>제16장 인격침해에 관한 죄 (제112조~제146조)</p> <p>제17장 국민의 재산침해에 관 한 죄 (제147조~제167조)</p> <p>제18장 로동법령위반에 관한 죄 (제168조~제177조)</p> <p>제19장 공무상의 범죄 (제178조~제193조)</p> <p>제20장 경제에 관한 죄 (제194조~제217조)</p> <p>제21장 관리질서침해에 관한 죄 (제218조~제258조)</p> <p>제22장 사회적 안전 및 인민 보건침해에 관한 죄 (제259조~제264조)</p> <p>제23장 군사상의 범죄 (제265조~제301조)</p>



## 2. 北韓의 1974년 刑法과 1987년 刑法의 比較

1987년 형법을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1974년 형법과 비교하여 간략하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 형법의 비교를 통하여 북한 형법의 변천과 그 실재를 엿볼 수 있다.

첫째, 형법의 임무에 관한 규정이다. 1974년 형법은 형법의 임무에 대해 주석보위, 정부의 노선과 정책옹호관철, 전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에의 기여 등으로 명시하고 있었다(동법 제4조). 1987년 형법은 이 규정을 삭제하고 단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여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에 있다고 규정(동법 제1조)함으로써 1974년 형법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순화시키고 있다.<sup>11)</sup>

둘째, ‘반혁명적 범죄’를 ‘반국가범죄’로 변경하였다. 이른 바 계급적 ‘원췌’들에 대한 계급적 투쟁과 철저한 진압을 목적으로 한 ‘반혁명적 범죄’(1974년 형법 제51조 내지 제66조)를 ‘반국가범죄’(1987년 형법 제44조 내지 제55조)로 변경함으로써 형법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완화하고, 국가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규범으로 발전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sup>12)</sup>

셋째, 1974년 형법상 총론에 두었던 ‘형사정책의 기본’이란 편을 삭제하고 ‘국가의 로동계급적원칙 견지와 사회적교양 위주의 법적제재’(동법 제2조)라는 형사정책상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범죄자의 처벌에 있어서 법적 제재와 사회적 교양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교양으로 개조할 수 없는 자들에 한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형사정책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sup>13)</sup>

11) 김일수, 위의 논문, 281면.

12) 김일수, 위의 논문, 291~292면.

13) 김일수, 위의 논문, 282면 ; 법무부, 앞의 책, 335~342면. 북한형법과 형사정책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김일수, “북한형법상 형사정책의 방향과 그 변천”,

넷째, 비민주적인 요소로 지적되어온 형벌법규의 유추적용제도에 관하여 1987년 형법은 형벌법규의 유추해석을 형법적용의 기본원칙으로 표명하되, 그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운영상의 한계를 두고 있다(동법 제10조).<sup>14)</sup>

다섯째, 형벌의 종류를 사형, 노동교화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정지형 등으로 정하였는데, 종전 사회적 교양위주의 형벌로 강조되었던 교화로동형을 폐지하고 징역형은 노동교화형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개별적인 범죄구성요건에서 법정형량을 상당히 완화시키고 있다.

### Ⅲ. 北韓 刑法의 特性

#### 1. 北韓 刑法의 理念

북한 형법은 사회주의법이 이른 바 '사회주의 법칙성'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법은 사회경제제도의 반영이며, 정치의 한 표현양식이고, 일정한 사회경제제도와 계급투쟁을 떠난 법이란 있을 수 없다"는 김일성의 교시를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서 북한 형법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경제제도와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체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이익을 순수하게 반영하기 보다 김일성의 교시와 법사상을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래의 사회주의 이념과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에서 강조하는 주체사상의 독창성에 따른 것이다. 주지하는 것과 같이 주체사상은 북한에서 당과 국가, 혁명과 건설의 지도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법의 영역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를 토대로 북한 형법의 기본이념을 간략하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법의 기본이념은 계급적 본질에 두고 있다. 북한 형법의 출발은

『북한법률행정논총』, 제10집(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 188~201면.

14) 그러나 유추적용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축성있는 개념으로 구성된 제9조의 범죄개념과 결합될 때 그 한계는 쉽게 일탈할 여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급투쟁의 개시를 의미하며 그 제정목적도 계급투쟁에서의 승리에 두고 있다. 여기서 법의 계급적 본질은 그 법이 어떤 계급의 의사, 정치를 표현하며 옹호하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북한에서는 형법은 수령이 영도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노동계급의 정치, 전체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를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사회주의 형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형법은 철저하게 노동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는 법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로써 본질을 가진 법이라는 것이다. 북한 형법의 계급적 본질은 반혁명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함으로써 표현되고, 일반범죄자들을 제재함으로써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고 한다.

둘째, 혁명전통의 계승에 이념적 기초를 두고 있다. 이른 바, 김일성의 항일빨치산투쟁의 혁명정신이 북한 형법의 혁명적 성격을 규정하는 토대가 된다. 이 혁명전통에 의해 당과 인민은 해방후 일제의 식민지 형사악법들을 청산하고, 인민의 이익에 맞는 혁명적인 형법을 제정할 수 있었으며, 이것을 주체적인 사회주의 형법으로 강화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 형법에 규정된 당의 형사정책의 요구, 형법상 원칙과 제도들은 바로 혁명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반혁명범죄를 비롯한 온갖 범죄와의 투쟁을 강화하여 혁명의 전통이론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 2. 北韓 刑法의 任務

북한 형법은 제1조에서 “형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74년 형법이 제4조에서 규정한 형법의 임무에 비해 내용상 상당히 순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74년 형법이 형법의 임무로 ① 주석에 대한 정치사상적 옹호·보위, ② 당의 노선과 정책의 옹호·관철, ③ 모든 범죄의 침해로부터 노동자·농민주권 및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적 소유를 비롯한 혁명적 전취물의 보호, ④ 범죄적 침해로부터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의 보호, ⑤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의 엄격한

제도·질서수립 및 온 세상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혁명적 규율의 강화 등을 규정하였던 것에 대하여, 1987년 형법은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의 보위, 인민들의 자주적·창조적 생활보장만을 형법의 임무로 규정하여 그 내용을 크게 단순화하고 있다.

북한 형법의 임무규정에서 주체사상의 강화에 관한 대목이 삭제되었는데, 이를 두고 북한 형법이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임무를 배제한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지도사상이며, 1992년 북한 헌법에도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체사상의 구현이란 북한 형법상 근본사명이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 형법상 기본원칙에 관하여 1987년 형법상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정책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국가는 범죄와의 투쟁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한다”(동법 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반혁명범죄가 폐지되고 반혁명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기본노선 대신 종전의 일반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의 기본노선만을 형사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한 것이다.

둘째, 형사정책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는 모든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동법 제3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준법교양과 대중노선에 입각한 사상투쟁과 군중적 투쟁의 내용을 입법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형벌양정의 일반원칙으로서 “국가는 범죄행위의 엄중성 정도와 범죄자의 개준성 정도를 고려하여 매 범죄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한다”(동법 제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형벌양정은 높은 정치사상성을 요구하는 활동이며, 법을 지탱하는 사법일군들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 당이 요구하는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수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sup>15)</sup> 이 규정은 바로 이러한 활동에 대한 규범적 준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민족반역자라고 하더라도 조국통일을 위해 적극 나서는 경우 과거를 불문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규정(동법 제5조)은 사상투쟁의 정책노선에 형법규범이 갖는 동원기능을 고려하여 규정한 상징적 조항이라 할 수 있다.<sup>15)</sup>

다섯째, 자수에 관하여 “국가는 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죄행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자수한 자에 대하여서는 관대히 용서한다”(동법 제6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자수에 대한 용서는 범죄자로 하여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는데 자극을 주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행위시법원칙과 소급법금지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 범죄행위를 수행한 당시의 형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종전 형법에서 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죄로 보지 않거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종전 법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동법 제8조)는 것이다. 이것은 형사책임을 지우는데 있어서 행위시와 재판시와의 사이에 형벌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이른 바 ‘행위시법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법의 효력불소급의 원칙에 의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하나의 근간의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IV. 韓國 刑法과 北韓 刑法의 比較

형법이 일반적으로 체제방어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과 북한의 상이한 이념과 체제하에서 한국과 북한의 형법의 체계와 운용의 차이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 형법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토대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통제를 위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주의 등을 기본적인 특성으로 하고 있는 반면 북한 형법은 사회주의와

15) 김근식, 『형법학 2』(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1986), 174면.

16) 김일수, “북한형법의 체계와 특색”, 앞의 책, 209면.

프로레타리아 혁명사상을 이념적 출발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주의교육을 위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실현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형법이 법치국가 이념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가치체계를 보호할 목적하에 사회체제내에서 승인된 법익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삼고 있는데 비해, 북한 형법은 사회주의적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본질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알 수 있다.

한국 형법과 북한 형법의 차이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7)</sup>

첫째, 한국 형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보루로서 죄형법정주의를 형법해석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데 비해, 북한 형법은 형벌법규의 유추해석을 형법해석의 전제로 삼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을 부정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 위험성을 범죄의 실질적 성립요건으로 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범죄와 형벌을 정한다는 구성요건의 의의를 무시하고 있다.

둘째, 한국 형법이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을 위법성의 추정 내지 징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비해, 북한 형법상 구성요건은 범죄성립요건의 구성요소로서 “일정한 행위를 특징짓는 객관적 및 주관적 표징의 총체”로 이해하고 있다.

셋째, 한국 형법은 미수를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로 구분하고 불능미수의 개념을 인정하고 미수범의 형을 기수에 비해 형을 감면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 형법은 준비(예비)와 미수를 기수의 경우와 동일한 조항에 의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완성의 단계에 따라 각각 형식적으로 차등하여 처벌하는 근대형사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넷째, 한국 형법이 공범에 관해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으로 구별하고 방조범의 경우 형을 감경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 형법은 공범에 관해 형식적인 구분만을 하고 있을 뿐이고 공범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17) 남북한 형법의 비교에 대해서는 법무부, 앞의 책, 1063면 이하 『남북한 형법의 비교』 참고.

다섯째, 한국 형법은 형벌을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그의 책임을 전제로 과하는 법익박탈로 이해하는 토대위에 형벌의 본질을 해악에 대한 응보,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내지 특별예방의 목적이 고려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 형법은 형벌을 공산주의 및 전체주의 형법에 대한 도구주의적 관점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전체주의 체제구축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

여섯째, 북한 형법은 그 규정이 불명확하고 다의적이고 추상적·포괄적인 경우가 많아 형법의 해석적용에서 자의적인 운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 형법은 계급적 본질론과 혁명적 사명론에 의해 이념적으로 각색되어 있으며, 권력체제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형법의 기본인 죄형법정주의와 개인책임주의는 부정되고 있다는 점이 한국과 북한 형법의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1987년 형법이 범죄종류의 축소, 형벌의 완화 등 1974년 형법상 비민주적인 요소를 완화하였지만, 여전히 근대 형사법원리와 거리가 먼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 V. 北韓 刑法上 人權保障의 問題點

북한이 1987년에 형법을 개정한 것은 1974년 형법에 대한 이른바 정치형법 또는 반통일적 형법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것과 같이 종전에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띠었던 ‘반혁명범죄’를 ‘반국가범죄’로 용어를 바꾸고, 비민주적인 요소로 지목되어 온 유추적용제도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등 개선된 입법태도를 보인 것에서 그러한 의도를 알 수 있다.<sup>18)</sup> 그러나 1987년 형법도 인권침해적 요소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북한 형법의 인권보장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sup>19)</sup>

18) 북한형법의 개정내용에 관해서는 박광섭, “북한형사법령의 변천과정”, 『북한 연구』, 제1권 2호(대륙연구소, 1990 겨울), 56~87면; 김일수, “북한형법 40년”, 앞의 책, 57~94면; 김일수, “구소련형법이 북한형법의 변화에 미친 영향”, 앞의 책, 259~300면; 법무부, 앞의 책, 28~49면, 159~191면.

(1) 입법기술적인 면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이 애매모호하고, 그 용어도 추상적이며 포괄적이어서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법집행기관의 자의에 따라 형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형사절차법과 실체법이 혼재하고 규범과 사실이 혼동되는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다.<sup>20)</sup>

(2) 범죄론적인 면에서 다음의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비록 제도운영상의 한계를 두었지만 형벌법규의 유추적용을 표명한 것(동법 제10조)은 형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죄형법정주의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그것은 범죄의 신축적 적용을 규정한 제9조와 결합할 때 유추적용금지를 일탈할 수 있는 소지가 마련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형법이 계급적 투쟁의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편의적 장치로 전락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1)</sup>

둘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만을 사회적 위험성이 배제되는 사유로 규정하고(동법 제13조, 제14조), 그 밖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학설에 의존하는 것은 위법성조각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자의와 독단에 의한 형벌의 남용가능성을 크게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모든 형법상의 범죄에 대하여 과실범의 성립을 인정하며(동법 제9조), 예비와 미수에 대해 기수와 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하고(동법 제15조), 공범에 대한 양형판단을 정범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동법 제18조)들은 편의적 형벌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을 벗어나는 위험한 발상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은닉범, 불신고범, 방임범의 처벌규정을 두고(동법 제54조, 제55조), ‘반국가범죄’의 경우 이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연좌형벌을 제도화한 것으로 북한 형법의 전근대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19) 북한 형법의 제도적 문제점에 관해서는 장명봉,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본 북한인권”, 『북한인권의 이해』(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273~277면.

20) 법무부, 앞의 책, 186~187면.

21) 김일수, “구소련형법이 북한형법의 변화에 미친 영향”, 앞의 책, 286면; 박동희, “북한의 새 형법”, 『북한연구』, 제4권 4호(대륙연구소, 1993 겨울), 72면.



할 수 있다.22)

(3) 형벌론적인 면에서도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법을 지배의 도구로 보고 형벌의 의의를 개인의 기본권보장에 두기 보다는 전체주의적 질서유지에 두고 있다. 특히 ‘반국가범죄’에 대하여는 사형이 일반화되어 있고(동법 제44조, 제45조, 제52조), 그 법정형도가 혹하다. 사실 북한의 형사법은 제1차적 기능을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의 보위를 위한 수단으로 봄으로써 시민과 사회의 이익보호 및 인권보호기능은 부차적일 수 밖에 없다. 개정된 1987년 형법과 1992년 형소법이 과거보다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 인권보호적 측면을 강화한 듯이 보이지만, 그 실체는 그렇지 않음을 북한인권실상이 잘 증명하고 있다.23) 이렇듯 반국가범죄에 대해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북한주민에 대해 반국가범죄에 관한 예방적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결국 북한의 전체주의적 질서유지에 큰 의미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에서 형벌의 의의는 반국가범죄의 진압과 일반범죄의 제재를 목적으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이며 당정책의 구현수단이라고 설명된다. 그래서 형벌을 지배의 도구로 보고, 형벌의 의의를 개인의 기본권보장에 두기보다 전체주의적 질서유지에 두고 있다. 여기서 북한은 형벌의 기능을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의 보위를 위한 수단으로 봄으로써 자유민주국가의 형법이 갖는 시민과 사회의 이익보호 및 인권보호기능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유추해석의 허용,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등에 의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적인 부정은 근대 법치국가의 형법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22) 박광섭, “북한형법에 관한 고찰”, 『북한의 법과 법이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8), 216~217면, 237~238면.

23) 법무부, 앞의 책, 190~191면; 북한연구소, 『북한의 개정형사소송법 개요』(1992), 9~35면.

## 第2節 北韓 刑事訴訟法

### I. 北韓 刑事訴訟法の 意義

북한에서 형사소송법은 재판소의 조직과 그 활동의 헌법상 원칙에 기초하여 재판활동의 한 분야로서 형사재판분야를 규제하는 부문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제7조에서 “수사, 예심, 검찰, 재판기관들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취급과 처리는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방법, 절차에 따라 한다”라고 규정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예심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형사절차를 규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그러나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그 의의와 이념에 있어 자유민주국가의 형사소송법과 다르다. 무엇보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이 자유민주국가의 그것처럼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절차의 보호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역시 북한의 법의 기능과 개념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연유한다. 북한의 형사소송법도 북한에서의 법의 기능에 따르면, 김일성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정책을 표현한 하나의 부문법에 불과한 것으로 북한의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기 위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제1조에서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민의 생활보장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보다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의 보위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1992년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의 형사소송법과 공통성을 갖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이념과 구체적인 형사절차 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1992년 형사소송법은

24) 법무부, 앞의 책, 559~560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종래의 형사소송법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몇가지 면에서 자유민주국가의 형사소송법과 같은 본래적 의미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다.

## II. 北韓 刑事訴訟法の 沿革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북한 형법과 함께 채택(1950.3.3)되면서 각 개별 법령과 포고 등을 통해 시행돼온 형사소송절차를 체계화하였다. 이 법은 1954년 부분 개정되었으며, 197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의해 다시 개정되었다. 1976년 형사소송법은 1974년 형법과 마찬가지로 1972년 사회주의헌법의 채택에 따른 현실변화를 반영한 것이었으며, 형사소송절차와 사법제도를 체제강화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로서 재판 기관 및 검찰기관의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고 입법한 것이었다. 그래서 1976년 형사소송법은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 자백의 증명력제한 등의 규정 미비,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미분리로 인해 재판소의 직권에 의한 형사절차개시 허용 등 형사절차상 전근대적인 요소를 내포하거나 제도적 미비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 법은 糾問主義的이고 후진적이고 인권을 도외시한 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sup>25)</sup> 이에 북한은 탈이념의 세계사적 조류에 부응하고 전근대적 형사법에 대한 대외의 비난을 의식하여 1992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에 의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바로 형사소송법이라는 명칭하의 법전을 말하는 것으로 북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형사절차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형사소송법은 북한 형사소송절차의 기본법원이 된다. 총 10장 305개조문으로 구성된 현행 북한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소, 검찰소, 예심원 및 피소자 등 소송관계자들의 활동방법과 수사, 예심, 소송 등이 진행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25) 북한연구소, 앞의 책, 6면.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2년의 현행 북한 형사소송법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노동계급적 원칙과 균중노선을 견지하여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전히 전근대적이며, 비민주적인 성격의 형사소송법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의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장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등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현행 형사소송법은 종래 후진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에서 일부 벗어나 인권보장 및 제도적 측면에서 보다 개선된 점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sup>26)</sup> 구체적으로 구법에 비해 발전된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sup>27)</sup>

첫째, 형사소송법의 인권보장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즉, “형사소송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동법 제1조)라고 하여 이 법의 보호적 성격을 강조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동법 제1조 후단)한다고 하고, “형사사건의 취급처리활동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동법 제4조)한다고 하여 개인의 인권보장을 선언함으로써 그 보장적 성격도 강화하였다. 게다가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데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한다”(동법 제6조)고 규정하여 형사사건처리에 있어서의 개방적·현대적인 발전면모를 보여주었다.<sup>28)</sup>

둘째, 교양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즉, 국가는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 교양을 위주”(동법 제3조)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형사소송법이 범죄인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사회주의법질서와 가치를 지키고 존중하도록 하는 교양적 성격을 강화하였다.<sup>29)</sup>

셋째, 증거재판주의를 강화하였다. 즉,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에 기초”(동법 제35조)하도록 하여 과학적·객관적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였다. 또한 강압적 수사에 의한 진술의 증거능력제한(동

26) 북한 형사소송법의 연혁에 관해서는 법무부, 앞의 책, 565~570면.

27) 박정원, “북한의 1992년 헌법과 최근의 입법동향”, 『북악논총』, 제14집(국민대학교 대학원, 1996), 195면.

28) 북한연구소, 앞의 책, 28~32면.

29) 법무부, 앞의 책, 575~576면.

법 제93조), 자백의 보충성요구 및 증거능력제한(동법 제94조) 등의 규정들은 인권보장 및 재판의 공정성확보라는 점에서 과거의 형사소송법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0)

넷째, 신체의 자유에 대해 제도적 보완조치를 마련하였다. 즉,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사람을 체포 또는 구류할 수 없으며, 체포시에는 48시간 내에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체포일시·이유 등을 고지해야 하며, 검사에게 법에 의하지 않은 체포·구류된 사람의 발견시 그를 즉각 석방할 의무를 부여하여(동법 제11조) 인신구속의 신중성을 명시하였다. 또한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체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죄자로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도록 명기한 것(동법 제66조)은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제도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31)

1950년의 북한 형사소송법과 1992년 현행 북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체계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1950년 및 1992년 형사소송법전의 규정체계 비교〕

1992년 형사소송법전 (10장 305개조로 구성)	1950년 형사소송법전 (25장 281개조로 구성)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제6조)	제1장 기본원칙 (제1조~제20조)
제2장 일반규정 (제7조~제34조)	제2장 재판소의 관할 (제21조~제31조)
제3장 증거 (제35조~제49조)	제3장 재판소의 구성, 소송당사자 및 배제 (제32조~제44조)
제4장 수사와 예심	제4장 증거 (제45조~제59조)
제1절 수사 (제50조~제69조)	제5장 조서 (제60조~제64조)
제2절 예심의 임무와 관할 (제70조~제79조)	제6장 기간의 계산 및 소송비용 (제65조~제73조)
제3절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 (제80조~제85조)	제7장 형사사건 제기 (제74조~제78조)
제4절 피심자심문 (제86조~제99조)	제8장 수사 (제79조~제85조)
제5절 구속처분 (제100조~제111조)	제9장 예심 (제86조~제99조)
제6절 검증과 검진 (제112조~제116조)	제10장 립심 및 신문 (제100조~113조)
제7절 감 정 (제117조~제128조)	

30) 북한연구소, 앞의 책, 32~33면.

31) 북한연구소, 앞의 책, 33~34면.

1992년 형사소송법전 (10장 305개조로 구성)	1950년 형사소송법전 (25장 281개조로 구성)
제8절 수색과 압수 (제129조~제139조) 제9절 증인신문 (제140조~제150조) 제10절 재산담보처분 (제151조~제155조) 제11절 예심종결 (제156조~제162조) 제5장 검사의 사건처리 (제163조~제168조) 제6장 변호 (제169조~제177조) 제7장 재판 제1절 재판의 임무와 관할 (제178조~제189조) 제2절 재판준비 (제190조~제201조) 제3절 재판심리 (제202조~제237조) 제4절 기소의 추가와 변경 (제238조~제241조) 제5절 판결 (제242조~제258조) 제8장 제2심재판 (제259조~제274조) 제9장 비상상소와 재심 제1절 비상상소 (제275조~제285조) 제2절 재심 (제286조~제293조) 제10장 판결·판정의 집행 (제294조~제305조)	제11장 보전처분 (제114조~126조) 제12장 증인 및 감정인의 신문 (제127조~제138조) 제13장 수색 및 압수 (제139조~제147조) 제14장 검증 및 검진 (제148조~제152조) 제15장 피심자의 정신상태 감정 (제153조~제154조) 제16장 예심종결 (제155조~제162조) 제17장 검사의 처분 (제163조~제167조) 제18장 재판소의 공판전 수속 (제169조~제174조) 제19장 공판 (제175조~제217조) 제20장 공소의 변경 및 새 피소자에 대한 기소 (제218조~제221조) 제21장 판결의 선고 (제222조~제240조) 제22장 판결 및 판정에 대한 상소 (제241조~제263조) 제23장 비상상소 (제264조~제269조) 제24장 재심 (제270조~제274조) 제25장 판결의 집행 (제275조~제281조)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그 실질적 내용이 형사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을 말한다. 여기에는 각종 포고, 결정, 규정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또한 재판소구성법과 기타 형사소송에 관한 특별법령 및 헌법의 형사소송과 관련된 다수의 규정들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sup>32)</sup>

32) 이에 관한 구체적 법령에 관해서는 법무부, 앞의 책, 565~570면.

### Ⅲ. 北韓 刑事訴訟法의 理念

북한 형사소송법의 이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의 보위이다. 사회주의 법이론에 의하면 사회주의국가론에 따라 국가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강제기구이며, 법은 이를 유지하는 질서로 기능하게 된다. 여기서 법은 정의 구현이나 이성이 가리키는 행위규범이라는 견해는 배척되고, 오직 계급사회의 산물로서 국가주권과 지배계급의 의지가 결합하여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독재하는 중요한 도구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1조에서 형사소송법이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견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에서 “국가는 공민들 속에서 준법교양과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범죄를 미리 막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특정계급의 보호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유민주국가의 형사소송법이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 및 피고인의 인권보호라는 보호적·보장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인민들에 대한 자주적·창조적 생활보장이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1조에서 “인민들의 자주적 창조적 생활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형사소송법상 계급투쟁의 이념 또는 권위주의적 국가우선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인권보장의 측면을 강화한 것으로 종래의 계급적 성격을 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와 함께 인권보장의 선언(동법 제4조), 형사사건취급처리의 과학성과 객관성·신중성의 보장선언은 북한 형사소송법상 보장적 성격의 강화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교양의 강화이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3조에서 국가는 “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교육적 성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소련 및 중국의 형사소송법상

의 형사소송의 임무를 답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소련의 형사소송법은 제2조에서 소비에트법을 올바르게 실행하도록 인민들을 교육시키고 사회주의자들의 공동생활에 관한 규칙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을 형사소송절차의 임무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또한 중국형사소송법도 제2조에서 공민이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범죄행위와 투쟁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을 형사소송법의 임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주의국가에서 형사소송법의 교육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형사소송법의 교육적 성격을 범죄인뿐만 아니라 일반공민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사회주의 법질서와 가치를 존중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3)</sup>

#### IV. 北韓 刑事訴訟法の 特性

북한 형사소송법의 내용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소송법의 적용에도 예외없이 북한법제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정치가 법에 앞서는 사회인 북한에서 법은 당의 지도에 의해 법에 대한 정치의 주도적 작용이 강화되어 있다. 더욱이 북한에서 최고 규범은 이른 바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말씀 및 이를 구체화한 당의 사법정책』이 된다. 따라서 북한 형사소송법도 그 최고법규성을 김일성의 교시 및 김정일의 말씀과 그 구현인 당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전 등에 의해 규율되는 북한의 형사재판은 북한의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함으로써 이른 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데에 기여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적대계급들의 반항과 낡은 사상잔재의 침해로부터 사회를 보위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른 바 『적과 우리 편 사이의 모순』과 『인민내부의 모순』을 구별하여 다루게 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반국가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가려내어

33) 북한연구소, 앞의 책, 28~32면; 법무부, 앞의 책, 574~576면.



극소수의 적대분자와 주동분자를 철저히 진압·분쇄하는 동시에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는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 제재를 옹계 배합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형사소송의 목적과 역할을 강조한다.<sup>34)</sup>

둘째,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1992년 형사소송법이 과학적·객관적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동법 제35조), 인신구속 등의 강제처분에 신중성을 부여하는 등(동법 제11조)의 인권보장 면에서 진일보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활동에서 강제처분시 사전에 재판소의 관여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 이에 대해 재판소는 어떠한 통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오직 검사의 지휘와 감독만을 받을 뿐이다. 따라서 인신구속은 수사기관과 예심원이 결정하고 검사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즉, 형사절차에서의 영장제도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북한의 형사소송법이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보호 보다 수사의 효율성 내지 통치의 편의위주로 운용되며, 형사소송법의 목적에서 기본적 인권보장 보다 실체적 진실발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군중재판방식을 잔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형사소송절차에는 여러 형태로 일반대중이 관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수사단계에서 증거는 군중의 힘에 의해 찾아낸다고 하고(동법 제41조), 재판단계에서 재판소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에 따라 현지재판을 조직 진행하며, 이 경우 노동자·농민의 대표가 범죄행위를 폭로 규탄하게 할 수 있고 피소자에 대한 교양책임이 있거나 해당관계자들을 참가시켜 교훈을 찾게 할 수 있다고 한다(동법 제179조, 제230조 등). 이 제도가 가능한 것은 형사소송이 재판을 통해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적인 통제와 제재를 통해 사회주의적인 가치와 질서를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를 얻고 사회주의체제에 반대하는 행위에 대한 증오심을

34) 이에 관해 자세한 것은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1996), 310~311면.

고양시켜 당의 사법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중재판은 사법부에 의한 구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절차라기 보다 북한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정치사업의 의도가 개재된 것으로 인민재판적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소송절차에 있어 전근대적인 면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형사소송절차에 손해보상청구제도를 병합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sup>35)</sup>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19조에서 범죄로 인하여 손해 또는 불이익을 받은 자는 피소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손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재판소에서 함께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미분화현상으로서 후진적인 법문화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사회주의국가의 형사소송법의 일반적 규정으로 되어 있었다.<sup>36)</sup>

다섯째, 제1심관할에 관한 분명한 관할배분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법률상 제1심 형사사건에 대하여 인민재판소·도재판소·중앙재판소는 모두 관할권을 갖는다(동법 제180조, 제181조, 제184조 등). 이것은 북한에서 재판소구성법 등을 통해 사물관할 및 심급관할의 원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1심관할의 분화와 관할에서의 변칙적인 운영은 일면 사건의 신속 내지 공정한 처리에 일부 공헌할 수 있겠지만, 상소권의 박탈이란 점에서 비민주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할제도는 피소자의 권익보호 보다 반대자의 신속한 처단이 필요한 경우 등 통치의 편의를 위한 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sup>37)</sup>

35) 이 제도는 북한의 1976년 형사소송법상 이른바 '사소제도'라고 하는데, 남한의 형사소송법상 배상명령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법제처, 『북한법제개요』(법제자료 제157집, 1991), 231~232면.

36) 구소련 형사재판절차기본법 제25조, 중국 형사소송법 제53조.

37) 법무부, 앞의 책, 584~585면.

## V. 北韓 刑事訴訟法上 人權保障의 問題點

1992년 형사소송법이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갖는 제도적인 문제점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sup>38)</sup>

첫째, 1992년 형사소송법에서 인민의 자주적·창조적 생활의 보장, 형사사건 처리활동에서의 인권보장 등의 규정(동법 제1조, 제4조)은 1976년 형사소송법에 비해 계급투쟁이념과 권위주의적·국가우선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개인의 기본권보장과 피고인의 인권보호 측면을 강조하였다. 반면 범죄와의 투쟁을 통한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의 보위(동법 제1조)와 형사사건의 처리활동에서의 노동계급적 원칙과 군중노선의 견지(동법 제2조)를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으로 규정한 것은 종래 계급적 성격에 입각한 특정계급의 보호적 입장에 따라 북한체제의 유지를 위한 지배도구로서 형사소송법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1992년 형사소송법도 1976년 형사소송법과 같이 수사일군과 예심원들의 증거조사, 구속처분, 수색·압수 등의 강제처분시 재판소의 영장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다(동법 제40조, 제100조, 제111조, 제129조). 다만, 구속처분결정에 따른 피심자 체포, 수색·압수시 검사승인의 구속처분 결정서나 수색·압수결정서의 제시(동법 제107조, 제132조)는 수사단계에서 인권침해와 신체의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수사기관인 검사에 의한 통제에 불과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재판소가 사법적 억제기능을 하는 영장제도와는 그 본질이 다른 것으로 실질적 인권보호장치로 보기 어렵다.<sup>39)</sup>

셋째, 형사소송절차는 범죄로부터 사회보호 및 인권보장보다 특정계급 및 사회주의제도의 보호라는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어 인민들에 대한 사회적 교양과 교육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사건과 직접 관련없는 일반대

38) 이에 관해서는 장명봉, 앞의 논문, 278~281면.

39) 북한연구소, 『북한의 재판제도』(1991), 56~57면.

중의 형사재판심리에의 참여(동법 제179조, 제230조), 형사사건의 취급에서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동법 제2조), 재판소의 군중에 대한 각성과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에 따라 '현지재판'의 조직진행과 이 경우 노동자·농민대표에 의한 범죄자의 죄행에 대한 폭로규탄가능(동법 제179조, 제230조) 등 형사소송절차에서 군중의 광범위한 관여가 인정되고 있다. 이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절차라기 보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옹호를 위한 정치사업의 일환으로써 행해지는 전근대적인 인민재판적 요소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40)</sup>

넷째, 통상재판소(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사이에 제1심관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도적으로 필요에 따른 도(직할시)재판소의 당해 도(직할시) 인민재판소의 관할사건의 직접 재판(동법 제181조), 필요에 따른 중앙재판소의 어떠한 재판소관할의 제1심사건에 대한 포괄적 관할권(동법 제184조) 등은 세 재판소의 제1심형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상급재판소가 하급재판소의 관할사건을 임의로 이송하게 되면, 국민의 상소권이 쉽게 박탈될 여지가 많다. 이러한 재판관할제도는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sup>41)</sup>

다섯째, 이른 바 '반국가범죄'(북한 형법 제44조~제55조)에 해당하는 정치범은 국가보위기관의 예심원이 예심하고(동법 제74조), 도(직할시)재판소가 제1심관할이 되어(동법 제181조) 일반형사범과 구분하여 취급된다. 이에 의해 사회안전기관·검찰기관 등 수사기관이 반국가범죄자를 검거했을 때에는 국가안전보위부로 그 사건이 이관된다. 정치범사건에 대한 국가안전보위부의 단독처리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북한탈출주민과 국제인권단체 등을 통해 알려져 있다.<sup>42)</sup>

40) 정동윤, "북한민사소송법의 특색과 소송절차의 개요", 『북한법률행정논총』, 제9집(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177면 ; 법무부, 앞의 책, 582면.

41) 정동윤, "북한의 재판소구성법", 『북한연구』, 제4권 4호(대륙연구소, 1993 겨울), 92~93면.

형사소송법은 구체적 범죄에 대한 형벌을 과하는 절차법이라는 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일체불가분이다. 이 점에서 북한 형사소송법은 전체주의적 질서유지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북한 형법을 구현하는 절차에 충실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한 재판소의 통제책의 미비, 사회주의 제도보위를 위한 인민에 대한 교양개조·체제반대행위에 대한 일반적 심리적 위하·당의 사법정책의 확립 등을 위한 수단으로 형사소송절차를 여기는 점 등은 북한 형사소송법이 인권보호 보다는 수사의 효율과 통치의 편의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

42) 통일원, 『북한의 인권실태』(1994. 8), pp.63~64 ;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1995(London : Amnesty International, 1995), pp. 183~184.



## 第3章

# 北韓 刑法上 用語의 概念





## 第3章 北韓 刑法上 用語의 概念

### 第1節 刑法總則에 관한 用語의 概念

#### I. 刑法의 基本에 관한 用語

##### ○ 형 법

북한 형법은 이른 바 계급적 본질론과 혁명적 사명론에 의해 이념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으며, 북한체제의 특성상 형법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와 개인책임주의의 중요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고, 북한 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정치적 무기로 이용되고 있다. 1987년 형법은 구법에 비해 '반혁명범죄'를 '반국가범죄'로 변경하고 범죄종류의 축소와 가혹한 형벌의 완화를 시도함으로써 구법의 비민주적인 성격을 순화하였지만, 여전히 형벌법규의 유추해석을 형사법해석의 전제로 삼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원칙을 부정함으로써 근대형사법원리와는 거리가 있으며, 범죄구성요건에 있어서도 사회적 위험성을 범죄의 실질적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범죄구성요건의 의의를 몰각하는 등 과거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북한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형법해석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근대법치국가, 즉 자유민주국가의 형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형법 제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p>
----------------------	---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p> <p>프로레타리아독재의 립장에서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며 그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적용하여 처벌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 공화국형법은 우리의 사회주의법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이다. 공화국형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를 구현한 우리 당의 사법정책에 기초하고 있다. 공화국형법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파괴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방해하는 반혁명분자들의 반항을 철저히 진압하며 기타 범죄자들을 징벌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강력한 무기이다.</p>
------	---

○ 범 죄

북한에서는 범죄의 개념에 대해 “국가주권과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 개념은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에 의한 형벌적용의 형사법에 예견된 일체행위와 기수에 의한 형사가별적 행위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학자들은 범죄를 “국가주권 및 사회주의제도와 근로인민대중에게 위험한 행위인 동시에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의 발전 및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제정된 사회주의법을 어기는 위법한 행위”라고 한다. 여기서 범죄성립요건은 ‘위법성과 사회적 위험성’의 존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 등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위험성’은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양정에 중심이 되는 요건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위험성’은 형사입법의 기준인 동시에 구성요건해석의 최고지침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사회적 위험성’에 기초한 범죄개념은 북한 형법상 유추해석의 허용과 연관되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퇴색시키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범죄를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회주의제도를 침해하는 위험한 행위, 또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보는 관점에서 범죄의 본질을 계급적 견

지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범죄와의 투쟁은 곧 국가와 사회를 보위하기 위한 투쟁이며 전체인민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이 된다. 그리고 계급투쟁의 역사와 관련하여 범죄도 사회발전의 역사적 과정에서 사회·경제제도의 변천에 따라 함께 변화하였다고 한다. 범죄의 개념과 범죄행위의 범위의 변화는 형사법이 생산제관계에 대한 상부구조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따라 범죄는 계급적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 이에 자유민주국가의 형법은 자본주의제도와 착취계급들에게 위협한 행위와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고 주장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형법 제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p> <p>형법 제9조 : 범죄는 국가주권과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협한 행위이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범죄는 당과 인민정권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며, 벌을 줄 수 있는 행위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착취와 압박이 청산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됨으로써 범죄를 낳게하는 사회경제적 근원이 청산되었다. 범죄는 주로 외부로부터 잠입한 간첩, 파괴, 암해분자들과 극소수의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에 의하여 감행되며 일부근로자들속에 남아 있는 사상잔재의 표현으로 나타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죄를 범하는 것 또는 형벌을 받을 정도의 결과를 빚어낸 위법행위. 국가주권과 사회제도, 법질서, 국가사회재산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범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적대분자들이 국가주권과 사회제도를 의식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를 내놓고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의 발현으로 생긴다.</p>

## ○ 로동계급적 원칙

북한에 있어 이른 바 '로동계급'은 온갖 형태의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영도하는 사회의 가장 혁명적이며 선진적인 계급이라고 한다. 또한 노동계급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장악한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된다고 한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역사적 사명은 전세계적 범위에서 온갖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인류의 이상사회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강조된다.

이에 노동계급의 계급적 요구와 이해관계의 견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관점이 강조된다. 이 관점은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관점으로, 여기서 다음의 3 가지가 중요하다고 한다. 즉, 첫째로 제기되는 문제가 노동계급에게 유리한가를 가려내는 것이며, 둘째로 모든 것을 노동계급의 근본 이익에 복무시키는 것이며, 셋째로 노동계급의 당면이익과 장래이익을 결합시키는 것 등이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사명완수는 오직 당과 수령의 영도에 의해서만 달성된다는 설명에 비추어 노동계급적 원칙 내지 관점의 강조는 결국 북한에서 노동계급의 수령의 영도에 대한 복종을 강조함으로써 이른 바 '수령의 유일 지배체제'를 전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2조 : 국가는 범죄와의 투쟁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한다.
북한용례	정치사전(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로동계급적 관점에는 로동계급의 계급적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려는 각오와 결심, 의지와 신념이 체현되어 있다.

## ○ 범죄행위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란 범죄적 의사와 범죄적 심리상태의 외부적 표현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사상과 의식은 쉽게 지각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나타난 행동을 통하여 그 사상적 입장과 태도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범죄자의 의사와 범죄적 심리상태의 외부적 표현'인 범죄행위는 범죄의 객관적 표징의 하나가 된다. 북한 형법은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범죄행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범죄의 유무를 구별하고, 그 범죄행동을 기준으로 범죄자의 사상의식상태를 측정한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범죄가능성의 위험이 있거나 향후 범죄가능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객관적인 범죄행위가 없는 이상 범죄자로 규정할 수 없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반면 경미한 경우라도 범죄의 사가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에는 범죄라 규정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범죄행위란 북한사회를 침해하려는 범죄의사가 실천에 옮겨져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거나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북한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으로는 누가(죄를 짓는 자) 어떠한 사회관계를(범죄의 객체) 어떻게 침해했으며(범죄의 객관적 측면) 그에 대한 주관적 의도는 어떠한가(범죄의 주관적 측면) 등의 4가지의 기본요소를 두고 판단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북한 형법상 구성요건 개념으로는 범죄에 의하여 침해된 사회관계를 특징짓는 표징, 범죄적 행위 및 결과를 특징짓는 객관적 표징, 범죄적 고의 또는 과실을 특징짓는 주관적 표징, 범죄자로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특징짓는 표징 등 4 가지를 들고 있다.

관계 법 조	형법 제4조 : 국가는 범죄행위의 엄중성 정도와 범죄자의 개준성 정도를 고려하여 매 범죄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기 위하여 형사법령에서 필수적으로요구하는 객관적 및 주관적 표징들의 묶음. 우리 사회를 침해하는 일종의 독소인 범죄를 과학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람의 행위인 만큼 반드시 주관적 표징들을 정확히 확정하여야 한다.

○ 형 벌

북한에서 형벌이라 함은 재판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범죄자와 그의 행동에 대하여 일정한 부정적 평가를 표시하며 범죄자를 징벌하는 국가적 강제수단으로써 형벌은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국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재판을 통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나 민사적 제재와 구별된다고 한다.

1987년 북한 형법에서 규정한 형벌의 종류는 사형, 로동교화형, 선거권 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등 다섯가지이다(동법 제21조). 1974년 북한 형법상의 형벌과 비교할 때, 종전에 형법상 사회적 교양 위주의 형벌제도로서 사회주의형법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교화로동형은 폐지되고 징역형이 로동교화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이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주형은 사형과 로동교화형이며, 부가형은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이다(동법 제22조). 이에 비해 한국 형법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의 형법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1조).

관계법조항	<p>형법 제4조 :                  국가는 범죄행위의 엄중성 정도와 범죄자의 개준성 정도를 고려하여 매 범죄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한다.</p>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형벌은 범죄자들을 징벌하기 위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실현수단이다. ……형벌은 징벌과 교양을 과업으로 하면서 범죄의 개별 및 일반 예방의 목적을 달성한다. 개별예방은 죄진자에 대한 징벌과 교양을 통하여 실현된다. 일반예방은 형사법령에 규정된 형벌 그 자체의 위협과 개별적 범죄자에 대한 형벌적용의 위협을 통하여 실현된다. 일반예방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소수 계급적 원수들과 일부 불건전한 자들이다.</p>

○ 범죄행위의 엄중성

범죄행위의 엄중성은 북한에서 형벌양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표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형의 양정에 있어서 범행의 동기·수단과 그 결과는 형벌의 양정에서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된다. 특히 범죄의 수단의 잔혹함과 교활함의 여부, 범죄계획의 대소,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 또는 피해의 경중 등이 바로 범죄행위의 엄중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4 국가는 범죄행위의 엄중성 정도와 범죄자의 개준성 정도를 고려하여 매 범죄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엄중(엄격하고 심한 것)한 특성.

○ 범죄자의 개준성

범죄행위의 엄중성과 범죄자의 개준성은 북한에서 형벌양정의 일반원칙에서 고려하여야 할 일반적 조건이다. 북한 형법은 범죄행위의 엄중성 정도와 범죄자의 개준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벌을 적용한다는 형벌양정의 일반원칙규정을 신설하였다. 북한에서 개준성은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로 먹을 가능성이나 요소라는 의미를 띤다. 이를 통해 범죄자의 개준성은 범죄 후 범죄자가 범죄에 대해 뉘우치는 등 형의 양정에 있어서 참작할 일반적 기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형법은 제4조에서 형벌양정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형의 양정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준성은 한국의 경우 '개전의 정'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4조 : 국가는 범죄행위의 엄중성 정도와 범죄자의 개준성 정도를 고려하여 매 범죄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한다.
-------	---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개준(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로 먹는 것)할 가능성이나 요소.
------	--

### ○ 조국의 통일독립

북한 형법은 민족반역행위자라고 하더라도 그 자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적극 나서는 경우라면 형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5조). 북한 형법상 이른 바 민족반역죄는 『일본과 미국의 식민지통치 밑에서 조선민족으로서 조선 인민의 민족해방운동 또는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민주주의적 운동을 의식적으로 반대하고 탄압함으로써 적에게 적극적으로 복무한 범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는 북한의 인민주권 밑에서 북한의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는 행위인 조국반역죄와 구별된다고 한다. 민족반역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최대의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형법에서도 가혹한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1974년 북한 형법은 조선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반혁명범죄(동법 제63조)로 규정하였으며, 1987년 북한 형법은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동법 제52조)로서 반국가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반역범죄를 지은 자라 하더라도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면 형을 면제하겠다는 것은 일면 통일을 보다 강조하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상투쟁의 정책노선에 형법규범이 갖는 동원기능을 고려한 상징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이 말하는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이란 이른 바 『조국통일의 3대역량』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북한에서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는 결국 3대역량의 준비에 있다고 한다. 3대혁명역량이란, 북한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혁명기지의 강화, 한국의 혁명역량강화, 조선인민과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강화를 말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국에 대한 적화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조선로동당' 규약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완수"를 당의 당면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북한은 여전히 대남적화노선을 통일의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형법 제5조 :                  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하는 행위를 감행한 자라 하더라도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p> <p>형법 제52조 :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밑에서 그와 야합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을 탄압, 박해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p>
<p>북한용례</p>	<p>김일성저작집 제19권 35면 :                  우리 조국의 통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는 결국 3대혁명의 준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우리 당은 이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p>

○ 형사책임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이란 형벌이라는 법률적 효과를 과할 수 있는 법률적 책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인 때에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각 행위에 대하여 개별화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북한에서 형사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한 기초는 범죄행위에 대한 범죄성립요건의 존재를 확정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당해행위가 범죄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형사소추를 할 수 없으며, 이미 제기된 형사소추는 유지될 수 없다. 당연히 이에 의한 소송은 기각된다. 이를 통해 범죄인은 범죄성립요건의 범위내에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형법 제5조 :                  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하는 행위를 감행한 자라 하더라도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범죄를 감행한 자가 재판절차에 따라 지는 책임. 형사책임의 구체적 형태는 징역, 교화로동 등이다.</p>

○ 외교특권

외교특권은 외교사절이 향유하는 특권을 말한다. 북한 헌법 역시 '자주·평화·친선'이라는 대외정책의 기본이념과 대외활동원칙을 규정하고,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하에 국제관계를 맺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7조). 이에 따라 북한은 외교대표들에 대한 외교특권과 특전을 인정하고 있다. 외교대표에게 불가침권과 주재국의 재판관할로부터 제외되는 권리, 면세권 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례 및 국내법에 따라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 형법은 북한내 외국인의 범죄행위에도 적용하되, 외교사절인 경우 그 형사책임은 외교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특권은 결코 주재국을 반대하는 불순한 목적에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위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외교특권을 악용하여 간첩, 파괴, 암해책동을 감행하고,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고 줄곧 비난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의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경제난타개와 관련한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자유민주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촉진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적 고립의 탈피와 경제난의 타개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방국가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이들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면에서 북한은 대외관계에서 서방국가와의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북한 UN동시가입과 대일 및 대미수교의 움직임은 북한의 대외관계에서의 변화자세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관 계 법 조 항	<p>형법 제7조 :</p> <p>이 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 밖에서 죄를 범한 우리나라 공민과 우리나라에서 죄를 범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형사책임은 그때마다 외교적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p> <p>다른 나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거나 조선공민을 침해하는 죄를 범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p>
-----------	---

북한용례	<p>정치사전(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 자기나라에 와있는 외교대표들이 직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며 그들을 존중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특별한 권리. 국제적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나라의 외교관들에게 특수한 지위와 대우를 서로 보장하여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외교특권과 특전의 내용과 범위는 국제법과 국제관례 및 주재국의 법에 의하여 결정된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외교관들이 주재국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 받는 특별한 권리.</p>
------	--

○ 범죄행위를 수행한 당시의 형법의 적용

북한은 형사책임을 지우는데 있어서 행위시와 재판시와의 사이에 형벌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이른 바 '행위시법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법의 효력불소급의 원칙에 의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근간의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형법도 형법의 효력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행위자를 보호하려는 정신을 구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관계법조	<p>형법 제8조 :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 범죄행위를 수행한 당시의 형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종전 형법에서 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죄로 보지 않거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종전 법보다 낮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p>
------	--

II. 犯罪 및 刑罰에 대한 一般規定에 관한 用語

○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는 범죄의 성립요건의 하나이다. 이 행위

는 바로 형사가벌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갖출 때에 범죄로 성립하게 된다. 북한 형법상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범죄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형벌을 수반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범죄는 불가분하게 형벌과 연결되며 '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라 범죄행위의 위험성 정도가 판단되므로 죄를 지은 자의 사회적 위험성 있는 행위에 대한 가벌성도 범죄의 본질적 표징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형법학자들은 국가와 사회, 인민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하거나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들이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형벌을 받을 정도로 위험한 행위, 즉 구체적 범죄행위를 규정한 형법규범을 어겨 형벌을 받게 되는 위험한 행위들만이 범죄로 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형사가벌성의 요건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유추해석에 의한 형법적용을 허용하고 있는 북한에서 그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9조 : 범죄는 국가주권과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제도와 법질서를 침해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해독을 끼치는 것

### ○ 고 의

북한 형법상 고의는 자기의 행위가 국가와 사회 또는 인민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면서 그 결과가 일어날 것을 희망하였거나 의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예견은 단순히 자기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이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한 결과가 위험성이 있다는 데에 대한 예견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의가 성립되려면, 행위자가 범죄의 객관적 표징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 행동이 사회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실제로 범죄자에게 '범죄의 객관적 측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기만 하면 수행된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에서 모든 책임능력자들이 교육과 대중 전달수단에 의하여 사회적 위험성과 사회적 유익성, 위법성과 적법성 등에 대해 미리 잘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모든 책임능력자는 고의적 범죄수행에 있어서 그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재판시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당연히 추정되며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자기의 행위에 대해 법률상 허용되고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행위라고 믿고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고의가 있는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는 허점이 있게 된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9조 : 범죄는 국가주권과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형법상 고의란 범죄자가 자기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예견하면서 그것을 회망하거나 그 결과의 발생을 의식적으로 허용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고의는 죄과의 한 형태이다. 고의의 본질적 측면의 하나는 범죄행위와 그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위험성 있는 결과에 대한 예견이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자기의 행위가 국가와 사회 또는 다른 공민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면서 그 결과가 일어날 것을 바라거나 의식적으로 허용하는 것. 직접고의와 간접고의가 있다.

○ 과 실

북한 형법상 과실은 자기 행동의 위험성있는 결과를 예견하면서도 그 결과발생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경솔히 기대하였거나 자기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있는 결과를 응당 예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범에 대한 처벌의 근거로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방지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 과실범에 대한 처벌의 강조는 사업과 생활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이를 준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민들에 대해 혁명적 각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한다. 예를 들면 사업과 생활에서 자기의 기술과 경험의 과신 또는 자만에 의해 규칙과 질서를 어기고 각종 사고를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강한 사상투쟁과 법적투쟁이 없이 제도와 질서를 세울 수 없고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재산파괴죄를 비롯한 일련의 범죄에 관하여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과실을 '過信的 過失'과 '不注意的 過失'로 구분하고 있다.

관계 법 조	형법 제9조 : 범죄는 국가주권과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위법행위에서 표현된 부주의 또는 과신행태의 주관적인 심리적 태도. 형법상 과실에는 과신적 과실과 부주의적 과실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행위의 결과를 응당 예견하여야 할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그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견은 하였으나 그것을 피할 수 있으리라 고 경솔히 기대하였다가 저지른 잘못.

○ 법질서

북한에서는 법질서란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공민, 국가기관 또는 사회적 조직체들이 국가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의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북한의 법질서는 정치, 경제제도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체인민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법질서와 관련하여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수단으로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실현에 복무한다는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결국 북한에서 법질서의 확립과 준수는 당의 노선과 국가의 정책을 정확하

게 관철하는 일이라고 강조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법질서의 확립과 관련하여 강조하는 준법교양과 법적 통제는 궁극적으로 북한체제의 유지와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9조 : 범죄는 국가주권과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북한용례	“사회주의 범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 우리는 법질서를 지키는데서 모범적인 사실들을 찾아내어 널리 선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아 국가의 법질서를 성실히 지켜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정치사전(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 법에 의하여 규정된 사회질서의 총체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법에 의하여 세워지는 질서, 행정질서, 재판질서, 로동질서, 재정질서 같은 것들이 있다.

○ (사회적) 위험성

북한에서 '사회적 위험성'은 범죄의 성립여부와 형벌의 양정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른 바 사회방위사상에 기반을 둔 사회적 위험성의 개념은 구소련 형법에 처음 도입되어 사회주의 형법의 모델이 되었으며, 북한 형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북한 형법상 '사회적 위험성'은 이를 규정한 개별조항에 따라 범죄자의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과 함께 범죄행위의 위험성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 양자의 의미를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은 인민민주제도의 기본 또는 법질서에 대하여 가장 위험한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치적·계급적 내용으로 충만된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회적 위험성'의 개념은 이에 기초한 범죄의 개념을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하고, 과도한 신축성과 광의성을 갖게 한다. 결국 이 개념은 사회주의체제의 유지라는 미명아래 계급성과 정치성을 띠는 추상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는 북한 형법상 범죄개념의 정립에 있어 유추해석의

허용과 함께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퇴색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범죄의 개념을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형식적 의미로 파악하는, 즉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강조하는 자유민주국가의 형법과 다른 점이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10조 :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꼭 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그와 유사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침해대상과 사회관계, 주관적 표징과 범인의 표징의 한계를 넘어 류추할 수 없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위험한 성질이나 특성 또는 위험이 나타날 요소.

### ○ 주관적 표징

북한에서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제하고 조정·통제하는 것은 사상의 식이며, 따라서 범죄행위도 범죄자의 주관적·심리적 태도를 떠난 단순한 육체적 동작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범죄자의 의사적인 행위가 된다고 본다. 따라서 '범죄적 행위'는 '범죄적 의사'를 떠나 범죄행위를 논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범죄적 고의'와 '범죄적 과실'은 범죄성립여부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주관적 표징이며, 범죄적 목적과 동기는 일정한 경우에만 범죄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임의적 주관적 표징이 된다고 한다. 북한에서 '주관적 표징'은 '범죄의 주관적 측면' 또는 '죄책'이라고 하기도 한다. 여기서 죄책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란 범죄성립요건의 평가와는 달리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판단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정치성과 결부시켜서 새로운 사회정치적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의 주관적 표징의 정도는 수행된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규정된다.

관 계 법 조 항	형법 제10조 :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꼭 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그와 유사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침해대상과 사회관계, 주관적 표징과 범인의 표징의 한계를 넘어 류추할 수 없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어떤 대상이나 현상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표식으로 되는 특징.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첫째가는 표징.

○ 류추할 수 없다

북한 형법은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을 허용하고 있다. 북한 형법상 유추해석은 “형법각론 조항에서 예견된 범죄구성요건의 표징들에 직접 부합되지 않지만, 수행된 행위가 사회적으로 위험한 경우에 현행법 가운데 가장 유사한 조항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라고 설명한다(동법 제10조 참고). 또한 이 제도는 이른 바 ‘계급적 원썩’들의 새로운 반항형태들과 투쟁하며, 현행 형사규범들의 발전가능성을 촉진하는데 존재의의가 있다고 한다.

구소련 형법에서 비롯한 사회주의국가 형법에서의 유추해석의 허용은 형법 자체를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도구로 보고 범죄와 형벌을 계급성·사상성·정치성과 결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에 근거하고, 사회주의혁명 초기에 사회주의법이론이 확립되기 이전에 입법의 미비와 법규정의 결함을 해석에 의하여 보정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주지하는 것과 같이 정치권력의 가혹한 탄압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에 따른 비난에 의해 구소련도 형법상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였다. 이에

비해 북한의 경우 1987년 형법은 1976년 형법과 달리 유추해석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여전히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을 허용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

관계법조	<p>형법 제10조 :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꼭 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그와 유사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해당 조항에서 규 칩해대상과 사회관계, 주관적 표징과 범인의 표징의 한계를 넘어 류추할 수 없다.</p>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수행된 범죄행위에 해당한 법조문이 없는 경우에 그 중요성과 종류에서 그와 비슷한 범죄를 규정한 조항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형법상 제도</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위법행위가 명백히 감행되었으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규정한 법조항이 없는 경우 그 행위와 가장 비슷한 행위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여 추궁하는 제도.</p>

○ 교양처분

북한의 교양처분제도는 한국의 보안처분제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북한 형법 제11조는 가벌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한 14세이상 17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 교양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4세이상 17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책임무능력자이다. 교양처분은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결정하지만 징벌적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형벌과 구별되며, 사회적 감독과 교양을 통하여 시정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근친자, 교육기관 또는 사회단체 등에 보호감독을 의뢰하거나 국가기관에 보내어 실시한다. 한국의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미성년범죄가 발생할 사회경제적 근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교양처분의 기준을 '사회적 위험성'에 둔다는 점에서 보면, 그 기준의 광범성과 신축성에 의해 교양처분은 그 판단기준의 적정화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한 사회방위의 명목하에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p>관계법조항</p>	<p>형법 제11조 : 범죄행위를 한 당시에 14살 이상 되는 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14살 이상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교양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p> <p>형사소송법 제13조 : 피심자, 피소자를 사회적 교양을 통하여 개조할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형벌을 주지 않고 사회적 교양에 넘길 수 있다. 사회적 교양에 넘긴 자가 형법에 규정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기간에 새로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에게 적용하였던 교양처분을 취소하고 형벌을 줄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사회주의하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재판소의 판결로 정해지는 국가적 교양대책</p>

○ 의료처분

의료처분은 북한 형법상 교양처분과 함께 보안처분제도의 하나이다. 북한 형법상 의료처분은 만성정신병, 일시적인 정신이상 등으로 자기의 행위를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위험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죄를 범한 후 그러한 병적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사회에서 격리시켜 치료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만성정신병, 일시적 정신이상 때문에 자기행위를 가리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위험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죄를 범한 후 판결당시 정신병상태에 있는 자 등은 북한 형법상 책임무능력자로 된다. 의료처분제도의 의의는 정신병자 등의 사회적

위험행위로부터 범질서를 보호하며 그들을 치료하고 교양하여 건전한 공민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한다.

북한 형법상의 의료처분제도는 한국의 경우 사회보호법상의 치료감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내용의 일치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p>관 계 법 조 항</p>	<p>형법 제12조 : 만성정신병, 일시적인 정신이상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가리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의료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죄를 범한 자가 판결을 내릴 당시에 정신병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의료처분을 적용하며 회복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술에 취하여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책임무능력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하였거나 범죄수행 후 책임무능력자로 된 자에게 재판소의 판결로 적용하는 강제치료 대책. 의료처분은 형벌이 아니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책임질 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하였거나 범죄수행 후 책임질 능력을 잃은 자에게 재판소의 판결로 적용되는 강제치료대책. 형벌이 아니다.</p>

### ○ 정당방위

북한 형법상 정당방위는 국가 및 사회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의 적법한 이익을 해치려고 공격해 오는 자에게 일정한 반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국가 및 사회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의 적법한 이익을 위급한 범죄적인 공격으로부터 방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정당방위는 긴급피난과 함께 이른 바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을 배제하는 사유'의 하나이다. 이에 의하면, 북한에서 정당방위가 허용되는 범위는 광범하다. 다시 말해 북한 형법은 국가 및 사회적 이익에 대한 정당방위를 정면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북한 형법상 정당방위가 사회주의적이며 집단주

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북한사회는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결합되어 있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이 확고하며, 집단주의적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따라서 공민들은 자기의 개인적 이익보다 국가적 이익, 집단의 이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점은 국가적 및 사회적 법익의 보호를 위한 정당방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입법태도와 다른 점이다.

<p>관 계 법 조 항</p>	<p>형법 제13조 : 형사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 및 사회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해치려는 위급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방위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지 않았다면 범죄로 되지 않는다.</p> <p>형법 제43조 :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거나 직무집행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법이 보호하는 일정한 이익이나 권리를 사회적으로 위협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행위. 정당방위는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을 배제하는 근거의 하나이다.</p>

### ○ 긴급피난

긴급피난은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위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유사하나, 긴급피난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두 이익중에서 작은 이익을 희생시키고 보다 큰 이익을 보호하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긴급대책적인 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다르다. 정당방위가 사람의 행위로 인한 절박한 침해를 막기 위해 침해자에게 반격을 가함으로써 침해될 수 있었던 이익을 보호하는것인데 비해, 긴급피난은 동물이나 자연력의 침습 또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법이 보호하는 이

익에 절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보다 작은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북한 형법학자들은 긴급피난도 정당방위와 같이 사회주의적이며 집단주의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긴급피난제도도 개인적 이익을 집단적 이익에 복종시킬 줄 아는 집단주의정신을 발양하도록 함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형법 제14조 : 형사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급한 사태를 긴급히 피하는데 그 길박에 없었으며 그렇게 한 결과 일어난 손실이 구원한 리익보다 적을 때에는 범죄로 되지 않는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법이 보호하는 두 개의 리익중 하나의 리익에 손해를 끼치어 보다 더 큰 리익에 미치는 긴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행위. 긴급피난은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을 배제하는 리유(범죄행위로 인정할 수 없는 조건)의 하나로 된다.

### ○ 기 수

어떤 행위가 일정한 형사법령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 형법상 기수범은 그 구성요건의 객관적 측면이 행위와 함께 사회적으로 위험한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는 경우(실질범), 결과발생과 관계없이 행위만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경우(형식범), 사회적으로 위험한 경우가 생길 가능성만으로 완성되는 경우 등을 구분한다. 특히 세번째 경우는 특수한 형태의 기수범으로 분류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형법 제15조 :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범죄의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범죄의 준비자와 미수자에 대한 형벌은 범죄행위의 위험성 정도, 범죄의 실현 정도, 범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 같은 것을 참작하여 정한다.
-----------	--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기수범은 수행된 행위를 범죄로 되게 하는 모든 표징들에서 불비한 것이 없는 완성된 범죄이다. 기수범의 성립여부는 형법각칙의 해당 조항에 의하여 확정된다. 기수범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은 다양한 범죄행위들에 대한 법조적용을 옳게 하며(특히 완수전 범죄활동에 대한 책임문제) 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처벌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p>
-------------	--

○ 범죄의 준비

범죄의 준비란 범죄수행에 필요한 기구 또는 수단을 찾거나 갖추거나 설치하거나 그밖의 범죄수행에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준비행위의 처벌근거는, 이 행위가 형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사회관계를 침해하지는 못하였으나 엄중한 범죄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전제조건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자 된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한국 형법상 예비개념에 해당한다.

<p>관계법조항</p>	<p>형법 제15조 :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범죄의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범죄의 준비자와 미수자에 대한 형벌은 범죄행위의 위험성 정도, 범죄의 실현 정도, 범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 같은 것을 참작하여 정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범죄실행에 필요한 조건을 만드는 행위. 이 행위는 범죄수단의 탐색, 기구의 입수, 공범자의 규합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범죄의 예비는 범죄적 의도를 실지 활동에 옮기는 첫단계의 행위이다.</p>

○ 미 수

기수가 범죄로 되는 조건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징을 다 갖춘 범죄의 완

수된 형태라고 한다면,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이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미완료미수와 완료미수로 구분된다. 전자는 범죄자가 범죄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적 기도 실현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모든 행위를 끝내지 못한 경우이며, 후자는 모든 행위를 다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형벌양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전자는 후자에 비해 그 정도가 가볍게 취급된다. 미수는 범죄의 준비와 비교할 때, 범죄의 고의를 갖고 그 고의가 외부에 표현되었으며 범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반면에 양자는 범죄실행의 착수여부에 따라 차이점이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15조 :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범죄의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범죄의 준비자와 미수자에 대한 형벌은 범죄행위의 위험성 정도, 범죄의 실현 정도, 범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 같은 것을 참작하여 정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범죄행위를 감행하는데 착수하였지만 범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사정 때문에 그것을 완수하지 못하였거나 범죄자가 피한 책동은 다하였는데 결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목적인 바를 시도하다가 이루지 못한 것.

### ○ 그만둔 범죄행위

북한 형법상 그만둔 범죄행위(자발적 중지)는 범죄활동을 시작한 자가 이미 시작한 범죄활동을 범죄를 끝내기 전에 자기의사에 기하여 중도에서 자발적으로 완전히 그만두었을 때, 그 행위가 다른 범죄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그만둔 범죄행위는 앞으로의 자기의 범죄활동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므로 어떤 유리한 조건을 바라고 정지하거나 일시 휴식할 목적으로 중단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북한에서



이 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범죄결과를 미리 막으려는 당의 형사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형법에서 채택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한국 형법상 중지범에 관한 규정(동법 제26조)에 상응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한국 형법에서 중지범은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하지만, 북한 형법상 범죄의 자발적 중지는 그 중지한 범행에 대해서만 형을 면제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또한 한국 형법의 경우 범죄의 예비·음모단계에서는 중지범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데 비해, 북한에서는 범죄의 준비단계에서의 그만둔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관계법조	형법 제16조 : 범죄행위를 감행하다가 도중에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그만둔 범죄행위에 대하여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지로 한 행위가 다른 무거운 범죄의 표징을 갖춘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범죄자가 이미 시작한 범죄활동을 자발적인 자기의사에 의하여 도중에 그만두는 행위

○ 범죄조직체

북한 형법상 공범론에서 볼 수 있는 특성의 하나로 '범죄조직체'라는 특수한 공범형태를 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범죄조직체를 공범의 한 형태로 일반화하고, 이에 가담한 주모자와 추진자를 그 조직체가 목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각기 형사처벌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는 1974년 형법에서 입법화한 것이다. 이는 구소련의 1958년 형법에서 '조직자'란 개념으로 "범죄실행을 조직하거나 그것을 지휘한 자"라고 정의한 바에 따라 범죄조직체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형법상 범죄조직체는 반국가범죄 또는 일반범죄를 감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말한다. 이는 공범중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가장 중한 처벌을 받으려 하였다. 범죄조직체는 몇사람이

공동으로 공모하여 감행하는 공범과는 달리 일정한 장기적인 목표와 당면목표를 가지고 견고성을 띤 체계적인 조직이며 사전에 규합된 조직적 집단을 의미한다. 범죄조직체의 가담자는 기망이나 강요, 협박에 의해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조직체라는 것을 안 이상 이에 해당하며, 또한 가입의사의 표명이나 절차에 따라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조직체의 구체적인 범죄적 과업을 인식하고 이를 수행하거나 범죄모의에 참가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17조 : 범죄조직체에서 주모자와 추종자는 그 조직체가 목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하며 주모자는 보다 엄격히 처벌한다.
-------	--

○ 주모자

북한 형법상 주모자란 범죄조직체를 조직하였거나 그 조직체에서 주도적인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범죄조직체의 조직자, 지휘자, 하부조직을 책임진 자, 범죄계획을 작성한 자, 범죄감행을 의식적·주동적으로 한 자, 적대계급에 속한 자, 상습적인 범죄자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범죄조직체에서 그가 직접 조직하고 지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조직체의 목적과 성격의 범위내에서 그 성원이 감행한 모든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 이 점에서 범죄조직체의 추종자 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32조 1호 :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 무겁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주모자와 주동분자인 때 형법 제17조 : 범죄조직체에서 주모자와 추종자는 그 조직체가 목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하며 주모자는 보다 엄격히 처벌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나쁜 짓을 꾸미는데서 주동이 된 자

○ 추종자

북한 형법상 추종자란 반동단체를 비롯한 범죄조직체에 가담하여 피동적인 해위를 한 자를 말한다. 주로 주모자들의 강요와 기만에 못이겨 무의식적으로 범죄조직체에 들어갔거나 피동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자, 비교적 가벼운 범죄행위를 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그가 실제로 행한 범죄행위의 범위안에서 형사책임을 진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17조 : 범죄조직체에서 주모자와 추종자는 그 조직체가 목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하며 주모자는 보다 엄격히 처벌한다. 형법 제33조 1호 : 범죄의 추종자와 피동분자인 때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범죄조직체에 가담하여 피동적 역할을 한 자. 강요에 의하여 마치 못해 따라나서 범죄행위를 한 자이다.

○ 공범

북한 형법상 공범은 두사람 이상의 범죄자들이 공동적으로 고의적 범죄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며, 범죄조직체의 형태로 나타나는 공범과 범죄조직체가 아닌 일반공범이 있다. 후자의 일반공범은 다시 범죄실행자, 추진자, 방조자로 구분된다. 이는 한국 형법상 공범이 공동정범, 교사범, 중범 등으로 구분하고, 이와 함께 간접정범을 규정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학설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북한 형법학자들은 공범의 형사책임을 묻는데 필요한 요건으로 공범의 활동과 정범자의 활동간의 인과관계 및 공범 개개인의 활동의 고의성을 들고 있다.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여러 범죄자가 고의적인 범죄수행에 의식적으로 함께 참가하여 이루어지는 범죄. 공범에는 일정한 범죄적 목적을 달성할 때 참가한 매개 사람들의 범죄행위가 같은 경우와 같지 않은 경우가 있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둘 또는 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수행에 의식적으로 함께 참가하여 이루어진 범죄 또는 그러한 범죄자.</p>
<p>관계법조</p>	<p>형법 제18조 : 범죄조직체가 아닌 공범에서 추진자, 방조자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실행자, 추진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그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행위의 위험성 정도를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지운다.</p>

○ 실행자

북한 형법상 실행자는 해당범죄의 성립요건에서 예견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직접 수행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단독범죄실행자와 공동범죄실행자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일반단독범을 처벌하는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나, 후자의 경우에는 그 형태에 따라 형사책임의 범위가 나누어진다. 다만 범죄실행자 사이에 사전 공모·결탁하지 않고 고의적 범죄를 감행하는데 참가한 '약속없는 공동범죄실행자'는 사전에 공모·결탁이 없었으므로 일반단독범으로 형사책임을 묻는다. 이에 대해 사전 공모·결탁한 공동범죄실행자는 사회적 위험성이 크므로 무겁게 처벌한다. 북한 형법상 실행자의 개념은 한국 형법상의 정범개념에 상응하는 것이다.

<p>관계법조</p>	<p>형법 제18조 : 범죄조직체가 아닌 공범에서 추진자, 방조자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실행자, 추진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그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행위의 위험성 정도를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지운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개별적 범죄구성요건에서 예견한 범죄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공범의 종류. 범죄행위를 직접 실행하는데 참가한 자를 정범자(실행자)라고 한다.</p>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무엇을 실행하는 사람.
------	---

○ 추진자

북한 형법상 '추진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반국가범죄 및 일반범죄를 감행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한 자를 말한다. 여기서 추동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감행하는데 대한 결심을 가지도록 자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 형태는 위협, 기만, 매수, 설복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으며, 어떠한 표현이든지 범죄감행에 대한 결심을 갖도록 자극하는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때 범죄실행자의 범죄행위와 추진자의 추동행위는 객관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추진자는 범죄실행자와 같은 형사책임을 지게 되지만, 형벌은 그 범죄의 가담 정도와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 정도를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관계법조	형법 제18조 : 범죄조직체가 아닌 공범에서 추진자, 방조자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실행자, 추진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그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행위의 위험성 정도를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지운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계급적 원수들과 악질범죄자들이 다른 사람을 시켜 죄를 짓게 하는 공범의 한 종류.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추동한 자. 실행자, 방조자와 함께 공범자에 속한다.

○ 방조자

북한 형법상 '방조자'란 범죄감행에 필요한 수단 또는 조건을 지어주거나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주는 등으로 범죄의 실행을 도와주는 자

를 말한다. 범죄의 실행에 직접 참가하지 않으면서 범죄감행이나 실행에 필요한 협조를 한다는 점에서 방조자는 '실행자'와 구별되고, 범죄행위에 협조한다는 점에서 '추진자'와 동일하지만 실행자로 하여금 범죄를 감행하도록 직접 자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진자'와 구별된다.

관 계 법 조 항	형법 제18조 : 범죄조직체가 아닌 공범에서 추진자, 방조자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실행자, 추진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그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행위의 위험성 정도를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지운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도와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공범의 한 종류.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거들어 도와주는 사람이나 대상.

○ 은닉범 · 불신고범 · 방임범

은닉범은 범죄가 감행된 후에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준 범 죄자로서 범행감행전이나 범죄 감행도중에 은닉에 대한 약속이 없어야 한다.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면 방조범이 된다. '은닉하는 행위'는 범죄자의 은닉이나 흔적제거 등의 적극적인 행위로써 표현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소극적인 행위로 표현되는 불신고범과 다르다. 북한 형법은 반국가범죄의 은닉범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동법 제54조), 일반범죄의 은닉범은 제1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불신고범은 범죄가 감행되었거나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해당기관에 알리지 않는 범죄자를 말한다. 북한 형법은 모든 반국가범죄에 대한 불 신고행위를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강도죄(동법 제63조), 살인죄(동법 제 141조), 개인재산강도죄(동법 제160조) 등의 경우에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임범은 범죄 또는 그 밖의 긴급한 피해를 능히 막을 수 있거나 그 침해로 인한 결과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능히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둔 범죄자를 말한다. 북한 형법은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만 방임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범항	형법 제19조 : 범죄를 감행할 당시에 관계하지 않고 범죄가 감행된 다음에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주었거나 또는 범죄가 감행되었거나 준비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은닉범 : 범죄자 또는 범죄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감추거나 없앴으로써 재판예심기관의 사업을 방해하는 범죄 방임범 : 범죄의 수행을 막을 수 있거나 막는데 필요한 대책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고 내버려둠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

○ 사 형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며, 형법에 규정된 형벌중 가장 중한 형벌이라는 의미에서 극형에 해당한다. 북한에서는 사형제도를 계급투쟁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형벌, 즉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노동계급의 단호하고 무자비한 입장과 태도를 반영한 형벌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반국가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1987년 형법은 1974년 형법에 비해 법정형을 상당히 완화하고 사형을 적용한 규정도 많이 줄임으로써 형벌의 완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범죄를 사회적 위험성에 의해 판단하고 유추해석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수와 미수에 대한 동일한 처벌, 방조범에 대한 정범과 동일한 처벌 등의 북한 형법의 특성상 법운용에 있어서 반국가범죄에 대해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에서는 군중앞에서 공개

처형에 의한 사형집행을 제도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인간적인 사형제도의 시행은 국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21조제 1호 : 사형
북한용례	<p>법학사전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반대하는 민족적 및 계급적 원수들과 악질범죄자들을 철저히 소탕하기 위하여 범죄자를 죽이는 형벌.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제국주의자들이 파견하는 간첩, 파괴암해분자들과 전복된 착취계급 및 그 잔여분자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함으로써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p>

○ 로동교화형

‘로동교화형’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인신상의 자유를 박탈하고 강한 육체적 노동을 시켜 육체적·정신적으로 일정한 고통을 주는 형벌이다. 로동교화형은 1974년 형법상 형벌의 하나인 징역형을 로동교화형으로 바꾼 것이며, 형기도 징역형이 1년 이상 20년까지의 기간이었으나, 로동교화형은 6개월부터 15년의 기간으로 단축하였다. 한국 형법상 징역형에 상응하는 개념이지만, 무기징역과 금고형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면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21조제 2호 : 로동교화형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범규범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람들을 집단적인 로동생활을 통하여 교양개조하는 것



○ 선거권박탈형

선거권박탈은 형벌의 부가형의 일종으로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을 신설하였음에도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과 노동자·농민의 주권을 반대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반국가적 적대분자에 대해 공민으로서의 최대의 정치적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이유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재판소는 반국가범죄를 재판할 때는 범죄의 성격·행위의 정도, 범죄자의 계급적 처지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박탈형선고 여부를 결정한다.

북한 형법상의 선거권박탈형은 한국 형법상의 자격상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한국 형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선고가 있으면 형벌의 효력으로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일정한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에 대하여 북한 형법은 그 중 선거권박탈만을 반국가범죄에 대한 부가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관 계 법 조	형법 제21조제3호 : 선거권박탈형 헌법 제 66조 :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

○ 재산몰수형

북한 형법상 재산몰수형은 범죄감행의 경제적 기초, 물질적 조건을 박탈하여 범죄의 길로 나서지 못하도록 강한 경고를 주자는 목적하에 설정된 형벌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북한 형법상의 재산몰수형은 대부분 반국가범죄 중 사형의 부가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범죄자의 가혹한 보복차원에서 그 가족들의 경제적 기초와 물질적 조건을 박탈한다는 일반예방적 효과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범죄자의 전재산을 몰수함으로써

무자비하고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는 북한의 재산몰수형은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국 형법상 몰수형과는 다르다.

관 계 법 조 항	형법 제21조제4호 : 재산몰수형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법위반자의 재산(물건 또는 돈)을 무상으로 국가에 넘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적 제재. 우리나라에서의 재산몰수는 형법상 재산몰수와 행정법상 재산몰수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 자격 박탈 · 자격정지형

자격박탈 · 자격정지형은 1987년 형법에서 새로이 규정한 형벌이다. 이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완전히 빼앗거나 일시적으로 빼앗는 형이다. 북한 형법상 이 형벌이 적용되는 범죄로는 오작설계시공죄(동법 제79조), 집집승방역 및 사양관리규정위반죄(동법 제81조), 교통사고죄(동법 제94조), 유치원 · 탁아소 어린이 보호관리 위반죄(동법 제99조), 의료사고죄(동법 제100조) 등을 들 수 있다.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은 그 성격상 한국 형법상 자격박탈 · 자격정지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형법은 자격박탈 · 자격정지형의 대상이 되는 자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관 계 법 조 항	형법 제21조 5호 :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처벌로써 법적 자격을 정지시키고 해당한 권리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 교화소

북한에서 형사재판을 통하여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자를 수용하는 곳이

다. 교화소는 반국가범죄자를 수용하는 정치범교화소와 일반범죄자를 수용하는 일반교화소로 구분된다고 한다. 이는 한국의 교도소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1974년 형법에 의하면 징역형, 교화노동형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교화소에 수용되었으며, 교화노동형을 선고받은 자는 이른 바 '로동교화소'에 수용되었다. 1987년 형법에서 교화노동형이 폐지된 만큼 노동교양소도는 다른 수용시설로 바뀌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북한에 정치범교화소의 존재사실은 국제사면위원회(Emnesty International)의 보고서를 통하여 대외에 알려지게 되었다. 10여개 이상의 정치범교화소의 존재는 북한에 많은 정치범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화소는 정식형사재판을 통해서 형을 선고받은 자들이 수용되는 정규시설인데 반하여, 이 밖에도 북한에는 정식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수용시설이 많이 있음은 탈북자, 귀순자 등의 증언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이들 수용시설에서의 비인도적인 대우와 비참한 실상은 북한이 인권의 사각지대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교화소 이외의 수용시설로는 이른 바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알려진 정치범수용소로서 '관리소', 69호 노동교화소, 소년교양소, 10호 위반집결소 등과 함께 이른 바 '적대군중'으로 분류된 주민들의 강제이주지인 '149호 대상지역' 등을 들 수 있다.

관계법조	형법 제24조 : 로동교화형 기간은 6개월부터 15년까지로 한다. 로동교화형은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국가와 인민앞에 죄를 짓고 징역형을 받은 자들을 구금하고 교양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국가의 국가적 시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와 인민앞에 죄를 짓고 징역형을 받은 자들을 구금하고 교양하는 기관 또는 그 시설.

○ 구 류

구류처분은 피심자에 대한 강력한 강제처분으로서 1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증거인멸, 조사방해 또는 예심이나 재판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강제처분이다(북한 형사소송법 제106조). 구류의 구속처분 결정에 따라 피심자를 체포할 때는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류의 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피심자를 구류한 기관에는 결정서 등본을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107조).

관계 법 조 항	형법 제25조 :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류되어 있는 기간은 노동교화형 기간에 계산하여 넣는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예심기관 또는 재판소가 범죄자들을 구류장에 가두어두는 강제행위. 구속의 한 종류이다. 구류는 예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피심자 또는 피소자가 증거를 없애버리거나 범죄진상의 발견을 방해하거나 예심 또는 공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을 때 한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범죄자가 범죄의 증거를 없애든지 범죄의 사실을 알 수 없게 방해하든지 예심 또는 공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을때 그를 일정한 곳에 가두는 것.

○ 형벌을 정함에 있어 무겁게 보는 조건

북한 형법은 법률상 형의 양형에 있어서 가중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형벌을 정함에 있어 무겁게 보는 조건으로는 범죄의 주모자와 주동분자인 때, 여러 번 또는 상습적으로 혹은 여럿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잔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자기의 보호밑에 있거나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전시 또는 재해상태를 이용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등이다.

북한 형법상 형을 무겁게 보는 조건은 형법각론상의 법정형의 범위내에

서 양형을 할 때 잠작할 사유로만 기능한다. 예컨대 북한에서는 법정형이 사형만으로 되어 있고 다른 형벌이나 형기의 선택가능성이 없는 경우 정상 잠작의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법정된 형벌 이외에는 다른 형벌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처단형을 도출하기 전에 선택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가중·감경하고 있는 한국 형법상의 가중·감경사유와는 그 기능에서 다르다.

관 계 법 조 항	<p>형법 제32조 :</p> <p>형벌을 정함에 있어서 무겁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범죄의 주모자와 주동분자인 때</li> <li>2. 여러 번 또는 상습적으로 혹은 여럿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li> <li>3. 잔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li> <li>4. 자기의 보호밀에 있거나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li> <li>5. 전시 또는 재해상태를 리용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li> </ol>
북한용례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p> <p>법령에서 예견한 형사책임을 가중 또는 경감하는 사유들도 개별화 원칙의 중요한 실현형식의 하나로서 형벌량정에서 고려된다.</p>

○ 주동분자, 피동분자

북한 형법에서 주동분자라고 함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주동이 되어 행동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감행하는 범죄에서 범죄를 조작하거나 추동하는 등 그 범죄활동 전반에 거쳐 주동적인 역할을 한 자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피동분자라고 함은 주동분자의 기만·위협·공갈 등에 못이겨 범행에 가담한 자를 말한다. 북한 형법에서 주동분자와 피동분자를 구별하는 의의는 일반범죄뿐만 아니라 특히 반국가범죄에서 있어 敵과 我를 구별하는 원칙(敵我識別原則)을 관철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적대분자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혁명역량을 확대강화하여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한 근본목적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범죄자들의 계급적 처지와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범죄행위에 대한 의식성 여부는 주동분자와 피동분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계급적 처지와 의식상태를 통일적으로 고찰할 때 주동분자는 사회주의제도를 의식적으로 반대하여 범죄를 조작하고 추동하는 등으로 주동적으로 활동한 적대계급분자이며, 피동분자는 적들의 마수에 걸려들어 무의식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본계급출신의 사람들이라고 한다.

<p>관계 법 조</p>	<p>형법 제32조 :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 무겁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주모자와 주동분자인 때</p> <p>형법 제33조 1호 : 범죄의 추종자와 피동분자인 때</p> <p>형법 제44조 :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하였거나 폭동에 참가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추진자, 주모자, 주동분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 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어떤 일을 하는데서 주동이 되어 행동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여럿이 공모하여 감행하는 범죄에서 범죄를 조작하거나 추동하는 등 그 범죄활동 전반에 걸쳐 주동적인 역할을 논 악질분자 주동분자들의 기만, 위협, 공갈에 못이겨 범행에 끌려들어간 사람</p>

○ 상습범

일정한 행위를 상습으로 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북한 형법은 상습범에 대한 형의 가중을 총칙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총칙에 상습범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한국의 형법과 다른 점이다. 한편 상습범과 누범은 구별하여야하는 개념인데, 북한 형법은 누범에 관하여 한국 형법과 같이 형가중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도 다른 점의 하나이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32조제2호 : 여러번 또는 상습적으로 혹은 여럿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상습적으로 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

○ 형벌을 정함에 있어 가볍게 보는 조건

북한 형법은 형벌을 양정함에 있어서 형의 감경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그 사유로는 범죄자의 추종자와 피동분자인 때, 처음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강한 정신적 자극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미성인이 죄를 범하였을 때,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 죄를 범하였을 때, 자백 또는 고백하였을 때 등이다. 여기서 초범자에 대한 형의 감경사유의 규정은 1987년 형법에서 신설한 것이다. 형의 감경사유의 규정도 형의 가중사유에 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양형을 할 때 참작할 사유로만 기능한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33조 :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자의 추종자와 피동분자인 때 2. 처음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3. 강한 정신적 자극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4. 미성인이 죄를 범하였을 때 5.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 죄를 범하였을 때 6. 자백 또는 고백하였을 때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개별화원칙은 매개 범죄자의 개별적 죄행, 범죄자의 사회적 위험성정도, 범죄의 동기 등을 확정하고 그에 알맞은 형벌을량정하는데 대한 요구이다.

○ 자 백

일반적으로 자백은 범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

실을 긍정하는 진술이라는 점에서 높은 증거가치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자백의 증거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보다 자백획득에 치중함으로써 강압수사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커지게 되었다. 이에 각국은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도 1992년 형사소송법에서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동법 제93조).

관계법조항	형법 제33조제6호 : 자백 또는 고백하였을 때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피소자, 피심자가 자기의 범죄사실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승인하면서도 정당방위 기타의 이유로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자백이 아니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해당기관이나 조직 또는 남들 앞에서 자기가 저지른 죄과나 어떤 허물에 대하여 스스로 고백하는 것 또는 그러한 고백.

○ 초과방위

북한 형법은 초과방위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형벌을 정함에 있어 가볍게 보는 조건의 하나로 들고 있다. 초과방위는 방위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것이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위험한 범죄행위로서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범죄적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수행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아 형벌을 양정함에 있어 감경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 형법상 과잉방위에 상응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33조 5호 :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 죄를 범하였을 때
-------	--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형사법상 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급한 사태를 긴급히 피하는 데 그 길 밖에 없으며 또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일어난 손실이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아 일어난 손실보다 작을 때에는 범죄로 되지 않는 방위.
------	--

○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 총체적 위험성

북한 형법도 한 범죄자가 수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를 병합범이라고 한다. 북한 형법상 병합범은 여러 개의 행위에 의해서 여러 개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경우의 실제적 병합과 하나의 행위에 의하여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인 관념적 병합으로 구분된다. 이를 한국 형법과 비교하면, 전자는 실제적 경합, 후자는 상상적 경합에 상응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 형법은 병합범을 개념상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에 있어서는 이른 바 '총체적 위험성'에 입각하여 양자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총체적 위험성의 평가란 먼저 범죄별로 해당하는 형벌을 각각 정한 다음 다시 그 범죄들의 총체적 위험성을 평가하여 그 범죄 가운데서 형벌을 가장 높이 정한 조항에 그만큼 형벌을 높이 정하고 최종적으로 그 조항의 형벌을 정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36조 :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개의 죄를 함께 재판할 경우에는 매개 범죄별로 해당하는 형벌을 정한 다음 범죄의 총체적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범죄들 가운데서 형벌을 가장 높이 정한 조항의 형벌에 처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한꺼번에 재판해야 할 한 범죄자의 여러 개의 범죄행위. 공화국 형법에서 병합범에는 한 개의 행위에서 여러개의 죄가 성립되는 형태(관념적 병합)와 각이한 여러 개의 행위에서 몇 개의 죄가 성립되는 형태(실제적 병합)가 있다.

○ 집행유예

북한 형법상 집행유예는 노동교화형 판결을 받은 자의 계급적 처지, '개준

성 정도', 범죄의 위험성 정도를 고려하여 그를 교화소에까지 보내어 노동교화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 사회에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내에 범죄자가 개조되면 노동교화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집행유예 기간중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새로운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 그에게 내렸던 판결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인정한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종전에 집행유예제도는 그 계급적 본질에 따라 '계급적 원수'들이 반혁명범죄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1987년 형법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p>관계법조</p>	<p>형법 제37조 2호 :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에 새로운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게 내렸던 판결의 집행은 끝난 것으로 인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57조: 구류되어 있는 피소자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유예를 하거나 사회적 교양에 넘기는 판결 또는 사건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경우에는 피소자를 곧 놓아주어야 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재판소가 이미 선고한 징역 또는 교화로동형의 집행을 일정한 기간 미루고 그 기간내에 새로운 죄를 짓지 않는 경우 선고된 유죄판결의 효력을 없애는 법적 제도. 집행유예제도의 목적은 범죄적 현상과의 투쟁에서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고립시키고 절대다수의 군중을 교양개조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데 있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재판소가 이미 선고한 징역의 집행을 일정한 기간 미루고 그 기간안에 새로운 죄를 짓지 않는 경우 선고된 유죄판결의 효력을 없애는 것 또는 그러한 법적제도. 우리나라에서 집행유예는 범죄행위의 사회적 위험성 정도와 죄진 다음 범죄인의 반성정도에 따라 능히 교양개조할 수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행유예는 착취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적용을 무마시키고 슬쩍 넘기거나 견실치 못한 자들을 회유기만하고 어떤 비밀을 알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하고 있다.</p>

## ○ 예심(예심원)

북한 형법상 예심은 수사활동과 강제처분을 통해 피심자(피의자)에 대한 범죄의 유무 및 책임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실을 밝혀내는 것으로 수사의 핵심부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재판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면 이미 때가 늦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진행될 수 없으므로 예심절차를 통해 재판단계 전에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이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예심제도는 프랑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영향을 받은 구소련 형사소송법을 계수한 북한에서 답습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예심제도는 본래의 프랑스의 예심제도와는 다르다. 프랑스의 예심제도는 예심판사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활동과 강제처분을 한 후 소추여부까지 결정하는 데 비해, 북한의 그것은 수사원에 가까운 예심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실질적인 수사활동만을 수행할 뿐 소추여부를 결정할 어떠한 권한을 갖지 않는 수사기관에 다름아닌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예심제도는 예심제도라는 미명 아래 예심판사가 독점한 강제처분권을 영장재판관에게 주지 않고 예심원이란 이름의 수사기관에 부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프랑스의 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 예심은 사회안전기관, 검찰기관, 국가보위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예심원은 형사사건을 제기하고 그 사건을 재판소에 넘길 때까지 범죄사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예비적인 조사를 담당하는 자로서 형사절차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예심원은 범죄지관할원칙에 따르되,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위기관의 예심원이, 군사상범죄사건과 군대안의 일반범죄사건은 군사검찰기관의 예심원이,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의 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의 활동을 침해하는 범죄사건은 철도검찰소 예심원이 각각 예심한다(형사소송법 제74조).

예심절차에서 사건의 내용이 거의 완전하게 파헤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북한 형사소송법 제71조) 볼 때, 傳聞法則이 배제되지 않는 북한의 형사소

송법하에서 결국 예심제도는 공판정에서의 구두심리를 형해화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p>관계법조항</p>	<p>형법 제43조 : 이 법 제42조에 규정된 기간이 넘기 전에 범죄자가 새로운 죄를 범하였을 때,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였을 때, 형사사건 제기결정이 있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새로 계산된다.</p> <p>형사소송법 제21조 :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은 자신과 친척이 해당 형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 참가할 수 없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를 모으며 조사검토하는 소송단계. 예심은 형사소송에서 사건제기를 통하여 범죄가 수행되었거나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기초우에서 그 사건을 더 조사 구명하며 범죄가 실지 범해졌는가, 그 진상은 어떠한가, 범죄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히며 이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모으며 조사검토하는 단계이다.</li> <li>- 당의 령도밑에 형사사건을 제기하고 그 사건을 재판소에 넘길 때까지 범죄사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예비적인 조사를 담당 진행하는 일군. 예심원에는 각급 검찰소의 예심원과 사회안전기관의 예심원이 있다. 예심원은 독자적인 소송참가자로서 담당 사건에 관하여 자기의 의견과 판단 및 책임밑에 예심을 진행할 권한을 가진다</li> </ul>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사건을 제기하고 그것을 재판에 넘길 때까지 과학적 증거를 수집, 검토, 평가하여 범죄와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소송행위.</li> <li>- 예심을 맡아 수행하는 전문일군.</li> </ul>

## 第2節 刑法各則에 관한 用語의 概念

### I. 反國家犯罪에 관한 用語

#### ○ 반국가범죄

북한 형법은 반국가범죄에 대하여 명시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북한 형법의 규정내용을 종합할 때 반국가범죄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정치체제에 기초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범죄적 방법으로 전복하거나 문란, 약화시키려는 적대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반국가범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빼앗고 유린하기 위하여 조선노동당과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고 낡은 착취제도를 복구하려 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반국가범죄는 그 정치적 성격과 목적에서 볼 때 일반범죄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단순히 개인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나 과실적인 행위가 아니라 조선노동당과 국가 및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고 전복하며 낡은 착취제도를 복구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빼앗으려는 반국가적인 목적하에서 감행되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범죄와 본질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북한의 현행 형법상 반국가범죄는 종전의 반혁명죄를 대신하여 규정된 범죄유형이다. 즉, 1974년의 북한 형법은 제2편에 반혁명범죄를 규정하고 있었던 바, 동법상의 반혁명죄에 대해서는 ①규제대상의 광범위성 ②사형 및 전 재산몰수 등의 가혹한 법정형 ③형사소추시효제도 및 집행유예제도의 적용배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따라서 비인도적이라는 대내외적인 비난의 표적이 되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1987년 북한 형법을 개정하여 반혁명범죄를 삭제하는 대신 반

국가범죄를 규정하게 된 것이다. 북한 형법상 반국가범죄는 침해되는 사회관계의 일정한 공통성에 따라 ①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반국가범죄(국가주권 전복음모죄(동법 제44조), 테로죄(동법 제45조), 반동선전죄(동법 제46조), 조국반역죄(동법 제47조), 간첩죄(동법 제48조),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 단절사촉죄(동법 제49조), 반국가적 파괴암해죄(동법 제50조),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동법 제51조)), ②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반국가범죄(민족반역죄(동법 제52조), 외국인에 의한 조선민족해방운동 및 해외조선동포탄압죄(동법 제53조)) ③반국가범죄와의 투쟁을 방해하는 범죄(반국가범죄에 대한 은닉죄(동법 제54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불신고죄 및 방임죄(동법 제55조))로 분류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3장 : 반국가범죄
북한용례	김근식, 『협법학2』(김일성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14면: 반국가행위란 계급적 원수들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반항행위

### ○ 국가주권전복음모(죄)

북한 형법에서 말하는 국가주권전복음모란 북한을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하거나 폭동에 참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국가주권은 인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권을 직접 실현하는 국가기관의 주권으로서 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권을 말한다. 북한 헌법상 주권은 노동자·농민·병사·근로인텔리 등 근로인민에게 있고, 그것은 최고인민회의 등 각급 주권기관을 통하여 행사된다. 북한을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하는 행위란 북한을 전복하려는 모의를 하거나 성원의 규합 기타 수단을 준비하는 행위들을 말한다. 따라서 강령, 규약을 만들거나 자금·무기를 마련하는 등 북한을 전복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북한을 전복하려는 폭동이란 북한을 전복하기 위한 실천행동을 의미하며, 북한을 전복하려는 폭동에는 북한을

전복하려는 무장폭동은 물론, 당 및 주권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을 습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반혁명적 시위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 이는 반혁명적 시위 자체가 반국가적 목적하에 감행되는 폭동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북한 형법은 이러한 국가주권전복음모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주권전복음모죄의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북한에서는 국가주권전복음모죄를 미국의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북한을 안으로부터 파괴하고 전복시키는 조직적이며 폭력적인 반항의 한 형태로 이해하며, 이를 반국가범죄 중 사회적 위험성이 가장 큰 범죄로 본다. 국가주권전복음모죄는 국가주권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침해대상은 당과 국가주권기관들이 된다. 여기에는 중앙과 지방의 당 및 국가주권기관은 물론 국가의 모든 기관들이 해당되는 바, 이는 이 죄가 당 및 국가주권기관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을 침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목적자체가 바로 북한의 주권을 전복·문란·약화시키려는 데 있으므로 국가주권기관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한다.

북한 형법상의 국가주권전복음모죄에 상응하는 한국의 법규정으로는 국가보안법 제3조의 반국가단체구성·가입 등의 죄를 들 수 있다.

<p>관 계 법 조</p>	<p>형법 제44조 :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하였거나 폭동에 참가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추진자, 주모자, 주동분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 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권. 국가주권의 제급적 성격과 사명은 주권을 어느 계급이 틀어쥐고 있으며 주권이 어떤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김일성저작선집(제32권 527면) : 국가주권은 정치적 지배권이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입니다.</p>

○ 테로행위(테로죄)

테로행위란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정치적인 적대세력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행위를 말하며, 북한에서는 이러한 테로행위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이 감행하는 가장 악랄한 반혁명적 책동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테로행위에 대해서는 북한 형법상 테로죄가 적용된다. 즉, 북한 형법상 테로죄는 북한에 반항할 목적으로 간부와 애국적 인민들을 살해하는 범죄로서 계급적 원수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당의 핵심역량인 간부와 애국적 인민들을 해치려는 가장 악랄한 반국가범죄의 한 형태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 형법상 테로행위의 처벌의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간부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때문에 북한을 전복하고 혁명과 건설을 파탄시키려고 시도하는 계급적 원수들은 간부들을 해치려고 책동할 것이므로 이러한 테로행위를 감행하려고 시도하는 책동을 앞질러 분쇄하여 테로행위와의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당이 키워낸 간부를 비롯한 북한 주권의 핵심역량을 튼튼히 보위할 수 있다는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한다. 북한 형법상의 테로행위는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바, 간부와 일군을 살해하거나 그들에게 폭행·상해·구타 등을 가하거나 또는 일군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방화하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테로행위의 대상은 당 및 국가기관의 간부나 사회단체의 책임일군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중요한 국가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일군 및 그 가족과 외교대표 및 그 가족도 테로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테로죄에 상응하는 한국법으로는 국가보안법 제4조의 목적수행죄와 제5조 제1항의 자진지원죄 중의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관 계 법 조	형법 제45조 : 공화국에 반항할 목적으로 간부들과 애국적 인민들에 대하여 테로행위를 감행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 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준비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서 정치적 적대세력을 위협하고 공갈하는 행위. 테로행위는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악랄한 반혁명적인 책동의 하나로 적용되며 그것은 주로 계급적 원수들이 혁명의 핵심력량인 간부들과 중요한 국가사업에 참가하는 일군들, 열성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학살하거나 그들에게 살해, 구타 등의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실현된다.</p>
-------------	--

○ 반동선전선동(죄)

북한 형법상 반동선전선동죄는 북한을 전복·문란·약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선전선동 등을 하는 죄를 말한다. 여기서 「반동선전」은 자본주의제도를 미화하고 사회주의제도를 비방·중상하는 사상을 주입시키려는 행위를 말하며, 「반동선동」은 북한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행위를 하도록 자극주는 행위를 말한다. 반동선전선동죄의 처벌의의는 반동선전선동을 막기 위하여는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반동사상의 침습을 막으며 반동선전선동을 감행하는 자들을 단호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에 있다고 한다. 북한 형법상 반동선전선동의 형식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람들에게 반동적인 사상을 주입시키려는 행위를 함으로써, 즉 결과발생과 관계없이 선전선동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기수에 이르는 형식범이다. 따라서 출판물 또는 문서를 이용하거나 낙서 또는 투서로도 가능하며, 다만 낙서나 투서인 경우에는 그 내용자체가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반국가적이고 반동적인 것이어야 한다.

북한 형법상 반동선전선동죄에 상응하는 한국의 형사법규정으로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제4조 제1항 제6호 목적수행을 위한 선동선전죄, 제5조 제1항 자진지원목적 선동선전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형법상의 반동선전선동죄와 국가보안법상의 위 규정들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바,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통치자 개인이나 집권세력을 비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데 반하여, 북한 형법상 반동선전선동죄는 그 구성요건을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당과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언동 까지도 모두 반동선전선동죄로 처벌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46조 : 공화국을 전복, 문란, 약화시키거나 그 밖의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김일성저작선집(제6권 14면) : 적들은 교활하고 음흉하므로 요언을 퍼뜨리려고 온갖 시도를 다할 것 입니다. 인민들은 적들의 이와 같은 악선동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며 공화국주권기관들은 적에게 도움을 주는 반역자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하여야 하겠습니까.

○ 조국반역행위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조국반역행위란 자기나라와 민족, 계급과 조직 등을 배반하고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행위로서, 특히 국가주권이나 국가주권의 대표자를 반대하고 그 영을 그스르거나 정권을 뒤집어 엮고 국가 통치권을 탈취하려는 행위를 통치자의 입장에서 이르는 말로 정의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조국반역행위를 가장 큰 죄악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북한 형법은 조국반역죄(동법 제47조)로 처벌하고 있다. 조국반역죄의 대상이 되는 조국반역행위에는 간첩행위, 군사적 비밀의 전달, 적편으로 넘어가거나 외국으로 탈주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북한에서는 북한의 공민은 어떠한 환경에서나 북한에 대한 굳은 절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협박에 의하여 또는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기대하여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경우 역시 조국배역행위가 된다고 한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47조 : 공화국공민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	---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자기나라와 민족, 계급과 조직 등을 배반하고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행위.                  국가주권이나 국가주권의 대표자를 반대하고 그 령을 그스르거나 정권을 뒤집어 업고 국가통치권을 탈취하려는 행위를 통치자의 입장에서 이르는 말                  김일성저작집(제27권 636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p>
-------------	--

○ (조국반역죄)

북한 형법상 조국반역죄란 북한의 공민이 인민의 고귀한 혁명적 전취물인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범죄를 말한다. 조국반역죄는 객관적으로는 ①북한 공민이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는 행위, ②북한의 공민이 행하는 간첩행위, ③북한의 공민이 적을 도와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북한 형법학자들에 의하면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는 행위』에서 『다른 나라』라고 함은 외국을 의미하며, 한국은 외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분단되어 있을 뿐이므로 외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적의 편으로』에서 『적』이란 전쟁시기의 교전상대 또는 게릴라를 의미하며, 한국은 북한과 전쟁 중인 경우에는 적의 편이나 적이 될 수 있으나 평상시에는 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한국이 외국이 아니고 또한 적도 아니지만 북한을 배반하고 한국으로 도망·월남·도주하는 경우에는 평상시라 하더라도 반국가적 목적하에 적대행위를 감행하고 월남·도주한 행위는 외국이나 적의 편으로 도망친 행위는 아니지만 그 행위의 목적과 성격이 그것과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조국반역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한편, 간첩행위는 최대의 조국반역행위로서 비록 간첩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반국가적 목적하에 적이나 북한의 공민이 아닌 자에게 국가 및 군사기밀을 넘겨주는 행위는 간첩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다만, 북한의 공민이 아닌 자가 간첩행위를 한 경우에는 북한 형법 제48조의 간첩죄가 적

용된다. 끝으로 북한의 공민이 적을 도와주는 행위는 길안내·통역·위안·물질적 지원과 같은 방법으로 적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형법상의 조국반역죄에 상응하는 한국의 형사법규정으로는 형법 제 98조 간첩죄,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목적수행을 위한 간첩죄, 동법 제6조의 탈출죄, 동법 제9조의 편의제공죄 등을 들 수 있다.

<p>관 계 법 조</p>	<p>형법 제47조 : 공화국공민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자기나라와 민족, 계급과 조직 등을 배반하고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행위. 국가주권이나 국가주권의 대표자를 반대하고 그 령을 그스르거나 정권을 뒤집어 엮고 국가통치권을 탈취하려는 행위를 통치자의 립장에서 이르는 말  김일성저작집(제27권 636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p>

○ 간첩행위(간첩죄)

북한 형법 제48조의 간첩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간첩행위란 북한 공민이 아닌 자가 외국 또는 반혁명단체에 중요한 기밀문서를 넘겨주거나 또는 넘겨줄 목적에서 이를 취득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북한 형법은 간첩행위의 주체를 기준으로 북한의 공민이 간첩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국반역죄에 의하여 처벌하고, 북한의 공민이 아닌 자가 간첩행위를 한 경우에는 간첩죄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형법상 간첩죄의 행위주체는 북한의 공민이 아닌 자이다. 여기서 북한의 공민이 아닌 자라고 함은 북한의 공민권을 가지지 않은 조선사람과 간첩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에 들어오거나 간첩행위를 한 외국인을 의미한다. 북한의 공민

이 아닌 자가 간첩임무를 받고 북한에 들어와 공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간첩행위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국반역죄로 처벌되며, 또한 북한의 공민이 아닌 자가 간첩임무를 받고 북한의 공민과 공동으로 간첩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공민이 아닌 자는 간첩죄로, 북한의 공민은 조국반역죄로 각각 형사책임을 진다.

북한에서 간첩죄의 의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분쇄하고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는 데 있다고 한다. 북한 형법상 간첩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주권의 대외적 안전이며, 침해대상은 당·국가·군사비밀이다. 북한 형법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에서 비밀이라 함은 출판물이나 보도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공포,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와 사실을 말하며, 그것이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띤 경우에는 물론 경제적·문화적·과학적 성격을 띤 경우도 포함된다고 한다. 또한 당과 국가의 중요한 비밀을 넘겨주는 것은 글·말·전신 등의 방법으로 간첩 자신이 직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비밀정보를 얻어내는 것은 비밀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훔치거나 비밀자료를 기관 또는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넘겨받거나 군용시설·공장·기업소 등 비밀대상을 탐문·탐지하는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한다. 외국 또는 반혁명단체에 넘겨줄 목적으로 이러한 국가 및 군사적 비밀을 알아보고 확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것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간첩죄가 성립한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48조 : 공화국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간첩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첩보기관에 속하여 정체를 감추고 어떤 나라나 군대 또는 어떤 대상의 형편이나 내막을 비밀리에 알아내어 다른 나라나 해당한 첩보기관, 단체에 넘겨주는 행위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 적들은 공화국북반부에 선 사회주의제도를 허물며 사회주의건설을 파탄시켜보려고 간첩분자들을 끊임없이 들여보내고 있으며, 온갖 방법을 다하여 파괴암해활동을 감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촉죄)

북한 형법상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촉죄란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부추기거나 자금을 제공하여 북한에 무장간섭을 하게 하거나 외교관계를 단절하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촉죄의 성립요건이 되는 객관적 행위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 바, 첫째는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부추기거나 자금을 제공하여 북한에 무장간섭을 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무장간섭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한다. 둘째는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부추기거나 자금을 제공하여 북한과의 외교관계나 조약을 단절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여기에는 외교관계나 조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도 해당된다고 한다.

북한 형법상의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촉죄에 상응하는 한국의 형사법규정으로는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제2편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 목적수행 외환유치죄 등을 들 수 있으나, 구성요건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

관계법조	형법 제49조 :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추기거나 거기에 자금을 대주어 공화국에 대하여 무장간섭을 하게 하거나 외교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며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약을 폐기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무력간섭

○ (반국가적) 파괴암해행위(죄)

북한 형법상 반국가적 파괴암해행위는 반국가적 목적의 파괴암해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반국가적 파괴행위」라고 함은 국가기관·기업소 및 사회협

동단체의 재산 및 시설을 파괴·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교통운수수단에 대한 파괴, 국가 및 사회단체의 재산에 대한 방화, 기계의 파손 또는 파괴 등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반국가적 암해행위」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의 정상적인 관계를 문란·약화·파탄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자기의 직무상의 직위를 악용하거나 일정한 의무를 수행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은밀한 방법으로 사회 자체를 내부로부터 파탄시키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 즉,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은밀한 방법으로 파손시키는 것은 암해행위에 해당하며, 폭력적인 방법에 의하여 파손시키는 것은 파괴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파괴암해행위는 북한 형법상 반혁명적 범죄에 해당하며, 따라서 혁명의 전취물과 혁명조직을 파괴하기 위하여 암해책동을 하는 반혁명분자인 파괴암해자는 반국가적 파괴암해죄에 의하여 처벌된다(형법 제50조). 그러나 북한 형법상의 반국가적 파괴암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는 암피암해자에게 반국가적 고의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반국가적 파괴암해죄는 탐욕·질투·개인의 악감정과 같은 동기와 목적에서 자행되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의 고의적 파손죄와 구별된다. 한편, 반국가적 목적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지 않은 반국가적 태업행위도 반국가적 파괴암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1974년 북한 형법은 반국가적 태업행위를 반혁명적 암해죄, 반혁명적 파괴죄와는 별도로 반혁명적 태업죄로 규율하였으나 1987년 형법은 이 세가지 유형을 한개의 조문안에 흡수하여 반국가적 파괴암해죄만을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50조 : 반국가적 목적 밑에 파괴암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파괴 : (어떤 대상물을) 깨서 무너뜨리거나 부시는 것. 군사적 방어시설 물과 군수기재, 무기 및 그 밖의 대상물들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바사버리는 것. 또는 (집단, 조직, 가정 등을)와해시키거나 파탄시키는 것.

북한용례	암해 : 남모르게 해를 끼치는 것 또는 그러한 행동 암해분자 : 인민의 눈을 속여가며 몰래 해독행위를 하는 적대분자 파괴암해분자 : 혁명의 전취물과 혁명조직을 파괴하기 위하여 암해 책동을 하는 반혁명분자 김일성저작선집(제2권 35면) : 온갖 반혁명분자들과 적대적 요소들을 철저히 진압하며, 적들의 간첩, 파괴, 암해활동을 걸음마다 폭로분쇄하여야 하겠습니까.
------	--

○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북한 형법상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란 북한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목적으로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살인·상해·납치·구타·모욕 같은 인신공격행위 및 자유구속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 형법은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가 곧 국가에 대한 적대행위가 된다는 전제하에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는 1974년의 형법에는 없던 범죄유형으로 국제적 개방추세에 따라 외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51조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감행한 자는 3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

○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북한에서 민족해방투쟁이라 함은 과거에는 일본식민지를 청산하고 나라의 민족적 자주권과 독립을 위한 투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전국적 범위에서의 혁명투쟁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민족분열을 하루속히 청산하고, 인민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



죄와의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형법은 민족해방을 반대하는 범죄로 민족반역죄와 외국인에 의한 조선민족해방운동 및 해외 조선동포탄압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3장 반국가범죄 제2절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예속국가인민들이 외국침략자를 몰아내고 나라와 민족을 침략자들의 압박과 예속에서 해방하는 것

○ 민족반역행위(죄)

북한에서 민족반역행위는 외래침략자들의 앞잡이가 되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이익을 배반하는 반혁명적인 행위를 말한다. 북한 형법은 민족반역행위를 가장 엄중한 반국가범죄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 형법이 민족반역행위와의 무자비한 투쟁을 예견하고 있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배반하는 계급적 원수들을 철저히 진압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한다. 북한 형법상의 이와 같은 민족반역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①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시도를 적극 도와주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 ②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에 적극 협력하며 민족적 이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 ③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반대하고 민족분열을 시도하는 행위 ④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자유를 말살하며 조선민족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박해·탄압행위를 도와주는 배족행위 등 4 가지의 행위를 한 경우이다.

한편, 북한 형법상의 민족반역죄와 조국반역죄와의 관계 내지 구별이 문제되는 바, 북한 형법상의 민족반역죄는 제국주의자의 지배 아래에서의 반역적인 행위를 그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본식민지 통치밑에서 일본과 야합하여 반역행위를 하였거나, 미국이 강점하고 있는 한국에서 미국

의 주구가 되어 반역행위를 하였거나, 일시적 후퇴시기에 북한지역에서 인민들을 탄압하고 학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족반역죄를 구성한다. 반면에 조국반역죄는 북한의 주권밑에서 북한의 공민권을 가지고 살던 자가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반역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된다. 따라서 북한 형법상 민족반역죄와 조국반역죄는 범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적들의 통치 밑에서 행한 반역행위인가 아니면 북한 주권 밑에서 행한 반역행위인가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형사법상에는 북한을 민족반역자로 취급하는 내용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당국의 책임자, 간부 등을 범법자로 본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가 이에 일응 유사한 규정이라 할 수 있으나 양자간에는 구성요건 등에 있어 많은 다른 점이 있다.

관계법조	형법 제52조 :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그와 야합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을 탄압, 박해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정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외래침략자들의 앞잡이가 되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리익을 배반한 반혁명적 범죄

○ (외국인에 의한 조선민족해방운동 및 해외조선동포탄압죄)

북한 형법 제53조의 외국인에 의한 조선민족해방운동 및 해외조선동포 탄압죄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선인민의 반일반미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조선인민을 탄압·학살하거나,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인민의 투쟁을 반대하기 위하여 책동하였거나, 해외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위한 투쟁을 탄압·박해하는 적대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죄의 보호법익은 북한의 자주권과 민족적 존엄이며, 본죄의 침해대상은 조선인민의 반제민족해방투쟁,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한국의 형사법 중 북한의 외국인에 의한 조선민족해방운동 및 해외조선동포탄압죄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외국인이 북한의 이른바 「반제민족해방운동」 및 「적화통일을 위한 혁명투쟁」을 지원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구성 등) 위반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제3조와 일응 대비시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관 계 법 조	<p>형법 제53조 :</p> <p>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 해외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인 권리를 위한 투쟁을 탄압, 박해하는 적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p>
------------------	--

## Ⅱ. 社會主義經濟를 侵害하는 犯罪에 관한 用語

### ○ 사회주의적 소유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사회주의적 소유란 사회주의제도의 경제적 기초로써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대한 사회전체의 성원 또는 집단의 공동 소유, 즉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를 말하는 것으로 그 본질은 생산의 물질적 조건인 생산수단이 사회주의 근로자들의 공동소유, 사회적 소유로 되어 있는데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주의적 소유는 사회주의국가의 융성발전과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물질적 담보가 되며, 그것을 증대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 형법은 사회주의소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그와의 강한 투쟁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4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제1절 사회주의적 소유를 침해하는 범죄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대한 사회전체의 성원 또는 집단의 공동소유. 사회주의적 소유의 본질은 생산의 물질적 조건인 생산수단이 사회주의 근로자들의 공동소유, 사회적 소유로 되어 있는데 있다.

### ○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북한의 경제질서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질서는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그 지도이념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경제적 착취의 배제와 전체인민의 복리와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데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적 착취의 원인이 되는 모든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요청되고 이와 같은 사회주의적 재산제도는 필연적으로 중앙집권적 관리·계획경제를 채택하게 된다. 그 결과 생산·분배·소비 등 경제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국가적 통제, 경제질서의 공법적 규제,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과 강제, 개인의 생존이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 의거하여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의 소유에 귀속되고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소비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질서는 계획경제질서로서 국가가 생산자 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 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북한의 경제질서는 필연적으로 경제관련 형사법 규정의 이질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북한 형법이 철저하게 노동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는 법이며, 사회주의제도와 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보위하는 법으로서 프롤레타리

아독재를 실현하는 무기라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즉 북한 형법은 한국 형법과는 달리 개인소유를 침해하는 범죄 외에도 사회주의적 소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 계획경제 체제에 입각한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경제관리운영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국토관리를 침해하는 범죄와 사회주의노동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북한 형법학자에 의하면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목적은 경제관리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주의적 경제관리규범의 요구대로 경제를 관리운영하게 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하게 하도록 통제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힘있게 담보하는 데 있다고 한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4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리운영되는 경제. 사회주의경제는 고도로 사회화된 대규모경제이며, 계획적이며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경제이다.

○ 사회주의적 소유를 침해하는 범죄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소유형태인 국가소유와 사회협동단체소유는 국가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며, 인민의 자주적·창조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귀중한 재부이며, 밑천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북한 형법은 이러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국가의 경제적 기초를 약화시키며 혁명의 진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국민의 개인 소유를 침해하는 범죄 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형법상의 이원적 규정체계는 사회주의적 국가질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하여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한국의 형법이 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국가 또는 협동단체의 소유와 개인의 소유를 구분함이 없이 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사회주의적 소유를 침해하는 유형은 크게 약취와 파손의 두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형법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 약취죄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 파손죄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4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제1절 사회주의적 소유를 침해하는 범죄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사회주의적 소유침해죄와의 형사법적 투쟁은 집단의 공동소유, 사회주의적 소유의 본질은 생산의 물질적 조건인 생산수단이 사회주의 근로자들의 공동소유, 사회적 소유로 되어 있는데 있다.

○ 사회협동단체

북한에서 사회협동단체는 사회의 일정한 사람들이 집단의 공동이익을 옹호하고 공동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사회주의적 소유형태에는 전인민소유인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 바, 협동단체소유는 사회화정도에 있어 국가소유보다 낮다는 점에서 국가소유와 구별되는 차이점을 가진다. 그리고 국가소유의 대상은 국가의 단일한 재산을 이루며, 그 범위에 있어 제한이 없으나 협동단체소유의 대상은 개별적 협동단체의 재산을 이루고 그 범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중요기업소, 은행, 광산, 철도 등은 협동단체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북한에 있어 협동단체소유는 근로자들의 재산의 자발적인 사회화에 기초한다고 한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56조 :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훔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럿이 공모하여 또는 대량 혹은 중요한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1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	--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가입한 사람들의 생산수단을 공동소유로 하고 생산과 상품유통 등의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조직</p> <p>김일성저작선집(제4권 37면) :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 소유는 호상 밀접한 련계속에서 발전하는 사회주의적소유의 두개 형태이며, 다같이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적기초를 이루고 있다.</p>
-------------	--

○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약취죄)

북한 형법에서 말하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약취죄란 범죄자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개인재산으로 만들거나 자기의 재산처럼 처리하는 범죄를 말한다. 북한 형법상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약취죄의 본질적 특징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불법적으로 개인재산으로 전환시키고 그 전환방법이 훔치기, 빼앗기, 속여가지기, 횡령, 강도, 공동탐오와 같은 도적질이라는 데 있으며, 그 목적이 탐욕적이라는 데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 형법상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약취행위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객체로 하면서도 이를 파손하는 행위, 낭비하거나 훔쳐서 다른 기관·기업소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돈 또는 물건을 받는 행위, 일정한 일을 해준 대가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뇌물로 받는 행위들과 구별된다. 한편,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이 아닌 개인재산을 약취한 경우에는 그 행위유형에 따라 북한 형법 제155조 내지 제160조상의 개인재산약취죄가 성립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원적 규정체계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고 있는 한국 형사법의 이념과는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과 북한 형사법의 同化를 추진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이러한 북한 형법상의 소유권침해사범에 대한 이원적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사회주의적 소유(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재산의 약취 및 파손죄를 폐지하

고 국민의 개인소유재산약취·파손죄를 통합하여 재산약취 및 재산파손죄로 단일화함으로써 재산죄에 대한 규정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되는 한국과 북한 형사법 동화의 기본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북한 형법은 약취재산의 다소, 약취재산의 중요성여부,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을 범죄와 범죄자의 위험성 및 엄중성 정도를 특징짓는 주요한 조건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약취죄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정형도 차등을 두고 있다. 북한 형법은 구체적으로 사회주의적 소유 즉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소유 재산에 대한 약취죄의 유형으로는 훔친죄(동법 제56조), 빼앗은죄(동법 제57조), 속여가진죄(동법 제58조), 횡령죄(동법 제59조), 대량약취죄(동법 제60조), 특히 대량약취죄(동법 제61조), 공동탐오죄(동법 제62조), 강도죄(동법 제6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p>형법 제56조 :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훔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럿이 공모하여 또는 대량 혹은 중요한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1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p> <p>형법 제59조 :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실행하는 자 혹은 관리일군이 직무상 또는 의무실행상 자기가 보관 관리하고 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중요한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p> <p>형법 제62조 : 책임일군이 비법적으로 상금, 우대제, 생활비를 적용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공동탐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p> <p>형법 제63조 :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강도한 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이하 중략)</p>
---------	---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남의 재산을 비법적으로 가지거나 처분하는 범죄. 재산을 훔치는 행위, 빼앗는 행위, 속여먹는 행위, 가로채는 행위 등이 다 포함된다.
------	---

○ (특히) 대량

북한 형법은 약취재산의 다소에 관하여 『대량』, 『특히 대량』이라는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구별기준이 무엇인지가 불명확하다. 이에 대하여 북한 형법학자들은 동일한 종류와 동일한 양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시기와 환경에 따라 그 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의의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이에 대한 해석상의 일반기준으로 해당 시기의 당정책적인 요구, 정치·경제·군사적 의의와 용도 등을 들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별하여야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국가 및 사회단체 재산의 금액이 4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량이며, 4천원 이상 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량이고, 2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히 대량에 해당한다고 한다. 또한 양곡의 경우에는 3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에는 소량, 300킬로그램 이상 1톤 5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에는 대량, 1톤 5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특히 대량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56조 :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훔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럿이 공모하여 또는 대량 혹은 중요한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1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형법 제57조 :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중요하거나 대량의 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2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

관계법조	형법 제61조 : 특히 대량 또는 특히 중요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약취한 자는 6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많은 분량이나 수량

○ 여럿이 공모

북한 형법은 범행방법과 관련하여 여러 곳에서 『여럿이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실행자들에 의한 공범의 경우를 의미한다.

관계법조	형법 제56조 :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훔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럿이 공모하여 또는 대량 혹은 중요한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1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둘 이상이 서로 짜고 어떤 부정적인 일을 함께 피하는 것 또는 그 피

○ (훔친죄)

북한 형법 제56조의 훔친죄는 다른 사람이 보관·관리하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은밀히 훔치는 범죄를 말하며, 절취죄라고도 한다. 훔친죄는 범죄자가 자신이 훔치는 것에 대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의 보관·관리자나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은밀히 행한다는 데 그 본질적 특징이 있으며, 이런 점에서 약취죄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56조 :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훔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럿이 공모하여 또는 대량 혹은 중요한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1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사회재산 및 다른 사람의 재산을 몰래 도저길한 범죄

○ (빼앗은 죄)

북한 형법 제57조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빼앗은 죄란 국가·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그 보관·관리자나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죄를 말한다. 빼앗은 죄의 본질적 특징은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공공연하게 이를 행한다는 데 있으며, 따라서 탈취죄라고도 한다. 여기서 빼앗은 행위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주지 않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감행되며 이러한 점에서 훔친죄에 비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더 큰 반면, 폭행이나 협박이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주는 정도에 이르는 강도죄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적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57조 :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 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중요하거나 대량의 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2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해당 물건을 그 보관관리자의 면전에서 공공연히 비법적으로 가져가는 죄

○ (속여가진 죄)

북한 형법 제58조에서 규정하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의 속여가진 죄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점유자를 속이거나 자기에 대한 그의 신임을 악용하는 방법으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만든 범죄를 말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사기죄라고도 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여가진죄는 재산점유자가 범죄자에게 속아서 스스로 범죄자에게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넘겨준다는 데에 그 본질적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다른 약취죄와 구별된다고 한다.

관 계 법 조	형법 제58조 :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속여 가진 자는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중요한 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	---

○ 횡령(죄)

북한에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의 횡령란 직무상 또는 의무실행상 자기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만들거나 소비하는 것과 같이 불법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말하며, 북한 형법은 국가 및 사회단체재산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횡령한 재산이 대량 또는 중요한 재산인 경우에는 8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 형법상의 횡령죄의 본질적 특징은 다른 사람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이 아니라 자기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하는 것에 있으며, 따라서 횡령죄는 당과 국가의 신임으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보관관리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자가 그것을 성실히 보관·관리하는 대신 오히려 신임을 악용하여 그 재산을 가로채는 범죄이므로, 다른 약취죄보다 엄중성이 일반적으로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59조 :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실행하는 자 혹은 관리일군이 직무상 또는 의무실행상 자기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중요한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나 사회 및 남의 재물을 비법적으로 가로채서 가지는 것.

○ (특히 중요한)대량약취죄

북한 형법이 규정하는 대량약취죄란 훔치기, 빼앗기, 속여가지기, 횡령의 방법으로 약취한 재산의 양을 모두 합하여 대량을 이루는 경우와 그 가운데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방법으로 약취한 양을 합하여 대량이 되는 경우에 성립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는 동법 제56조 내지 59조의 각 제2항들이 개개의 범죄로 침해된 재산이 대량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는 범죄유형이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대량약취죄』란 한번 약취한 양이 특히 대량인 경우와 여러 번 약취한 양이 특히 대량인 경우, 특히 중요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약취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60조 : 이 법 제56-59조에 지적된 여러 가지 행위를 하여 약취한 총량이 대량인 경우에는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형법 제61조 : 특히 대량 또는 특히 중요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약취한 자는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	---

○ 공동탐오(죄)

북한에서 탐오란 국가의 재산이나 사회의 공동재산을 남모르게 빼돌려

자기의 것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북한 형법은 이러한 탐오행위에 대해서 공동탐오죄를 규정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즉, 북한 형법상 공동탐오죄는 「합법적」 또는 「사업보장」의 명목하에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나누어 가지거나 공동으로 탕진하는 범죄를 말한다. 행위의 주체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범죄를 행한다는 점에서 공동약취죄라고도 한다. 공동탐오죄는 「합법적」, 「사회보장」이라는 명목하에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사전에 공모결탁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약취하여 이를 공모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약취죄의 공범과 구별된다. 공동탐오죄는 직권남용죄의 특수한 형태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직권남용죄의 병합범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공동탐오죄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하에서의 특수상황을 전제로 한 범죄유형으로서 한국 형법은 이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한국 형법의 공문서위조·변조 및 동행사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62조 : 책임일군이 비법적으로 상금, 우대제, 생활비를 적용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공동탐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재산이나 사회의 공동재산을 남모르게 빼돌려 제것으로 하는 범죄적 행위

### ○ 강도(죄)

강도는 폭행·협박 등의 강제수단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자를 말하며, 따라서 강도죄는 다른 사람의 생명·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빼앗는 범죄로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약취죄 중 사회적 위험성이 가장 큰 범죄로 평가된다. 북한

형법학자들에 의하면 폭행·협박은 생명·건강에 위험을 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정도가 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빼앗는 죄가 성립될 뿐이라고 한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63조 :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강도한 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재산을 강도하였거나 여러번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혹은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를 죽게 하였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남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

○ 국가유가증권

국가유가증권이란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가증권을 의미하며, 공채가 이에 해당한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66조 : 화폐, 국가유가증권, 공화국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폐를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것인 줄 알면서 써먹은 자는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자본을 자본소유자에게 리익배당금 또는 리자의 형식으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일정한 자산을 청구할 수 있는 증서

○ 화폐위조 및 위조화폐사용(죄)

화폐위조 및 위조화폐사용이란 이기적인 목적으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북한의 화폐나 외국화폐처럼 여겨질 정도로 매우 유사한 위조화폐를 제조하거나 위조한 화폐인 줄 알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북한 형법은 이와 같은 화폐위조 및 위조화폐사용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화폐 및 신용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7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	형법 제66조 : 화폐, 국가유가증권, 공화국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폐를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것인 줄 알면서 써먹은 자는 7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와 비슷한 가짜화폐를 만들어낸 죄. 만들어진 가짜화폐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와 같은 인상을 줄 만큼 비슷하여야 이죄가 성립된다.

○ 외국화폐매매(죄)

북한에서 외국화폐의 매매란 북한의 은행에서 교환할 수 있는 외국화폐를 사거나 파는 행위를 말한다. 북한 형법은 외국화폐매매행위는 외국화폐에 대한 국가적 장악과 관리에 지장을 주고 북한의 화폐제도를 훼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거래와 밀수행위를 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엄중한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그 행위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불법적으로 거래한 화폐는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 형법상의 외국화폐매매죄에 해당하는 규율은 한국의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외국환관리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 또는 관리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고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환관리체계에 대한 정치한 규율을 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형법 제68조 : 리기적 목적으로 공화국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폐를 팔았거나 산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비법적으로 거래한 화폐는 몰수한다.
-----------	--

○ 암거래(죄)

북한 형법에서 규정하는 암거래행위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암거래와는 그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 즉 북한에서 암거래는 북한의 법과 질서를 어기면서 몰래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며, 북한 형법은 이러한 암거래행위에 대하여 암거래죄를 적용하여 2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암거래한 물건은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형법서에 의하면 암거래죄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암거래나 고리대와 같이 인민을 착취하는 온갖 행위들이 허용되지 않는 데 그 처벌근거를 두고 있는 범죄유형이며, 암거래죄는 상사제도를 비롯한 사회주의경제제도를 침해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서, 대표적인 착취행위가 암거래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법조문상에 예시한 것일 뿐이므로, 암거래죄에 의하여 침해되는 사회관계를 상업제도에 국한하여서는 안된다고 한다. 북한 형법상 암거래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에는 암거래행위와 고리대행위이다. 암거래행위에는 상업기관 또는 협동농장 등에서 상품이나 농축산물을 사서 국정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 개인으로부터 물건을 사서 비싸게 파는 행위, 상업기관이나 공장·기업소 등에서 상품이나 물건을 사서 가공하여 거기에 든 자재나 노력비에 비하여 비싸게 파는 행위, 상업기관이나 공장·기업소·협동농장 등에서 물건을 사서 수매기관을 비롯한 상업 또는 금융기관이나 공장·기업소 등에 비싸게 파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그리고 고리대행위란 개인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꾸어주고 그 대가로 돈 또는 물건을 이자로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북한 형법상의 암거래죄는 개인의 상업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체제하에서 국가의 사회주의상업제도를 보호하

며 낮은 사상잔재의 발현을 막고 인민들의 생활을 계획적으로 높이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암거래죄는 사회주의상업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주의체제 고유의 범죄로서 한국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형사법 규정은 당연히 두고 있지 아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도 상업활동과 관련하여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건전한 자유경쟁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상업활동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이에 대한 부분적인 조정·제한을 가할 뿐이라는 점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북한 형법상의 암거래죄와는 본질적으로 상이하다.

관계법조	형법 제69조 : 상습적으로 암거래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암거래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

### ○ (계획 및 규율위반죄)

북한 형법 제72조의 계획 및 규율위반죄는 인민경제의 계획적 관리운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민경제계획을 무성히 하게 수립하거나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체결된 계약을 어겨 인민경제발전에 큰 혼란을 준 범죄를 말한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①인민경제계획을 되는 대로 세우는 행위, ②국가계획을 규정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음대로 고치는 행위, ③계획수행을 거짓보고하는 행위, ④계획 및 계약규율을 어기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제시된 계획과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체결된 계약의 기일 및 내용들을 지키지 않은 행위들을 여러 번하여 인민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에 큰 혼란을 준 결과가 있을 때에만 북한 형법상 계획 및 계약규

을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북한 형법학자들에 의하면 인민경제의 정상적 발전에 큰 혼란을 준 결과라고 함은 많은 자재·자금·노력이 낭비되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경우나 국가나 해당 상급기관이 거짓보고를 진실로 믿고 새로운 조치나 대책을 세웠을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한다.

북한 형법상의 계획 및 규율위반죄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하에서의 계획적 관리운영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한국의 형사법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적인 행위유형에 따라서는 한국 형법상의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도시계획법 위반죄 등 각종 계획관련 법률을 위반한 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관 계 법 조	형법 제72조 : 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우거나 국가계획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하거나 계획 및 계약규률을 어기는 행위를 여러번 하여 인민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에 큰 혼란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

○ 계획수행정형

북한에서 계획수행정형이란 계획수행의 구체적인 형평이나 상태를 말한다.

관 계 법 조	형법 제72조 : 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우거나 국가계획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하거나 계획 및 계약규률을 어기는 행위를 여러번 하여 인민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에 큰 혼란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구체적인 형평이나 상태

○ (농업생산과학기술공정위반죄)

북한 형법 제80조의 농업생산과학기술공정위반죄는 농업생산과학기술공

정을 어기거나 농산작업을 조잡하게 하여 농업생산에 큰 지장을 준 범죄를 말한다. 그 보호법익은 과학기술공정에 기초한 농업생산질서이다. 이 죄는 과학기술공정위반행위 이외에 그 행위로 인하여 농업생산에 큰 지장을 주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결과범이다. 여기서 농업생산에 큰 지장을 주었다는 것은 농업생산물의 수확고를 현저히 떨어뜨렸거나 많은 면적의 모판을 못쓰게 만들었거나 씨뿌리기를 많은 면적에 다시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와 같은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 죄는 농업생산공정을 국가의 통제·감독하에 두고 있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한국 형사법상 이에 상응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행위에 따라서는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종묘관리법, 주요농작물종자법,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등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관계법조	형법 제80조 : 농업생산의 과학기술공정을 어기거나 농산작업을 조잡하게 하여 농업생산에 큰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	---

### ○ 사양관리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사양관리란 사람이 길러 경제생활에 이용하는 소, 돼지, 말, 닭 등과 같은 집짐승을 먹이거나 기르며 거두는 일을 말한다.

관계법조	형법 제18조 : 집짐승을 기르는 일군이 위생방역 또는 사양관리에 관한 규정용 어겨 많은 집짐승을 죽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 집짐승 같은 것을 먹이거나 기르며 거두는 일.

○ (상업질서위반죄)

북한 형법에서 말하는 상업질서위반이란 상품공급과 판매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거나 상품의 성질을 불법적으로 고쳤거나 값을 속여 파는 것은 것을 말한다. 북한 형법은 이와 같은 상업질서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상업질서위반죄를 적용하여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 형법상의 상업질서위반의 처벌근거는 상업에서 부정적 현상을 막고 사회주의 상업의 우월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며, 상업일군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복리증진과 생활상 편의를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업질서를 위반하는 현상들과 강한 법적 투쟁을 벌려야 하는 데 있다고 한다.

북한 형법상의 상업질서위반죄는 상품공급·판매 등을 국가독점하에 계획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한국 형사법상 이에 상응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개별적 행위유형에 따라서는 사기죄, 부당이득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소비자보호법 위반죄 등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관 계 법 조 항	형법 제82조 : 상품공급과 판매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큰 불편을 준 자 또는 상품의 성질을 비법적으로 고쳤거나 값을 속여 판 자는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	---

○ 국토관리

북한에서는 국토관리란 국토와 함께 자연자원과 건물 및 시설물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그의 이용과 보호를 조직하며 감독통제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의 국토관리에는 나라의 모든 자연자원과 건물 및 시설물들을 조사등록하는 사업과 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국토와 자원에 대한 이용과 보호관리를 조직하고 감독통제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북한에서는 국토관리의 목적은 국가와 인민의 속에 장악된 토지, 호수, 강 하천, 명승지, 천연기념물, 풍부한 자연자원과 건물 및 시설물들을 잘 보호·관리하고 그것들을 사회주의건설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유효하게 이용되는데 있다고 한다. 북한의 국토관리조직으로는 중앙에 국토건설성이 있고, 지방에는 지방인민위원회의 해당부서들이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4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제3절 국토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주권이 행사되는 전영토에 대한 관리. 나라의 경제발전의 물질적 기초인 토지와 자원에 대한 보호관리사업이며, 사람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생활환경에 대한 보호관리사업이다. 국토 및 자원과 함께 모든 건물과 시설물들을 종합적으로 틀어쥐고 보호관리하며 필요한 감독과 통제를 실시하는 것 등도 이에 속한다.

○ 국토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북한에서는 토지는 모두 국가 또는 협동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협동농장의 터밭에 대한 개인적 이용권이 인정될 뿐이다. 북한의 토지법이 『토지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감독·통제는 각급 인민위원회와 정무원 및 행정위원회의 지도밑에 국토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동법 제7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토지의 소유·이용·관리관계가 국가의 감독·통제하에 놓여 있다. 따라서 토지관리질서를 규율하는 법체제도 매우 단순화되어 주로 토지법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이며, 이에 따라 토지법 제4장에서는 국토관리기관, 기타 농업지도기관 등이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할 토지보호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유이며, 다만 토지의 공공성을 근거로 법률에 의하여 사유재산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개발 등이 일부 제한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토지관리질서에 대한 법적 규율도 매우 복잡다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소유제도 및 법적 규율제도상의 이질성은 국토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에 있어서 그대로 반영되어 한국과 북한 형법간에 극단적인 이질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와 한국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간의 체제상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북한 형법상 국토관리질서와 관련한 범죄로는 토지남용·폐경·유실죄, 지하자원란굴죄, 과실로 인한 산불죄, 삼림탄도벌죄, 수산 및 동식물 자원 보호관리질서침해죄, 공해현상방지법규위반죄, 국가건물 또는 공공시설물 보호관리위반죄 등이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4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제3절 국토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우리나라에서 국토관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당의 국토건설정책에 튼튼히 기초하여 국가의 유일적인 지도와 감독 밑에 국가적 관리와 전군중적 관리를 밀접히 결합시키며, 자연부원에 대한 나라의 전망적수요와 당면한 수요를 옹계 타산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 ○ 토지보호사업

북한에서 토지보호사업은 농경지와 산림, 강하천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토지를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을 말한다. 북한 형법은 자연재해로부터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토지보호사업을 전혀 하지 않거나 되는대로 하여 토지를 잃어버렸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과 같이 토지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많은 토지를 유실시키는 경우에는 토지남용·폐경·유실죄의 적용을 받아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의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84조).

한국의 형사법에는 북한의 토지남용·폐경·유실죄에 해당하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개별행위유형에 따라서는 농지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84조 : 많은 토지를 람용하였거나 폐경시킨 자 또는 토지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많은 토지를 류실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농경지와 산림, 강하천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토지를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사업, 땅이 비물에 씻겨내려가거나 떨어져나가지 않도록 강 상류에 나무를 심어 산림을 조성하고 논밭머리에 버들을 심거나 돌을 쌓으며 강바닥을 파내고 뚝을 쌓고 탄광, 광산 등에서 미광과 버럭이 강에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비탈밭을 다락밭으로 만들며 보호림을 조성하는 것 등이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 ○ 동 뚝

동뚝은 큰 물이 넘쳐나거나 넘쳐 들지 못하게 크게 쌓은 제방을 말한다. 북한에서는 강하천의 보호에 관한 법규를 어겨 동뚝을 파괴하는 때에는 강하천보호관리위반죄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의 처벌을 받는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9조 : 강하천보호에 관한 법규를 어겨 동뚝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였거나 강하천보호림을 찍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큰 물이 넘쳐나거나 넘쳐들지 못하게 크게 쌓은 뚝.

### ○ 사회주의로동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토지·자본 및 노동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회주의체제하에서는 오직 노동만이 모든 부가가치를 창조한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노동에 대한 관리는 국가경제활



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헌법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건설은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건설된다고 선언하면서, 근로자의 노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규정하고 있다(북한 헌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참조). 노동에 관한 이러한 기본입장에 입각하여 북한은 자신들의 사회주의 노동법은 근로자가 자연과 사회와 자기 자신을 개조하여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숭고한 역사적 임무수행에서 맡겨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원칙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규정한 새로운 유형의 독창적인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지위가 노동의 성실성에 의하여 규정되며, 노동과정에서 사람 자체가 개조되고, 사회주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근로자 속에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며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노동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가치를 통치이데올로기에 종속되도록 변형시키고 있다.

한편, 북한은 노동관계법에 벌칙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형법에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즉, 북한의 노동관계법에서는 1946년부터 벌칙에 관한 한 일체의 규정을 두지 않고, 형법 제4장 제4절에서 사회주의 노동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입법체계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서 근로계약 및 이행의 전과정에 걸쳐 사용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요구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입법체계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것이다. 북한 형법은 사회주의노동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로 노동보호 및 노동안전시설을 갖추어 주지 않는 죄(동법 제92조), 노동안전기술규정위반죄(동법 제93조), 교통사고죄(동법 제94조), 사회주의분배원칙위반죄(동법 제95조), 여성에게 금지된 노동을 시킨 죄(동법 제96조)을 규정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형법 제4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제4절 사회주의로동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	---

## ○ 노동보호

노동보호는 노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말한다. 즉, 노동보호는 유해노동을 없애고 근로자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며 노동생산능률을 높이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북한은 노동보호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노동보호조건을 갖추는 것에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원만히 실시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보호의 주요내용으로는 ①노동의 합리적인 조직(노동시간, 휴식시간, 휴식일, 휴가 등) ②노동안전보장(건축물·기계·공구에 대한 안전조치, 유해·위험물취급에 대한 안전조치, 작업장과 기계 및 공구의 합리적 배치 기타 안전기술의 도입 등) ③위생설비의 보장과 노동과정에 대한 위생학적 대책(구급처치함·목욕탕·세면장·휴게실·탈의실·건조실·여성위생실·화장실 등 위생문화시설과 건강보호시설의 설치, 근로자에 대한 정기건강진단과 예방치료, 조명·채광·난방·환기·온습도·가스·먼지·소음·진동·유해광선 등에 대한 위생학적 조건의 보장 등) ④노동보호물자의 공급(개인방화용구의 지급, 유해노동에 대한 해독제 및 영양제의 지급 등) ⑤안전기술교육(안전기술조작법의 게시, 안전기술에 대한 시험의 실시, 재해사고의 예방과 위생지식의 보급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북한 형법은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의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보호 및 노동안전시설을 갖추어 주지 않아 인명피해 또는 그 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동보호 및 노동안전시설을 갖추어 주지 않는 죄). 한국의 형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개별 행위유형에 따라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에 저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며, 형법상 직무유기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p>관계법조항</p>	<p>형법 제92조 :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의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어 주지 않아 인명피해 또는 그 밖에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로동과정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막으며 해로운 로동조건을 없애고 근로자들에게 자유롭고 안전하며 보다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지어주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것.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로동보호는 사회주의 로동법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p> <p>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35면 : 직맹조직이나 행정지배인이나 다같이 로동보호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로동자들이 자체의 안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직맹조직들은 로동보호사업을 자기 자신의 본신사업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직접 조직 집행하여야 합니다. 직맹조직들은 로동자들 속에서 사고를 미리 방지할데 대한 교양사업을 널리 벌리고 로동조건들을 자주 검열하며 위험한 개소를 찾아 내어 제때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p>

○ 로동안전기술규정

로동안전기술규정은 로동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질서와 규칙들을 규범화한 규정으로 안전기술규정, 표준조작법 등이 이에 속한다. 북한은 생산에 앞서 로동안전을 선행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에 상응하여 북한 형법은 로동안전기술규정을 위반하여 인명피해, 폭발, 화재와 같은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로동안전기술규정위반죄를 적용하여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 형법상의 로동안전기술규정위반죄에 상응하는 한국형법의 규정은 없으나 개별 행위유형에 따라서는 직무유기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관계법조	형법 제93조 : 로동안전기술규정과 작업규를 어겨 인명피해 또는 그 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로동안전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질서와 규칙들을 규범화한 규정

### ○ 사회주의분배원칙(위반죄)

사회주의분배원칙이라 함은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국가경제계획기구에 의한 분배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분배대상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자 자신과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말한다. 북한 형법은 이러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위반하여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정확히 평가를 하지 않고 심히 그릇되게 평가하여 노동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회주의분배원칙위반죄). 북한 형법학자들에 의하면 북한에서 사회주의분배원칙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의의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일하지 않고 남의 덕에 살려고 하거나 일을 적게 하고 보수를 많이 받으려 하며 노동을 천시하는 것과 같은 낡은 사상잔재를 근절하고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가지게 하며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기술기능수준을 제고시켜 생산력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낡은 사상을 조장하고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창의창발성을 저하시키는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관계법조	형법 제95조 : 사회주의분배원칙을 고의적으로 어겨 로동의 량과 질에 대한 평가를 심히 그릇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다시 말하면 번 것만큼 분배하여 주는 원칙.

북한용례	김일성저작선집(제14권 68면) : 사회주의분배원칙이라는 것은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일한만큼, 번것만큼 분배하여주는것입니다. 많이 일하여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은 몫을 분배하여주고, 적게 일하고 적게 번 사람들에게는 적은 몫을 분배하여주는 것이 사회주의분배원칙입니다.
------	---

○ 여성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직종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된 여성들을 특별히 보호한다는 원칙(북한 헌법 제22조)을 보장하기 위하여 북한 노동법은 여성노동자들을 냉한 작업, 유독물을 취급하는 작업,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작업에 배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임신부와 젖먹이 어린애가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야간노동을 금지하며, 젖먹이시간과 산전산후휴가제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10세 미만의 어린이를 3명 이상 부양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는 6시간의 단축된 노동이 적용되며, 세대에 노력자가 없을 경우에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관계없이 여덟시간에 해당하는 노동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형법은 이와 같은 여성노동자의 보호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에게 금지된 직종의 노동을 시킨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성에게 금지된 노동을 시킨 죄). 한국 형법은 북한 형법의 이와 같은 규정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 51조, 제56조 내지 제62조, 제107조 내지 제112조 등이 이에 일부 상응하는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 법 조 항	형법 제96조 : 여성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직종의 로동을 시킨 자는 1년 이하의 로 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김일성저작선집(제4권 181면) : 여성들을 로동에 참가시키되 반드시 그들의 체질에 알맞는 일을 시 켜야 합니다.

### Ⅲ. 社會主義文化를 侵害하는 犯罪에 관한 用語

#### ○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하는 범죄

북한은 사회주의문화는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밑에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 요구에 부응하고, 근로인민대중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창조되는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로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고 노동계급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는데 복무한다고 한다. 북한은 이러한 문화관에 입각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문화분야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즉 근로자를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하고,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전제하에,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철저한 문화혁명의 수행,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전면적 확립,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혁명적 문화 예술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문화에 관한 이러한 기본입장은 문화관련 형사법규정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즉 북한 형법은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고 있는 반동적 부르조아문화와 착취사회의 낡은 문화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의 합법칙적 요구라는 전제하에, 과학·교육·문화사업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5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하는 범죄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밑에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 요구에 맞으며 근로인민대중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창조되는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문화

○ 창의고안권

북한에서 창의고안권이란 기술적 개선안이나 합리화안에 대하여 그 제안자가 가지는 인격적 및 재산적 권리를 말하며, 창안권이라고도 한다. 북한은 창의고안을 근로자들로 하여금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인민경제를 촉진시키는 영예로운 혁명사업으로 파악하며, 따라서 국가는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공학적원리를 응용하여 기계설비의 구조, 기술공정, 생산방법, 제품의 질 등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술경제적 제안(기술적 개선안)을 낸 사람과 기업소의 기계설비, 자재, 원료, 노력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경제적 제안(합리화안)을 낸 사람에게 그 제안과 관련하여 일련의 인격적 및 재산적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를 발급하고 그 창의고안을 도입하여 얻어진 절약액에 기초하여 상금을 준다고 한다. 창의고안의 성과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전적으로 국가에 귀속하며, 국가는 창의고안의 성과를 인민경제의 모든 부분에 신속히 도입·보급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한다. 북한 형법은 탐욕·질투 등의 비열한 동기에서 창의고안 등과 같은 다른 사람의 창작품을 고의적으로 그릇되게 평가하여 목살하거나 다른 사람의 창의작품을 자기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자에게는 저작·발명·창의고안의 목살·도용죄를 적용하여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 형법상의 저작·발명·창의고안의 목살·도용죄는 한국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보호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한국의 경우는 지적소유권에 대해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발명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관 계 법 조	형법 제98조 : 탐욕, 질투 그 밖에 비열한 동기 밑에 저작, 발명, 창의고안, 문학 예술작품을 고의적으로 그릇되게 평가하여 목살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창작품을 자기의 이름으로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	---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과학기술적 가치가 높고 인민경제적 의의가 큰 새로운 기계나 기술을 처음으로 만들어내거나 연구해내는 일. 김일성저작선집(제2권 237면) : 일은 더 쉽게 하고 생산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새로운 창의고안과 발명을 하여야 합니다.
------	---

○ (유치원 · 탁아소 어린이보호관리질서위반죄)

북한 형법 제99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 · 탁아소 어린이보호질서위반죄란 유치원 · 탁아소에서 일하는 교양원, 보육원, 의료일군, 후방경리일군 등이 어린이에 대한 보호관리를 심히 불성실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범죄를 말하며, 유치원 · 탁아소 어린이들의 국가적 보호관리질서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이 죄는 결과범으로 어린이에 대한 보호관리를 불성실하게 하여 어린이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성립된다. 이 죄에 상응하는 한국 형사법상 규정은 없다. 다만 개별적 행위유형에 따라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99조 : 유치원, 탁아소일군이 어린이에 대한 보호관리를 심히 불성실하게 하여 중상을 입게 하였거나 죽게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	--

○ (의료사고죄)

북한 형법상 의료사고죄는 의료일군이 환자에 대한 치료와 간호를 불성실하게 하였거나 약을 잘못 주어 환자에게 중상을 입혔거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며, 인민보건사업질서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이 죄는 결과범으로서 중상해 정도에 이르는 건강장애나 사망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된다.



이에 상응하는 한국 형법상 규정은 없으나, 개별적 행위유형에 따라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의료법 위반죄, 약사법 위반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100조 : 의료일군이 환자에 대한 치료와 간호를 심히 불성실하게 하였거나 약품을 잘못 주어 건강에 큰 장애를 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환자를 죽게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의료활동과정의 사고로서 의료일군이 의료행위를 잘못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

○ 불법의료죄

북한 형법상 불법의료죄는 의료일군의 자격이 없는 자가 이기적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를 불구자로 만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를 의미한다. 이 죄는 불구나 사망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되는 결과범이다. 북한 형법서에 의하면 의료지식이 전혀 없는 자가 의사를 가장하여 돈벌이를 위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속여먹은죄로 처벌되나, 불구나 사망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불법의료죄로 처벌된다고 한다.

이에 상응하는 한국 형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개별적 행위유형에 따라서는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저촉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101조 : 의료일군이 아닌 자가 이기적 목적에서 의료행위를 하여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불구로 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	--

#### IV. 國家의 一般行政秩序를 侵害하는 犯罪에 관한 用語

##### ○ 一般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북한 형법상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는 침해되는 사회관계에 따라서 크게 행정질서일반을 침해하는 범죄, 국민의 국방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범죄, 국경출입 및 항해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범죄와의 투쟁을 저해하는 범죄로 구분된다. 북한은 국가의 일반행정질서를 철저히 세우는 것이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하며, 국가의 규율과 질서를 강화하여야 모든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통일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국가적인 조직생활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 형법은 국가의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로 ①집단적 소동죄(동법 제103조), ②직무집행방해죄(동법 제104조), ③허위풍설날조·유포죄(동법 제105조), ④문서·증명서 위조사용죄(동법 제106조), ⑤인화성·폭발성·방사성 물질 불법수송죄(동법 제107조)를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 국방상 의무위반죄로는 ①군사복무동원기피죄(동법 제108조), ②경비근무규정위반죄(동법 제109조), ③군사적 경비근무방해죄(동법 제110조), ④무기·탄약·전투기술기자재의 절취·탈취·파손죄(동법 제111조), ⑤군수물자분실·과실파손죄(동법 제112조), ⑥폭발물절취 및 불법휴대·양도죄(동법 제114조), ⑦국가·군사기밀누설 및 비밀문서분실죄(동법 제115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경질서 및 항해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로 ①영공·영해침입죄(동법 제116조), ②불법적인 국경출입죄(동법 제117조), ③불법적인 국경출입협조죄(동법 제118조), ④항해·어로구역이탈죄(동법 제119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와의 투쟁을 저해하는 범죄로는 ①범죄에 대한 거짓신고·거짓진술죄(동법 제120조), ②일반범죄은닉죄(동법 제121조), ③일반범죄 불신고죄(동법 제122조), ④교화인·구류인 도주죄(동법 제

123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6장 국가의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행정기관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체계와 규범에 따라 정하여 놓은 절차 또는 활동방식. 출퇴근질서, 작업질서를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내부질서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집단적 소동(죄)

집단적 소동이란 다중이 집단적으로 분위기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북한 형법은 반국가적 목적없이 집단적 소동·집단적 소요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의 명령·지시에 응하지 않고 반항하는 행위, 사회질서를 흑심하게 문란시키는 소동, 즉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소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 국가의 행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자에 대해서는 집단적 소동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단적 소동죄는 북한 형법상 국가의 행정질서를 문란시키는 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 죄는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감행하는 조직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한 두 명이나 몇 명이 개별적 관리일군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동법 제104조의 직무집행방해죄와 구별된다. 이 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동법 제103조제1항). 다만 무기 또는 흉기를 이용하여 소동을 일으켰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과정에 살인·파괴와 같은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동조 제2항), 그 주모자와 주동분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동조 제3항).

북한 형법상의 집단적 소동죄에 상응하는 한국 형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개별적 행위유형에 따라서는 소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p>관계법항</p>	<p>형법 제103조 : 반국가적 목적이 없이 집단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사회질서를 흑심하게 문란시키는 것과 같은 소동을 일으킨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여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살인, 파괴 같은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항의 행위를 한 주도자와 주동분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소란스럽게 떠들어대는 일. 분위기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사건이나 변</p>

○ 직무집행(방해죄)

직무집행이란 공무원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 형법은 관리일군의 적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폭행·협박·모욕과 같은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또는 당 및 근로단체일군의 사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집행방해죄는 개별 관리일군의 직무상 활동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동법 제103조의 집단적 소동죄와 구별된다. 북한 형법상의 직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첫째, 관리일군의 직무상 임무수행을 방해하여야 하며, 둘째, 폭행·협박·모욕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일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야 하고, 셋째, 관리일군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야 한다.

북한 형법상의 직무집행방해죄는 한국 형법상의 공무원집행방해죄에 상응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관리일군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폭행·협박 이외에 모욕행위까지도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관 계 법 조	항	형법 제104조 : 폭행, 협박, 모욕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일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	--

○ 공민증

북한에서는 일정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의 헌법상의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을 공민이라고 하며, 공민증은 바로 공민임을 나타내는 국가적 증표를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만 17세 이상의 모든 사람(행위무능력자는 제외)은 성별·성분·신앙·재산 및 지식의 정도 여하에 관계없이 공민증을 교부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공민증을 교부받은 공민은 정치·경제·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헌법상의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고 한다. 한편, 북한의 공민증에는 일반공민증과 임시증명서가 있다. 임시증명서는 신분을 정확히 판명할 수 없거나 공민증분실사유가 확인되지 못한 경우에 교부되며, 그것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는 정식의 공민증이 교부된다.

북한 형법은 공민증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에는 문서·증명서 위조사용죄를 적용하여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 형법상의 문서·증명서 위조사용죄는 한국 형법상의 문서에 관한 죄(동법 제225조 내지 제237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한국 형법상의 문서에 관한 죄와 비교할 때 북한 형법상의 이 죄는 사문서가 이 죄의 객체로 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고, 구성요건 자체도 매우 포괄적이며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형법 제106조 : 리기적 목적 또는 비열한 동기에서 문서, 공민증, 증명서를 감추었 거나 처분하였거나 또는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것인줄 알면서 써먹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	--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나라의 국민임을 밝히는 법적인 증명문건. 우리나라에서 국민증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영예를 확증해주는 국가적 증표로서 17세 이상의 국민에게 내어준다.
------	---

○ 군사복무(동원기피죄)

북한은 군사복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임과 동시에 영예로운 혁명과업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형법은 국민의 의무이자 영예로운 혁명과업인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지정된 기일 안에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사동원기피죄를 적용하여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사복무동원기피죄는 노동적위대, 군사교도대, 붉은 청년근위대의 훈련동원을 기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질병 기타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한 기일 안에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북한 형법상의 군사복무동원기피죄에 상응하는 한국 형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병역법,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등 병무관련 특별법에서 관련 기피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108조 : 법이 정한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군대에 입대하여 제대될 때까지 군인으로써 맡겨진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

○ 국가비밀루설(죄)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국가비밀이란 국가활동이나 국가적 문제

에 속하는 비밀을 의미하며, 여기서 비밀이란 출판물이나 보도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일체 자료와 사실을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누설은 자기가 알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비밀자료를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형법은 국가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계급적 각성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하는 극히 위험한 현상으로 적대분자들에게 이용될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사업에 엄중한 해를 주는 국가기밀누설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형법학자들에 의하면 북한 형법상 국가기밀누설은 말로 전달하거나 서류보관을 잘못하여 남이 알게 하거나 공공연히 또는 은밀히 남에게 알려주는 등 그 방법과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며, 누설뿐만 아니라 분실(일시적 분실을 포함)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반혁명적인 의도로 국가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국가기밀누설죄가 아니라 조국반역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북한 형법은 국가비밀누설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기관, 기업소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게 함으로써 적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적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115조 : 국가 및 군사비밀을 누설한 자 또는 비밀문서를 분실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활동이나 국가적 문제에 속하는 비밀.

○ 구류보전처분결정

북한의 형사소송법상 구속처분에는 피심자를 구류하는 구속처분, 피심자

를 자기 집에 억류하는 구속처분 및 피심자를 정해진 지역 또는 사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구속처분이 있다(동법 제104조). 이 가운데 피심자를 구류하는 구류처분은 피심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강제처분으로서 1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심자가 증거인멸, 조사방해 또는 예심이나 재판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06조). 또한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구류의 구속처분결정에 따라 피심자를 체포할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류의 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피심자를 구류할 기관에서는 결정서등본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예심을 2개월 안에 종결할 수 없을 때에는 시·군예심기관과 도(직할시)예심기관은 도(직할시)검찰소 소장에게, 중앙예심기관은 중앙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2개월간 다시 연장할 수 있으며, 여기서 다시 구류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때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2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108조). 따라서 북한의 예심기관은 최대 5개월까지 피심자를 구류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임신한 피심자에 대해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의 구속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06조).

북한의 형법은 구류보전처분결정에 따라 구류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구류시설을 파괴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교화인·구류인 도주죄). 이는 한국 형법상의 도주죄, 특수도주죄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르다.

관 계 법 조	형법 제123조 : 교화받고 있는 자 또는 구류보전처분결정에 따라 갇혀 있는 자가 도망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시설을 파괴하였거나 경비원에게 폭행을 하고 도망친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	---



<p>관계법조항</p>	<p>형사소송법 제104조 : 구속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피심자를 구류하는 구속처분 2. 피심자를 자기 집에 억류하는 구속처분 3. 피심자를 정해진 지역 또는 사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구속처분</p> <p>형사소송법 제106조 : 구류의 구속처분은 1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심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조사를 방해하거나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할 수 있다. 임신한 피심자에 대해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 구류의 구속처분을 할 수 없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범죄자가 범죄의 증거를 없애든지 범죄의 사실을 알 수 없게 방해하든지 예심 또는 공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을 때에 그를 일정한 곳에 가두는 것</p>

○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

북한에서 관리일군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자기가 맡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정적 또는 임시적으로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고 그것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기관이나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일정한 당적·사회적 직무를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일군이 아니다. 또한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모두 관리일군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경제적 활동을 조직·지휘하고 사업을 처리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거나 직무상 일정한 법적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관리일군이 된다. 결국 북한에서 관리일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직능, 사업상 권한을 가지고 사람을 지휘하고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북한의 형법은 관리일군들의 관료주의적 사업작풍과 방법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관리일군들은 인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당과 인민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 의무가 있다는 것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북한 형법은 관리일군의 직무상의 범죄로 직권남용죄, 월권행위죄, 직무태만죄, 신소청원묵살죄, 국가기관의 권위훼손죄, 법일군의 권력남용죄, 뇌물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123조 : 관리일군이 리기적 목적으로 직권 또는 직위를 람용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게 한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경제관리운영에 대한 지휘기능을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일군(관리일군)이 자기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사업의 올바른 집행을 침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

○ 직권람용(죄)

북한 형법상 직권 또는 직위의 남용이란 관리일군이 자신의 사업상 권한과 직위를 직무상 본래의 사명과 어긋나게 함부로 악용한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일군의 직권 또는 직위의 남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된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사업분야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이어야 한다. 따라서 당해 행위가 직무상 권한 또는 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사업분야내에 속하는 것일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되나, 직권 또는 직위와 관련하여 행할 수 없는 행위이거나 그것을 벗어난 경우에는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 둘째, 자기의 사업분야와 관련된 행위라 하더라도 자기의 직무상 권한의 범위 안에서 수행된 행위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기의 권한을 벗어나 자기 상급자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월권행위가 된다. 셋째, 수행된 행위가 직무상 본래의 사명에 어긋나는 행위이어야

한다. 즉 수행된 행위가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거나 행세를 하기 위한 행위로 되었을 경우에만 직권남용이 된다.

북한 형법은 국가의 법규율과 법질서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남용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는 전제하에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 가운데서 가장 중한 범죄로 직권남용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 형법은 관리일군은 자기의 직권을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쉽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관리일군의 직권남용행위는 당과 국가와 인민대중을 이탈시킬 수 있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북한의 형법서에 의하면 엄중한 결과에는 우선 국가기관·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의 사업에 명백히 큰 지장을 주었거나 재산상 큰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물론, 국가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거나 사회적 질서를 문란시켰을 경우 등도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북한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는 한국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으나, 행위주체 등 그 구체적인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상당히 다르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124조 : 관리일군이 리기적 목적으로 직권 또는 지위를 람용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게 한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기관일군이 사업상 권한과 직위를 탐욕적 목적이나 행세를 하는데 리용한 범죄.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본신사업과 관련이 없는데 행사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 월권행위(죄)

북한 형법상 월권행위란 자기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말한다. 월권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첫째, 자기의 상급자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불법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둘째, 사업상 자기의 상급자만이 수

행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안에 속하는 행위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기 상급자의 권한에 속하지 않거나 자기 상급자도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월권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하에서 직권남용이 된다고 한다.

북한 형법은 올바른 사업체제와 사업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일군이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넘어 자기 상급자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월권행위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 형법상 월권행위죄의 경우 월권행위를 한 동기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이기적 목적이 아니라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월권행위를 한 경우에도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월권행위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북한 형법상의 월권행위죄는 한국 형법상의 직권남용죄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기관의 종사자 이외에 기업소 등의 관리일군도 행위주체가 되는 등 구체적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르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125조 : 관리일군이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관리일군이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는 범죄

○ 직무태만(죄)

직무태만이란 맡겨진 일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 북한 형법은 관리일군이 맡겨진 일을 태만히 하여 사업을 지연시켰거나 무질서하게 만들어 국가에 손실을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직무태만죄). 북한 형법이 직무태만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군들의 관료주의적 사업작풍과 보신주의, 소극성으로 인한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을 태만하는 형상을 극복하여 직무의 기동적이고 적

시적인 집행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형법상의 직무태만죄는 일반적인 직무태만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무태만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태만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조항을 적용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물자보관관리사업을 태만히 함으로써 물자를 부패·변질시킨 경우에는 직무태만죄가 성립되지 않고, 원료자재의 부패·변질·유실죄가 성립된다.

북한 형법상의 직무태만죄는 한국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북한 형법의 경우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도 직무태만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 형법의 경우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로 한정하고 있는 등 구성요건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관계법조	형법 제126조 : 관리일군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사업을 지연시켰거나 무질서하게 만들며 국가에 손실을 주었거나 인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것과 같이 직무를 태만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일군이 맡겨진 일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 사업에 해를 주는 직무상의 범죄

○ 신 소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신소는 개인 또는 집단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하여 당과 국가기관, 기업소, 근로단체에 제기하는 인민의 요구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공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로 신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은 신소제도의 의의를 근로자들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국가관리에 인민대중을 적극적으로 참가시켜 국가기관과 관리일군의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민

주적인 제도의 하나라고 한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69조 :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안에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형법 제127조 : 관리일군이 공민의 신소, 청원을 고의적으로 묵살하였거나 그릇되게 처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와 리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또는 침해된 권리와 리익을 회복시켜줄데 대하여 당 및 국가기관, 기업소, 근로단체에 제기하는 인민들의 요구.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조선로동당출판사, 511면) : 인민정권기관들로 하여금 인민생활을 항상 깊이 연구하며 자기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인민대중에게 의거할 줄 알게 하며 인민들의 신소와 청원들을 책임적으로 제때에 해결함으로써 인민대중 속에서 정권기관의 위신을 부단히 높이도록 세심한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까.</p>

○ 청 원

북한에서 청원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무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개별적 공민의 이익의 침해와는 관계없이 그 사업의 개선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청원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관리일군의 활동과 관련하여 개별적 공민의 이익침해와 관계가 없이 제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소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69조 :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안에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형법 제127조 : 관리일군이 공민의 신소, 청원을 고의적으로 묵살하였거나 그릇되게 처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p>
----------------------	---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요구나 국가기관, 사회협동 단체 및 공무원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기하고 풀어줄 것을 바라는 것
------	---

○ 신소·청원묵살(죄)

북한 형법 제127조가 규정하는 신소·청원묵살죄는 공민의 신소·청원을 접수하지 않거나 묵살하며 그릇되게 처리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묵살이라고 함은 신소·청원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응당 처리하여야 할 신소·청원을 처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행위들을 의미한다고 한다. 또한 신소·청원을 그릇되게 처리하는 것도 이 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바, 신소·청원을 당적 원칙과 어긋나게 처리한 경우는 물론, 신소·청원자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는 행위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죄에 상응하는 한국 형법상의 규정은 없다. 다만, 개별적 행위유형에 따라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관계법조	형법 제127조 : 판리일군이 공민의 신소, 청원을 고의적으로 묵살하였거나 그릇되게 처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	---

○ (법일군의 권력남용죄)

북한 형법상의 법일군의 권력남용죄란 수사·예심·검찰·재판기관에 종사하는 법일군이 사람을 함부로 구속·구인하거나 범죄자를 불법적으로 석방하거나 진술을 강요하여 사건을 과장·날조하거나 부당하게 판결·판정하는 범죄를 말한다. 북한의 형법학자들에 의하면 법일군의 권력남용죄는 객관적으로 다음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한다. 첫째, 사람을 불법구속하는 행위이다. 불법구속이란 근거없이 불법적으로 사람의 자유를 박탈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람을 불법구인하는 행위이다. 불법구인이란 진술 또는 감정을 받게 하기 위하여 수사·예심·검찰·재판기관에 불법적으로 강요하여 끌어오는 것을 말한다. 불법체포, 불법구류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불법적으로 범죄자를 석방하는 행위이다. 여기에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석방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방하는 모든 경우가 해당된다. 넷째,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이다. 이는 범죄혐의자, 피심자, 피소자, 증인 등으로부터 강압적 방법으로 진술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인에게 부당한 감정을 요구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다섯째, 사건을 과장·날조하는 행위이다. 여섯째, 부당한 판결·판정을 하는 행위이다. 부당한 판결·판정을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사실과 틀리게 판결·판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형법상의 범일군 권력남용죄에 상응하는 한국 형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개별적 행위유형에 따라서는 불법구속이나 불법구인은 불법체포·감금죄에, 범죄자를 놓아주는 행위는 직무유기죄나 간수자도주원조죄에, 진술을 강요하거나 사건을 날조하는 행위는 각각의 행위태양에 따라 직권남용죄나 폭행·가혹행위죄 또는 일정한 경우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관 계 법 조	형법 제129조 : 사람을 불법구속, 불법구인하였거나 범죄자를 비법적으로 놓아준자 또는 진술을 강요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하였거나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



## V. 社會主義的 共同生活秩序를 侵害하는 犯罪 등에 관한 用語

### ○ 불량자(적 행위죄)

북한에서는 사상 도덕적으로 뒤떨어지고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실이 못된 자를 불량자라고 하며, 공산주의도덕과 심히 어긋나는 불순하고 유치하며 파렴치한 행위로 사회주의 공동생활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특히 불량자적 행위라고 한다.

북한 형법 제131조는 이와 같은 불량자적 행위를 한 자에게는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불량자적 행위죄). 북한에서는 추잡한 행위, 즉 변태행위를 포함한 성관계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이나 매음행위 및 매음중개행위 등을 한 경우에도 불량자적 행위죄의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다만, 관리일군이 불량자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량자적 행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권위훼손죄(동법 128조)가 성립한다. 북한 형법상의 불량자적 행위죄에 상응하는 한국 형법의 규정은 없으나 개별 행위유형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131조 : 파렴치한 불량자적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상 도덕적으로 뒤떨어지고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실이 못된 자.

### ○ 미성인

아직 성인에 이르지 못한 자로 법률상 미성인(미성년자)는 보통 법률행

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없다. 북한에서는 성년 나이는 16세이며, 따라서 16세미만인 자는 법률상 미성인(미성년자)가 된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132조 : 미성인에게 범죄를 감행하도록 추기거나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하며 불량자로 되게 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자

### ○ 직권(참용죄)

직권이란 직무상의 권한을 말한다. 북한에 있어서도 직무상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일군이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북한 형법은 인민주권의 위신을 보장하고 국가관리질서의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직권참용행위를 한 자, 즉 관리일군이 아닌 자가 관리일군으로 가장하거나 관리일군이 다른 관리일군의 직권을 행사하여 국가기관의 위신을 훼손시켰거나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직권참용죄). 자기 상급자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권참용죄가 성립하나, 자기 상급자로 가장함이 없이 권한을 함부로 행사한 경우에는 월권행위죄가 되며, 자기 직권의 범위 안에서 직권을 함부로 행사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북한 형법상의 직권참용죄는 한국 형법상의 공무원자격사칭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상이하다.

관계법조항	형법 제133조 : 관리일군이 아닌 자가 관리일군으로 가장하여 또는 관리일군이 다른 관리일군의 직권을 행사하여 국가의 위신을 훼손시켰거나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직권에 속하는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키거나 국가의 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북한 형법상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는 한국 형법상의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북한 형법은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21개 조문을 두고 있다. 북한 형법상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는 침해하는 법익이 개인의 생명·신체 및 인격에 관한 것인가, 재산권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크게 공민의 생명·건강·인격을 침해하는 범죄와 공민의 개인소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구분된다. 이 구분은 북한의 형법전 자체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법전상의 구분으로 강학상으로 다시 전자의 경우 공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고의적 중살인 및 경살인죄, 발작적 격분에 의한 살인죄, 정당방위초과살인죄, 과실적 살인죄), 공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범죄(고의적 중상해죄, 발작적 격분으로 인한 중상해죄, 과실에 의한 중상해죄, 경상해죄, 폭행죄), 공민의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어린이를 훔쳤거나 감춘죄, 불법적인 자유구속죄, 모욕 및 명예훼손죄, 강간죄,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간음죄) 등으로 구분하고, 후자는 개인재산약취죄(개인재산 훔친죄, 개인재산 빼앗은 죄, 개인재산 강도죄, 개인재산 속여먹은 죄, 개인재산 횡령죄,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 약취죄, 개인재산 강도죄)와 개인재산파괴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관계 법 조	형법 제8장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	--------------------------



## 第4章

# 北韓 刑事訴訟法上 用語의 概念



## 第4章 北韓 刑事訴訟法上 用語의 概念

### 第1節 刑事訴訟法の一般에 관한 用語의 概念

#### I. 刑事訴訟法の基本에 관한 用語

##### ○ 형사소송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형사소송은 당의 계급노선과 균중노선에 철저히 의거하여 진행된다고 한다. 형사소송의 직접적 임무의 하나는 형사사건의 진상을 밝혀 확정하고 범죄자에게 법이 정한 형벌을 지우며, 그것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혁명적 준법의식을 키우고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의 임무는 범죄로 인한 손해의 정도를 확정하여 보상하고 범죄가 발생하게 된 조건들을 밝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은 형사사건제기, 증인 및 피심자 심문, 공판심리와 판결선고, 판결의 집행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북한의 형사소송의 내용을 보면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일련의 쟁송활동뿐만 아니라 범죄포착과 증거수집, 범인의 구속 등의 수사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형사소송도 넓은 의미의 형사절차를 규율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에는 범죄와의 투쟁을 직접임무로 하는 수사·예심·검찰 및 재판기관과 함께 증인, 감정인, 통역, 입회인, 범죄행위로 인해 물질적 손해를 입은 공민 또는 기관·기업소·단체의 대표들이 참가하며 그밖에 광범한 균중들도 참가한다. 형사소송에 당해 형사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균중들을 참가하도록 하는 것은 북한 형사소송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균중재판방식을 통해 바로 북한주민에게 사회주의적인 가치와 질서를 존

중하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를 얻고 북한체제에 반대하는 행위에 대한 증오심을 고양시켜 당의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관 계 법 조 항	형사소송법 제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수사, 예심, 검찰 및 재판기관들이 계급적 원수들의 책동과 기타 범죄자들의 죄행을 적발, 조사, 확정하고 처리하는 활동.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수사, 예심, 검찰 및 재판기관들이 범죄사건을 적발, 조사, 처리하는 활동

○ 형사소송법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재판소의 조직과 그 활동의 헌법상 원칙에 기초하여 재판활동의 한 분야인 형사재판분야를 규율하는 부문법으로서 제정되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7조에서 "수사, 예심, 검찰, 재판기관들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취급과 처리는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방법, 절차에 따라 한다"고 하여 수사와 예심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 등을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형사소송법에 대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정책을 표현한 것이며, 북한의 정치제도를 보위하기 위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강력한 수단의 하나라고 강조한다. 아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법에 대해 정치가 우위에 서 있으며, 특히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말씀 및 당의 지도에 의하여 법에 대한 정치의 주도적 적용이 강화되어 있다.

이 점에서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김일성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을 표현한 것이며, 북한의 정치제도를 보위하기 위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강력한 수단의 하나로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1조에서 북한



의 형사소송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인민의 생활보장 보다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의 보위가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자유민주국가의 형사소송법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절차의 보호를 통한 인권보호에 형사소송법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점과 다르다.

북한은 1992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1992.1.1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 북한의 최초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함께 채택(1950. 3.3)되어 1954년 부분 개정되고, 1976년 재차 개정되었다(1976.1.1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1976년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마찬가지로 1972년 헌법의 채택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형사소송절차와 사법제도가 체제강화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로서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법은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자백의 증명력제한 등의 규정이 미비되고,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미분리로 인해 재판소의 직권에 의한 형사절차개시를 허용함으로써 형사절차상 전근대적인 요소를 내포하는 등의 제도적 미비점이 많았다. 이에 1992년 형사소송법은 탈이념의 세계사적 조류에 부응하고 전근대적 형사법에 대한 대외적 비난을 의식하여 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p>관계법조항</p>	<p>형사소송법 제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재판, 검찰, 수사, 예심기관들의 활동과 이 활동과정에 생기는 국가기관 호상간, 국가기관과 공민들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부문.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범죄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서 수사, 예심, 검찰, 재판기관들이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부문법.</p>

○ 적아식별원칙

북한에서 敵我識別原則은 김일성이 창시한 것으로 인민혁명정부의 사법시책과 활동에 확고히 구현되었으며, 인민정권의 프로레타리아독재 실현에서 계승발전되었다고 한다. 북한에서 적아식별이란 당의 계급노선에 기초하고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에서 노동계급의 계급적 입장을 구현한 원칙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그래서 적아식별은 계급투쟁에서 투쟁대상을 정확히 확정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진압기능을 높여 반혁명분자(반국가범죄)을 분쇄하는 선결조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계급성에 바탕한 원칙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형사소송법이 북한의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체도를 보위하기 위한 기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것이 반국가범죄와의 투쟁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일면 1990년대의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대한 북한체제의 수호라는 북한의 정책적 입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관계법조	형사소송법 제3조 : 국가는 반국가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어 극소수의 적대분자와 주동분자를 철저히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옹계 배합한다.
북한용례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15면 : 사람들은 언제나 계급적 견지에서 평가하며 당의 계급노선에 철저히 서서 원수와 우리 편을 엄격히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적아식별원칙은 노동계급의 계급적 입장에서 원수와 혁명의 편에 속하는 사람을 가려내는 우리 당의 전략적 원칙이다.

○ 인 권

북한의 형사소송법에서 인권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과거에 비해 형사

소송에서의 인권보호라는 면에서 발전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외형상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진일보한 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실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그것은 북한의 인권관에 대해 검토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인권에 관해 북한식의 독창성과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와 함께 '우리식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인권에 관한 보편적 원리를 부인하는 것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충고를 외면한 것이다. 북한은 헌법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핵심내용으로 '사람중심의 세계관'(동법 제3조)과 '사람중심의 사회제도'(동법 제8조)를 규정하고, 주체사상에 의해 사람의 존엄과 가치는 최상의 경지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인권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북한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식 사회주의'에 입각하여 강조되는 '우리식 인권'은 북한의 주장과 달리 그 참다운 인권보장과는 거리가 있다.

김정일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인민적 성격과 부르췌아민주주의의 반인민적 성격은 인권문제에서 뚜렷이 나타난다고 하여('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제목의 김정일의 담화, 1991.5.5) 인권문제를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의 투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의 인권이 소유자의 재산권 내지 자유권에 불과한데 비해, 북한의 인권은 자주권에 바탕한 근로대중의 인권으로서 그 본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에 대응해 북한에는 어떠한 사회정치적 불안과 단 한명의 실업자·유랑걸식자·문맹자·마약중독자도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즉, 북한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사회·문화적 자유를 잘 보호함으로써 주민들이 이를 향유하기 때문에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권문제는 해당 국가가 자기 실정에 맞게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논의를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특정국가의 내정간섭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는 체제존립

차원에서 인권문제에 대응하는 북한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여론의 질타에 대해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라는 제목의 로동신문의 글(1995. 6. 24)에서 이른 바 '우리식 인권'이라는 인권관을 밝혔다. 이에 의하면, 인권문제는 사람·인민대중을 중심에 놓는 관점에서 해결될 수 있으며, 인민대중이 좋아하면 그것이 곧 인권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인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인권관이 올바른 인권관이라고 하면서 미국식 가치관에 입각한 서방의 인권관을 배격한다. 또한 인권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덕정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인권은 곧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인 '우리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북한에서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였다.

북한은 '우리식 인권'을 강조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자연권에 바탕한 천부인권사상에 입각한 것으로 불가분의 권리라는 인권의 보편성을 부인하고, '우리식 인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서방의 가치관에 입각한 인권개념을 배격한다. 그리고 인권문제는 각 나라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서방국가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우려의 표명에 관해 인권옹호라는 명목으로 내정간섭을 하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북한은 인권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의 자주권과 자결권에 대한 존중원칙이라고 하면서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이유에 따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의 제기에 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인권에 관한 부정적인 태도는 오늘날 인권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강조되고 인권문제의 국제화를 이루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자세로서 국제적인 비난을 사고 있다.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우리식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는 북한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우리식 인권'의 논리를 견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에서 빈부의 차이가 없고 누구나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인간의 권리와 본성적 요구, 참된 삶의 최상의 수준이 보장된다는 북한의 주장은 실현되기 어렵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기구와 국제인권단체들은 그 심각한 상황을 고발하고 있으며, 북한이 인권실태에 관해 최악의 상황에 있음을 국제사회에 전하고 있다.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의 북한실상에 대한 증언은 북한의 실제적인 인권상화의 열악성을 웅변하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형사소송법 제4조 :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활동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한다.</p>
<p>북한용례</p>	<p>정치사전(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옹당 가져야 할 권리. 다시 말하여 정치와 경제, 문화와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가져야 할 권리를 말한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소수 착취계급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착취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아무런 자유와 권리도 가지지 못하며 그들의 인권은 착취계급에 의하여 란폭하게 유린당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아무런 정치적 권리도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짓밟힌다.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남조선은 인권유린의 세계적 표본으로 되고 있다. 인권은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전면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 곧 사람의 자주적 권리.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인권은 그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등 사회생활에서 표현된다. 인권은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제도에서만 철저히 보장된다.</p>

○ 준법교양

북한에서 준법교양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법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준법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세우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옳게 조직 진행함에 있어 중요

한 의의를 가진다고 한다. 준법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 속에 사회주의법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정확히 알려주는 일과 위법현상과 그 해독성에 대하여 잘 알려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한다. 한편, 준법교양은 法規範原文浸透事業과 法解説宣傳事業 등의 방법으로 전개되며, 당의 준법교양체제의 확립을 위해 법무해설원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1982년 12월 김정일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이나 사회주의준법성의 개념은 북한주민에 대한 법적 통제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북한의 1992년 개정헌법은 제18조에서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법무일군대회’(1992. 12.17)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법무생활 강화’가 강조되고, 여기서 주민들의 사상무장의 강화를 위해 외부사조의 침투방지와 경제관리 및 사회질서 유지에 법무일군들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었다. 즉, 북한에서는 김일성에 의해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강화가 강조된 이래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김정일에 의해서는 이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사회주의법무생활 또는 준법성이란 개념이 북한주민들을 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의 사상무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사조의 침투방지와 경제관리 및 사회질서 유지에 법무일군들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된 데에서 주민사상통제와 법무생활 강화의 실재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사회주의법무생활의 본질적 특징은 사회의 전체 성원들을 포괄하는 사회적 생활이며, 사회생활의 전분야를 포괄하며 권력적 성격을 띤 규범생활이며, 그리고 준법성의 요구의 결과로 이루어진 사회생활이라고 요약된다. 또한 이는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인 규율생활인 동시에 국가적인 조직생활이라는 점에서 그 우월성 내지 본질적 특징을 갖는다고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은 주민들의 행동통일과 조직성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사회의 기초인 집단주의원칙을 구현하고자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기본요구로서 온 사회에 혁명적 기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높은 준법의식과 자각적인 준법활동이 포함된다. 그 기본방향은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된 정치적 자각을 가지고 법을 준수집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과 법의 준수집행을 모든 공민들의 의무로 삼는 것이다.

북한에서 준법교양의 강화는 바로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강화를 위한 방도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준법교양의 강화는 바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말하는 데, 이른바 혁명적인 규율의식과 조직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준법교양사업에서 중요한 사항으로는 국가법규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의 확립, 법해설선전 및 교양사업의 전개, 근로자에 대한 법규범내용의 교육, 교육의 다양한 형식 및 방법의 진행, 준법교양체계의 우월성 발양과 법무해설원의 역할제고 등을 들고 있다.

요컨대 북한에서 법은 수령이 제정·공포하고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며, 그 근본목적은 수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노선과 정책의 관철에 있다는 점에서 보면 준법사상의 교양 내지 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 수령의 1인 지배체제의 정당화와 실현에 집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계법조항	형사소송법 제5조 : 국가는 공민들 속에서 준법교양과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범죄를 미리 막는다.
북한용례	정치사전(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법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 준법교양은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널리 해설하여 사람들의 준법의식을 높여줌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법무생활에 주인답게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교양사업이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준법사상 교양, 국가의 법령, 결정, 지시들을 존엄있게 대하고 정확히 지키며 제때에 집행하도록 하는 교양.

## II. 刑事訴訟의 一般規定에 관한 用語

### ○ 사회안전기관(사회안전부)

북한에서 사회안전기관이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강력한 무기로서 당과 수령을 보위하고 북한의 국가사회제도를 수호하며 사회안전질서를 유지하는 국가관리기관을 말한다. 사회안전기관 중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사회안전부이다. 북한의 사회안전부는 한국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1948년 북한 정권수립 당시 내무성 산하에 속해 있다가 1962년 사회안전성으로 분리 독립하였으며, 1972년 사회주의헌법의 채택과 함께 사회안전부로 개칭되었다. 북한의 사회안전부는 정무원 산하조직으로 범죄수사, 예심, 범죄예방, 경비, 보안, 교통질서 및 방화대책, 인구조사, 사찰, 신분등록사업, 교화소 및 노동교양소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p>관계 법 조항</p>	<p>형사소송법 제8조 : 수사는 사회안전, 국가보위기관의 수사일군이 한다. 검사는 필요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사회안전기관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강력한 무기로서 당과 수령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는 정치보위자이며 공화국의 국가사회제도를 계급적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수호하며 사회안전질서를 유지하는 국가관리기관이다. 공화국 사회안전기관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창설되었다. 사회안전기관은 당의 령도밑에 활동하며 검찰기관의 통제를 받는다.</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수령과 당을 옹호보위하고 인민정권과 국가사회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수호하며 인민의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질서를 유지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보위한다.</p>



○ 국가보위기관(국가안전보위부)

국가안전보위부는 국가주석의 직속기관이며, 정치사찰전담기구로서 북한 사회에 대한 정치적 통제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북한의 국가보위기관이다. 연혁적으로 보면 국가안전보위부는 사회안전부 내의 정치보위국의 형태로 존속하다가, 1973년 국가정치보위부로 개편되었고, 1982년 국가보위부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국가안전보위부로 개칭하였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반국가범죄, 즉 정치사상범, 반당·반체제분자 등에 대한 감시·수사·체포·예심·처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국가보위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수사원 및 예심원만이 반국가범죄에 대한 수사 및 예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74조). 국가안전보위부는 고유업무에 있어서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안전부는 수사 및 인원 운영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위부의 업무에 절대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 계 법 조	형사소송법 제8조 : 수사는 사회안전, 국가보위기관의 수사일군이 한다. 형사소송법 제74조 : 반국가범죄사건은 국가보위기관 예심원이 예심하며 일반범죄사건은 그것을 적발한 사회안전기관 또는 검찰기관 예심원이 예심한다.
------------------	---

○ 형사재판

범죄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수사기관과 검찰기관의 역할보다 재판기관의 역할이 더 크고 중요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의 논리보다 정치의 논리가 우선하는 북한에서는 수사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 사이의 상호관계가 명확하게 분리되지 못하고 비정규사법조직의 활동이 정규사법조직의 기능에 우선하는 상황에서 범죄처리에 있어 형사재판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여지가 많다. 실제로 북한에서 범죄발생시 그

처리에 있어 재판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회안전기관 내지 국가보위기관 또는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등이 범죄의 처리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심자·피소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만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시작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동법 제68조), 예심원도 같은 사유로 형사사건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동법 제161조). 또한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으며, 재판소의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동법 제195조). 이런 점에서 재판소는 수사·예심·검찰기관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범죄발생시 범죄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 지역의 당위원회는 수사·예심기관에로의 이관여부를 결정하는데, 범죄내용이 경미한 경우 이른 바 '동지심판회'를 개최하여 자아비판, 강직, 무보수노동 등의 제재를 가하거나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인계하여 적절한 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이에 대해 무보수노동, 벌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하면 정식형사재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처리의 구조하에 있는 북한에서 형사재판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관계법조항	형사소송법 제18조 : 형사재판 이외의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 사실이 죄로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심리확정되어야 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해결하는 재판소의 권력적 활동

### ○ 진술서

진술서는 형사소송법상 진술자가 자필로써 그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북한에서도 이 진술서를 그 내용이 증거적 의의를 갖는 증거문서로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39조).

관 계 법 조 항	형사소송법 제34조 : 수사, 예심, 재판준비, 재판에서는 진술서, 조서, 결정서, 판결서, 판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수사, 예심에서 만든 진술서, 조서와 그것을 고친 때는 작성자의 도장과 진술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으며 결정서에는 작성자가 도장을 찍는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진술한 내용을 적은 문서.

○ 결정서

북한의 형사소송법상 결정서는 수사 및 예심단계에서 검사의 감시와 통제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상 각종 결정서에는 수사시작결정서(동법 제58조), 구금결정서(동법 제66조), 형사책임추궁결정서(동법 제82조), 구인결정서(동법 제87조), 수색결정서(동법 제89조), 구속처분결정서(동법 제101조) 등이 있다. 수사일군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수사시작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며,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결정으로 수사시작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동법 제58조). 또한 예심원은 증거를 찾아내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피심자를 확정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고 그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피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때 피심자에게 변호인선임 및 원조의 권리를 함께 고지하여야 하며, 형사책임결정서에 이를 밝혀야 한다(동법 제81조 내지 84조).

그리고 구속처분결정에 따른 피심자의 체포, 수색·압수시 검사승인의 구속처분결정서나 수색·압수결정서의 제시(동법 제107조, 동법 제132조)는 수사단계에서 인권침해와 신체의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수사기관인 검사에 의한 통제에 불과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법원이 사법적 억제기능을 하는 영장제도와는 그 본질이

다른 것으로 실질적 인권보호장치라고 볼 수 없다. 즉, 북한 형사소송법이 강제처분과 관련하여 미흡하나마 강제처분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강제처분을 제한하여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로서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형사소송법 제34조 : 수사, 예심, 재판준비, 재판에서는 진술서, 조서, 결정서, 판결서, 판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수사, 예심에서 만든 진술서, 조서와 그것을 고친 때는 작성자의 도장과 진술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으며 결정서에는 작성자가 도장을 찍는다.</p> <p>형사소송법 제58조 : 수사일군은 수사시작을 결정한 때로부터 24시간 안으로 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p> <p>형사소송법 제66조 : 법 제65조에 따라 체포한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를 구금하려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으로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체포한 날로부터 10일 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겨야 한다.</p> <p>형사소송법 제87조 : 구인은 구인결정서에 따라 사회안전, 국가보위기관이 집행한다.</p> <p>형사소송법 제89조 : 수색결정서에는 피심자를 찾아내는데 필요한 자료를 적어야 하며 그 결정서를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류의 구속처분결정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p> <p>형사소송법 제107조 : 구류의 구속처분결정에 따라 피심자를 체포할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류의 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피심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결정서 등본을 보내야 한다.</p> <p>형사소송법 제131조 : 수사일군, 예심원이 수색, 압수하려 할 때에는 수색, 압수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일정한 문제에 대하여 회의에서 결의하고 결정한 내용을 적은 글.</p>

## 第2節 訴訟主體에 관한 用語의 概念

### I. 裁判所에 관한 用語

#### ○ 재판기관(재판소)

북한 형사소송법상 재판기관은 구체적 소송사건에 대하여 현실적인 재판권을 행사하는 재판소를 말한다. 북한의 재판소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인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로 조직·구성되어 있다(재판소구성법 제9조). 원칙적으로 3급 2심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앙재판소가 제1심을 재판할 경우 단심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이러한 재판소의 운영체제는 구소련의 제도를 계수한 것으로 현재에도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서 재판소의 수와 소재지는 중앙재판소의 제의에 따라 중앙인민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재판소구성법 제11조). 현재 중앙재판소는 평양특별시에, 도(직할시)재판소는 평양특별시·남포직할시·개성직할시 및 각도 등 12개소에, 인민재판소는 시의 경우 각 시마다, 군·구역의 경우 1~4개의 군·구역을 단위로 1개씩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별재판소로서 군사재판소는 인민군대내에 설치되어 있다. 과거 사회안전부에도 재판국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각 군단·훈련소·사령부별로 군사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1991년 군사재판소의 조직개편으로 인민무력부 내에 재판국을 두어 군사재판을 총괄하되 해군과 공군의 사령부에 별도의 군사재판소를 두어 현재 3개의 군사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3개의 군사재판소는 병렬적 지위에 있으며, 각 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바로 중앙재판소에 상소하도록 되어 있다. 군사재판소는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군인, 사회안전원이 범한 범죄, 군사기관·사회안전기관의 종업원이 범한 죄, 그 밖에 법에 따라 그 관할에 속한

범죄에 관한 형사 제1심 재판을 관할한다.

철도재판소는 과거 관구 및 지구 통운재판소로 2급체제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나, 철도재판소 역시 군사재판소와 마찬가지로 개편되어 1급체제하에 철도부재판소, 북부·동부·서부철도재판소 등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철도부재판소와 북부·동부·서부철도재판소의 관계도 군사재판소와 같이 병렬적 관계에 있다.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범한 죄와 철도운수사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침해한 범죄에 관한 형사 제1심 재판을 수행한다(형사소송법 제182조, 제183조).

관계법조항	형사소송법 제7조 : 수사, 예심, 검찰, 재판기관들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취급과 처리는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방법, 절차에 따라 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형사 및 민사사건의 심리와 해결을 통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실현하는 국가기관. 우리나라 재판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조직 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근거지·해방지구들에 창설된 인민혁명정부의 사법시책들에 그 깊은 력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재판소는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할데 대한 우리 당 활동의 근본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여 활동한다.

○ 인민참심원

참심제는 원래 독일에서 발달된 제도로서 국민으로부터 선거 또는 추천된 자가 직업적 재판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여 재판하는 제도이다. 독일에서 발달된 이 제도는 소련을 거쳐서 북한에 계수되었다.

즉, 북한에서는 인민참심원제도가 1945년 11월 23일 사법포고 제4호 『재판소조직에 관한 건』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인민참심원은 등록된 명부순에 의하여 1년에 14일 동안 각급 재판소에서 1심으로 재판하는 사건에 한하여 재판소구성원으로 참가하여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한다(재판소구성법 제17조). 북한은 인민참심제는 인민정권의 본질에

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며 당이 가르키는 민주주의적 인민공화국 창건의 길에서 민주기지창설을 위하여 정치적 열성과 창발성이 고도로 양양된 인민대중을 국가관리사업에 더욱 광범위하게 인입하여 그들을 나라의 각성된 주인공으로 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한다.

관계법조항	형사소송법 제21조 :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은 자신과 친척이 해당 형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 참가할 수 없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형사 및 민사사건을 심리해결하는데 직접 참가하는 인민의 대표. 재판에서 판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재판소성원으로 되는데 제1심재판에만 참가한다.

### ○ 인민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시·군인민회의에서 선거로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해당 시·군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헌법 제145조, 재판소구성법 제12조). 인민재판소는 최하급재판소로서 수개의 시·군을 모은 구역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으며,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 및 법령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노동, 이혼사건포함)을 심리하는 재판활동을 하며(형사소송법 제180조), 그 외에 중재·법령해설·자료폭로·법률상담 등 군중정치사업도 하도록 되어 있다(재판소구성법 제25조·제26조). 또한 인민재판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판사인 재판장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1심 재판을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재판한다(재판소구성법 제31조). 인민재판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해당 시·군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며, 중앙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로부터 재판사업에 대한 감독을 받고, 주석과 당의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앙재판소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재판소구성법 제40조·제43조·제45조).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52조 :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p> <p>헌법 제153조 :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위원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p> <p>형사소송법 제179조 : 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우리나라에서 형사 및 민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심리해결하는 제일 아래급재판소. 시(구역), 군을 단위로 또는 몇 개의 구역이나 군을 합친 지구를 단위로 하여 설치한다.</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인민재판소는 지역적으로 인민들에게 최대한 접근되도록 설치되며, 그 활동에서 인민들과 밀접히 연결되어있다. 특히 인민재판소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에 기초하여 현지에 나가서 광범한 대중에 의거하여 실정을 료해분석함으로써 당정책과 법에 맞는 정확한 재판을 한다.</p>

○ 특별재판소(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북한에서는 특별재판소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를 두고 있는 바, 군사재판소는 조선인민군대에,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송수분에 조직되어 있다(재판소구성법 제9조·제10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해임하며,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재판소구성법 제14조).

군사재판소는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군인·사회안전원이 범한 죄, 군사기관·사회안전원의 종업원이 범한 죄, 기타 법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관장하고(형사소송법 제182조),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송부분의 종업원이 범한 죄와 철도운수사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관할한다(형사소송법 제183조). 특별재판소의 제1심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은 중앙재판소에서 심리하며(재판소구성법 제41조), 이 경우 인민참심원의 참여는 배제되고,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제2심자이자 최종심인 재판을 한다(재판소구성법 제36조). 특별재판소는 중앙재판소로부터 재판사업상의 감독과 사업행정상의 지도를 받으며, 당과 주석의 영도하에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법을 노동계급적 입장에서 해석하고 적용할 의무를 부담한다(재판소구성법 제5조·제6조·제41조). 한편, 특별재판소를 제외한 각급 재판소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을 임명하는 기관이 동일한 것에 대하여 특별재판소만은 인민참심원을 임명하는 기관이 다른다는 점도 특색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p>관 계 법 조 항</p>	<p>헌법 제152조 :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p> <p>헌법 제154조 :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p> <p>재판소구성법 제9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군사재판소 및 철도재판소를 둔다.</p> <p>형사소송법 제179조 : 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p> <p>형사소송법 제182조 : 군사재판소는 다음의 사건을 재판한다.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군인, 사회안전원이 범한 죄 군사기관, 사회안전기관의 종업원이 범한 죄 이 밖에 법에 따라 그 관할에 속하는 범죄</p> <p>형사소송법 제183조 :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범한 죄와 철도운수사업의 정상적 활동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특별재판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p>

## ○ 중앙재판소

북한의 중앙재판소는 북한의 최고재판기관으로서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하고 사범행정사업을 지도·감독하며(헌법 제160조, 재판소구성법 제40조),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에서 선거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된다(재판소구성법 제12조). 중앙재판소의 재판사업에 대한 감독은 확정된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와 도(직할시)재판소, 군사재판소 및 철도재판소의 제1심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의 심리를 통하여 한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전단, 재판소구성법 제41조). 나아가 중앙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떤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사건이든 이를 직접 재판하거나 같은 급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재판소에 이송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후단). 이는 사실상 심급제도의 의의를 반감시키는 동시에 하급심에 대한 강력한 통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지시와 조선노동당의 사법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지시를 받고, 조선노동당의 사법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판실무상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판사회의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재판소구성법 제43조·제44조). 이와 함께 북한의 중앙재판소는 북한의 주석과 당 중앙을 튼튼히 보위하며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가·사회협동단체의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을 온갖 침해로부터 보호하며, 모든 국가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범위반들을 반대하며 적극 투쟁하도록 함으로써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의 수행에 이바지하고(재판소구성법 제4조), 모든 사업에서 하급기관을 도와주고 대중의 의견을 존중하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 일러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어서 앞장서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재판소구성법 제8조).

이를 위하여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그 앞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60조·제161조, 재판소구성법 제45조). 중앙재판소는 판사인 재판장 1인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부에서 제1심 형사 또는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특별히 법령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재판소구성법 제31조). 도재판소 및 해당 특별재판소의 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과 중앙재판소 이외의 각 재판소의 확정판결 및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 및 재심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부에서 심리하며, 상소·항의사건이나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인민참심원의 관여가 배제된다(재판소구성법 제36조·제37조).

중앙재판소 소장은 중앙재판소의 어떤 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든지 그 사건의 심리에서 재판장이 될 수 있으며, 중앙재판소의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회에서 심리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는 중앙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되는데 중앙재판소 소장은 반드시 중앙재판소 판사회에 참석해야 하고, 그 성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한다(재판소구성법 제38조).

<p>관계법조</p>	<p>헌법 제153조 :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p> <p>재판소구성법 제43조 :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지시와 조선로동당의 사법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하여 지시를 낸다.</p> <p>형사소송법 제184조 : 중앙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의 제1심 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중앙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어떤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같은 급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우리나라 재판기관체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재판소.</p>

○ 도(직할시)재판소

북한의 도(직할시)재판소는 도(직할시)인민회의에서 선거로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된다.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헌법 제153조, 재판소구성법 제12조·제13조·제15조). 도(직할시)재판소는 자기 관할 도(직할시) 안의 인민재판소들의 재판사업을 감독하며 사법행정사업을 관장하고(재판소구성법 제40조), 관할 도(직할시)내의 반국가범죄와 사형 또는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이 규정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하며 관할 도(직할시) 내의 인민재판소의 제1심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형사소송법 제181조). 아울러 도(직할시)재판소는 중앙재판소와 함께 하급재판소의 재판사업, 변호사사업, 집행사업, 공증사업을 지도할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재판소구성법 제42조).

북한의 도(직할시)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며(헌법 제161조, 재판소구성법 제45조), 중앙재판소의 사법행정사업상의 지도와 사법정책상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다(재판소구성법 제40조·제43조). 도(직할시)재판소에서는 중앙재판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소·항의사건의 심리에는 인민참심원의 관여가 배제되고 판사 3명으로 심리한다.

관 계 법 조 항	<p>헌법 제153조 :</p> <p>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p> <p>재판소구성법 제12조 :</p> <p>중앙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에서 선거하며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하다.</p> <p>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을 해당 인민회의 휴회 중에 보선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하고 다음 번 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p>
-----------------------	---

<p>관계법조항</p>	<p>형사소송법 제181조 :                  도(직할시)재판소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한다.                  1. 반국가범죄                  2. 형법의 조항에 사형 또는 1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이 규정된 일반범죄                  도(직할시)재판소는 도(직할시) 안의 인민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도(직할시)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 안의 인민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도와 직할시를 관할하는 재판소</p>

## II. 檢事에 관한 用語

### ○ 檢査기관(검찰소)

북한 헌법은 검찰소를 헌법기관으로 보아 헌법 제162조 내지 제167조에 북한 검찰소의 구성, 임무 및 내부관계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의 검찰소는 재판소조직에 대응하여 중앙검찰소, 도(직할시)검찰소, 시(구역)·군사검찰소와 특별검찰소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북한에서도 모든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한다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인정되어 하급검찰소는 상급검찰소의 명령에 복종하는 상명하복관계에 있다. 즉, 북한 헌법 제166조에 의하면 검찰사무는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하고, 중앙검찰소만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북한의 검찰조직은 재판소의 조직과 달리 중앙검찰소장을 제외하고는 검사가 각급 인민위원회에서 선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직이 더욱 중앙집권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검찰소 소장은 북한 검찰기관의 최고 총수로서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 또는 해임되며(헌법 제91조제13호),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은 5년이다(동법 제163조). 또한 중앙검찰소 소장이 총괄하는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동법 제167조). 중앙검찰소 소장을 제외한 각급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하며, 검사의 임용자격은 판사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는다.

예심원에는 검찰소 예심원뿐만 아니라 정치보위부원, 감찰기관 예심원 등이 있으나 일반형사사건은 검찰소 예심원이 담당한다. 검찰소 예심원은 단순한 수사보조자가 아니라 검사의 지휘와 감시 아래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관계법조항	형사소송법 제74조 : 반국가범죄사건은 국가보위기관 예심원이 예심하며 일반범죄사건은 그것을 적발한 사회안전기관 또는 검찰기관 예심원이 예심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기관, 기업소, 사회단체 및 국민들이 국가의 법률을 바로 집행하는가를 감시통제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는 국가기관

### ○ 검 사

북한에서 검사는 직접 범죄를 적발하여 기소할 뿐만 아니라 수사·예심의 단계와 재판 및 판결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소송의 전과정을 걸쳐 법령의 올바른 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북한의 검사는 감시관, 수사참여관, 수사통제관, 공소제기권자, 공소수행권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동법 제58조, 제69조, 제79조, 제162조). 그러나 북한의 재판절차만을 한정하여 볼 때, 검사의 지휘와 권한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형사소송법상 규문주의요소와 재판소의 직권주의요소가 강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검사도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한국의 검사와 큰 차이가 없으나, 북한의 검찰은 사회주의적 준법성의 유일성확립을 위한 사법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관계 법 조	형사소송법 제8조 : 수사는 사회안전, 국가보위기관의 수사일군이 한다. 검사는 필요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단체 및 공민들의 법령집행에 대한 감시를 기본임무로 하는 검찰기관 일군, 검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하며 민족적 및 계급적 원수들의 반혁명적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며 기타 위법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국가사회재산과 근로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위하는 정치일군이다.

○ 군사검찰기관(군사검찰소)

군사검찰소는 북한의 특별검찰소의 하나이다. 군사재판소의 조직에 대응하여 인민무력부 검찰국, 해군·공군사령부 군사검찰소 이외에도 각 군단·훈련소, 사령부마다 1개씩의 군사검찰소가 설치되어 있다. 북한의 군사검찰소는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중앙검찰소의 지휘·감독 아래 검찰권을 행사한다. 즉, 중앙검찰소 3국이 군사검찰소를 지휘·감독하고 있으며, 그 소속 검사들은 사회안전부 복장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인민무력부나 그 산하 군대조직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검찰소는 군사상 범죄에 관한 사건을 처리한다.

관계 법 조	형사소송법 제74조 3항 : 군사상 범죄사건과 군대 안의 일반범죄사건은 군사검찰기관 예심원이 예심하며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범한 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의 정상적 활동을 침해하는 범죄사건은 그것을 적발한 철도안전부, 철도검찰소 예심원이 예심한다.
--------	--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우리나라 검찰소체계는 최고검찰소, 도(직할시)검찰소, 시(구역)검찰소, 군검찰소 및 특별검찰소로 구성된다.
------	--

○ 철도검찰소

철도검찰소는 군사검찰소와 함께 북한의 특별검찰소의 하나이다. 철도검찰소도 중앙검찰소의 지휘·감독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도검찰소의 설치는 북부·동부·서부·철도총국 뿐만 아니라 교통요충지인 각 철도관리국의 소재지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지 않다.

관계법조항	형사소송법 제74조 : 예심원은 자기 관할지역 안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예심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 밑에 해당 관할예심원에게 알리고 범죄자가 사는 곳 또는 사건을 적발한 지역의 해당 관할예심원이 예심할 수 있다. 반국가범죄사건은 국가보위기관 예심원이 예심하며 일반범죄사건은 그것을 적발한 사회안전기관 또는 검찰기관 예심원이 예심한다. 군사상 범죄사건과 군대 안의 일반범죄사건은 군사검찰기관 예심원이 예심하며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범한 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의 정상적 활동을 침해하는 범죄사건은 그것을 적발한 철도안전부, 철도검찰소 예심원이 예심한다.
-------	---

Ⅲ. 被訴者·辯護人에 관한 用語

○ 피소자

북한의 형사소송법상 피소자는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제기된 자를 말한다. 즉, 한국의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피소인의 소송법상 지위는 재판소가 스스로 소송절차를 개시하여 심리



· 재판하는 규문주의하에서 규문판사의 조사객체가 되는데 그치고 소송주체로서 소송에 있어서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북한 형사소송법상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가 재판소에 인정되어 있어서 피소자는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약하며, 증거방법 및 절차의 객체로 취급되는 면이 강하다.

북한의 1992년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적인 요소를 상당히 도입하였으나 피소자를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검사는 재판절차에 참가하여 재판소를 감시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반면, 피소자는 한국의 형사소송법과 같이 진술거부권, 보석청구권, 공판기일변경신청권, 변론의 분리·병합·재개신청권 등의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소인은 조사·심판의 대상 내지 객체로서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형사소송법 제17조 :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는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7조 : 증거는 증인의 말, 감정결과, 검증결과, 증거물, 증거문서, 피소자의 말 같은 데서 얻어낸 것이어야 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거나 기타의 범죄를 범한 자로서 공판에 회부되어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된 자.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범죄를 범하여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된 범죄자.</p>

○ 변호인(의 선정)

북한에서 변호인은 사건의 정확한 해결을 위하여 소추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옳은 판결을 내리는데 협력하는 소송당사자로 정의된다. 그리고 형사소송에 있어 변호인의 역할은 피소자의 변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있는 바, 변호인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입장에

서 자기의 확신과 판단에 따라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 재판소의 진실의 확정을 하는 것에 협조하여 피소자의 법적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정확하게 보호함에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도 변호인이 소송절차에 관여함에는 선임을 필요로 한다. 즉, 변호인의 지위는 선임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데 피심자나 피소자는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받은 때부터는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81조·제169조).

변호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대등한 전문적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피심자·피소자의 근친자, 소속단체의 대표자도 변호인으로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검사 또는 재판소의 승인을 받은 자는 누구라도 변호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70조). 특히 북한에서는 검사가공판심리에 출석한 경우 변호인도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관계법조	형사소송법 제169조 : 피심자, 피소자는 형사책임추구를 받은 때부터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정하여 그의 방조를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70조 : 변호사와 피심자, 피소자의 근친자, 소속단체 대표자는 변호인이 될 수 있다. 그 밖의 사람은 검사 또는 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변호인으로 될 수 있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건의 정확한 해결을 위하여 소추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필요한 증거를 내놓음으로써 옳은 판결을 내리는데 협력하는 소송당사자. 변호인으로는 변호사들이나 재판소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 ○ 변호사

북한에서의 변호사제도의 목적은 국가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 및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원조를 주기 위한 것이나, 변호사제도의

진정한 목적은 개인의 이기적 권익이나 개인주의적 권리의 보호가 아니라 이른 바 프로레타리아계급의 입장에서 전인민의 정당한 권리와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변호사는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그 재판이 정확하고 객관적 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여야 하며, 피소자의 이익도 이러한 변호사의 기본임무 테두리 안에서 보호된다고 한다. 따라서 변호사는 피소인이 제기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해당 증거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것이 피소인의 법률상 몰이해에서 나온 것이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가 충분히 뉘우치도록 설복하는 동시에 그에게 소추된 죄책의 중심부분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이 조국과 인민의 이익에 모순되며 국민의 양심을 배반하고 있음을 깨닫도록 하여 주고, 공판에서 자기의 죄과를 솔직히 진술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한다.

한편, 북한에서는 변호사회의 권한이 강하여 의뢰인의 변호사선임도 변호사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변호사의 임명도 변호사회에서 한다.

<p>관계법조항</p>	<p>형사소송법 제170조 : 변호사와 피심자, 피소자의 근친자, 소속단체 대표자는 변호인이 될 수 있다. 그 밖의 사람은 검사 또는 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변호인으로 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들에게 법률상 방조를 주며 재판사업을 원조하는 일군. 우리나라에서의 변호사는 우리 당 사법정책에 의거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들에게 법률상의 방조를 주며 사건의 정확한 해결에 이바지한다.</p>

### 第3節 搜查 및 豫審에 관한 用語의 概念

#### I. 搜查에 관한 用語

##### ○ 수 사

수사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북한은 형사재판 이전 단계로 예심이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수사를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수사·예심 및 검사의 처분 등이 모두 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예심원이 포함된다. 한편 수사를 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면, 예심을 제외한 행위로서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넘기는 행위를 의미한다(형사소송법 제59조). 이 때 수사기관에는 수사의 권한이 있는 사회안전기관·국가보위기관의 수사일군 및 수사권한이 있는 군관, 내무원 및 노동·세무·사업·소방 등 모든 기관의 감찰원이 포함되며, 검사는 필요에 따라 이와 같은 수사활동을 할 수 있다(동법 제8조).

북한에서도 검사는 수사의 총괄적 책임자로서 여러 수사기관을 지휘·통제하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기 보다 일반수사기관이나 예심원의 수사를 지휘·통제하는 면이 강하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수사단계에서의 법원의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나 예심원 등이 수사단계에서 법원의 통제없이 독자적으로 구속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으며, 피심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등 수사절차에서의 직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관 계 법 조 항	형사소송법 제8조 : 수사는 사회안전, 국가보위기관의 수사일군이 한다. 검사는 필요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
--------------	--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형사사건을 제기하기 이전에 사건의 기초로 될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모으는 수사기관의 활동. 수사는 반혁명범죄와 기타 일반범죄를 제때에 적발 폭로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
------	---

○ 수사시작결정

북한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형사사건취급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시작되며, 수사시작결정은 수사기관의 수사일군이 한다(동법 제50조, 제51조). 수사시작결정의 원인은 기관·기업소·단체와 국민의 신고 또는 수사일군이 직접 얻은 범죄자료에 기초한다(동법 제52조). 이는 한국의 경우 수사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기관·기업소·단체와 국민의 신고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뿐만 아니라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소추를 구하는 고발 및 진정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관·기업소·단체와 국민은 범죄행위가 준비되고 있거나 실행된 것을 안 경우 사회안전기관이나 국가보위기관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 하여야 한다(동법 제53조). 이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한국의 경우 공무원에 대해서만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고발하도록 한 것과 다른 점이다.

관계법조항	형사소송법 제50조 : 형사사건취급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로부터 시작한다. 형사소송법 제51조 : 수사시작결정은 수사일군이 한다. 형사소송법 제52조 : 수사시작결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신고 또는 직접 얻은 범죄자료에 기초하여 한다.
-------	--

○ 신고서, 신고조서

북한에서 범죄에 대한 신고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주소와 이름을 밝혀야 하며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신고자에게 허위신고를 한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신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고조서에는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신고자에게 허위신고에 대한 책임을 고지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54조). 사회안전기관, 국가보위기관, 검찰 등 수사기관은 범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관할에 관계없이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접수한 신고 가운데 자기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즉시 해당기관으로 그 사건을 이첩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55조).

관계법조항	형사소송법 제54조 : 범죄에 대한 신고는 써내거나 말로 할 수 있다.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주소와 이름을 밝혀야 한다. 신고를 받는 기관은 신고자에게 거짓신고를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고를 받을 때에는 신고조서를 만들어야 하며 조서에는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신고자에게 거짓신고에 대한 책임을 알려준 정형 같은 것을 적어야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해당한 공적기관에 일정한 사실을 일리는 문서

○ 거짓진술

북한에서 거짓진술이란 증인·감정인·통역원·해석원이 수사·예심·재판심리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여 예심 및 재판기관의 올바른 활동과 피해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거짓진술죄, 북한 형법 제120조). 이 범죄행위에는 증인의 거짓진술, 감정인의 거짓진술, 통역원 및

해석원의 거짓진술이 해당된다. 증인의 거짓진술은 범죄사실에 대한 거짓 증언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증인의 경우 처음부터 전혀 답변하지 않는 것은 거짓진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감정인의 거짓진술은 감정의 결과 판명된 사실에 대하여 허위적인 결론을 내거나 은폐·왜곡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통역인 및 해석원의 거짓 진술은 허위적 번역 내지 해석, 왜곡된 번역 내지 해석 등으로 나타난다. 거짓진술은 범죄결과의 발생여부와는 관계없이 거짓말 하는 것 그 자체로서 범죄의 기수가 된다.

관계 법 조	형사소송법 제60조 : 수사일군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진술을 받을 수 있다. 수사일군은 진술자에게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증인, 감정인, 통역이 예심 또는 공판심리과정에 거짓말을 하여 재판, 예심기관들의 올바른 활동과 피해자의 리익에 저해를 주는 범죄행위.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거짓으로 하는 진술.

○ 검 증

검증은 일반적으로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현상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한다. 특히 수사기관에 의한 검증은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위한 강제처분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형사소송법도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검증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동법 제215조). 그러나 북한의 검증제도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구속처분시 요구되는 검사 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예심원과 수사일군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검증과 검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으로써 그 자의적인 판단의 우려가 있다.

북한의 검증제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예심원 뿐만 아니라 수사일군도 범죄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찾아내며 증거물의 특징을 고착시키기 위하여 범죄현장 또는 증거물을 검증하며, 사람의 몸에서 사건 관련 흔적과 특징을 찾아내기 위하여 검진을 하며, 검사의 재판소도 필요에 따라 검증을 할 수 있다(동법 제112조). 특히 범죄현장 또는 재판소 이외의 일정한 장소에서 행하는 검증을 현장검증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범죄현장에서 발견하였거나 압수한 물건과 문서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검증하도록 하고, 검증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장소를 옮겨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13조). 검증 후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심단계의 검증에서 발견된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조서, 수색조서 또는 압수조서에 기재하며, 공판단계에서 실시한 검증 결과는 공판조서에 기재하고 따로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관계법조항	형사소송법 제61조 : 수사일군은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검증, 검진, 수색, 압수를 할 수 있으며 감정을 맡길 수 있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형사, 민사사건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하여 해당사건해결에 의의가 있는 장소나 물건, 문서의 상태와 특징을 확인, 고착하는 재판, 검찰, 예심기관의 증거조사활동. 범죄의 흔적이나 증거들을 발견할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검증은 예심에서도 할 수 있고 공판에서도 할 수 있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형사, 민사사건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하여 해당 사건을 해결하는데 의의가 있는 장소나 물건, 문서의 상태와 특징을 확인하고 고착시키는 법기관의 증거조사활동. 범죄의 흔적이나 증거들을 발견할 것을 목적으로 진행한다.

### ○ 검진

사람에 대한 검증을 특히 검진이라고 한다. 북한에서의 검진은 증거를 수집검토하는 예심행위의 하나이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검진을 할 때에는



2명의 입회인을 세워야 하며, 여성을 검진할 때는 여성을 입회시키도록 하고,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검중에 감정인을 참가시킬 수 있으며 법의감정의 사에게 검진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14조).

관계 법 조 항	형사소송법 제61조 : 수사일군은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검중, 검진, 수색, 압수를 할 수 있으며 감정을 맡길 수 있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반혁명적 범죄 기타 일반범죄와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재판, 검찰, 예심기관이 범죄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몸에서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흔적을 발견하거나 그 사람의 육체적 및 정신적 상태(불구, 병, 상처, 정신이상의 유무 등)를 확정하는 활동.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범죄사건과 관련있는 사람의 몸에서 범죄적 흔적을 찾아내거나 그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기능상태를 확정하는 법기관의 활동.

○ 수색 · 압수

수색은 일반적으로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물건·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며, 압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북한의 형사소송법도 이러한 강제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즉, 북한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수사일군과 예심원은 범죄자를 찾아내며,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필요한 물건이나 문서를 찾아 내어 확정하기 위하여 수색·압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29조). 또한 수색은 범죄자가 숨어 있거나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필요한 물건이나 문서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동법 제130조).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수사일군이나 예심원이 수색·압수를 하는 경우에 있어 한국과 같은 법관에 의한 영장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검사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심원이나 수사일군은 수색·압수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색·압수

를 할 때 검사의 승인을 받은 수색·압수결정서를 수색·압수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동법 제131조, 제132조). 다만, 범죄자가 범죄행위를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감행하다가 또는 감행한 즉시에 발견되었을 때, 피해자 또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 범죄혐의자를 범죄자라고 가리켰을 때,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에서 범죄의 흔적이 나타났을 때, 범죄혐의자가 도주하려 하거나 범죄자로서 추적하고 있을 때, 범죄혐의자가 사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 등의 사유(동법 제65조)가 있어 범죄자나 범죄혐의자를 긴급체포할 때는 검사의 승인없이 그들이 몸 또는 거처를 수색·압수할 수 있다(동법 제131조제3항). 또한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수색·압수를 할 경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낮에 실시하고, 여성의 몸을 수색할 때에는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상태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35조). 이는 야간의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여성의 정조에 대한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한편 북한주재 외교대표부 등의 건물 또는 살림집을 범죄 및 범죄자의 적발과 관련하여 수색하거나 물건 또는 문서를 압수하려고 하는 때에는 북한의 외교부를 통하여 외교적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으며, 수색·압수시에 검사가 참가하고 해당 대표부의 대표자와 북한의 대외사업요원을 입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37조, 제138조).

관 계 법 조	<p>형사소송법 제61조 : 수사일군은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검증, 검진, 수색, 압수를 할 수 있으며 감정을 맡길 수 있다.</p> <p>형사소송법 제65조 : 다음과 같은 때에는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범죄자가 범죄행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감행하다가 또는 감행한 즉시에 발견되었을 때. 피해자 또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 범죄혐의자를 범죄자라고 가리켰을 때.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에서 범죄의 흔적이 나타났을 때. 범죄혐의자가 도망치려 하거나 범죄자로서 뒤쫓기우고 있을 때. 범죄혐의자의 사는 곳이 뚜렷하지 않을 때.</p>
------------------	--

<p>관계법조항</p>	<p>형사소송법 제129조 : 수사일군, 예심원은 범죄자를 찾아내며 범죄사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물건이나 문서를 찾아내고 고착시키기 위하여 수색, 압수를 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수색 : 범죄자들의 죄행을 밝힘에 있어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거나 감추어진 물건 또는 문서를 찾아내거나 체포해야 할 범죄자를 찾아내기 위한 예심 또는 수사기관의 권력적 활동. 압수 : 예심기관이 증거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나 물품을 그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가져가는 소송상 강제처분(압수).</p>

○ 범죄혐의자

북한 형사소송법상 범죄혐의자는 한국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해당하는 자로써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소송당사가 아니고, 수사의 객체로서의 지위가 강하다. 자유민주국가의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에 대해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 및 선임의뢰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범죄혐의자에 대해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p>관계법조항</p>	<p>형사소송법 제65조 : 다음과 같은 때에는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범죄자가 범죄행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감행하다가 또는 감행한 즉시에 발견되었을 때. 피해자 또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 범죄혐의자를 범죄자라고 가리켰을 때.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에서 범죄의 흔적이 나타났을 때. 범죄혐의자가 도망치려 하거나 범죄자로서 뒤쫓기우고 있을 때. 범죄혐의자의 사는 곳이 똑똑하지 않을 때.</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으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정식 정해지지 않은 자 및 립심결정전에 미리 체포 또는 구류된 자.</p>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고 의심되는 자. 범죄자로서 의심을 받으으나 아직 형사책임 추궁을 받지 않은 자이다 = 피의자.
------	---

○ 구금(체포)

북한에서 구금은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의 하나로서, 예심원에 의한 강제처분인 구속과 구분된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상 구금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이 아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금하는 구속의 한 종류로서 구인에 대비되는 용어임에 비해 북한의 형사소송법상의 그것은 체포 후의 정당화절차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상 체포는 범죄혐의자나 현행범을 구속처분에 앞서 구금하는 것으로서 권한있는 국가기관일군의 권력적 활동이라고 한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체포·구금과 관련하여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람을 체포할 수 없으며, 사람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48시간 안으로 그의 가족이나 소속단체에 체포한 날짜와 이유 등을 고지하고, 검사는 위법하게 체포되어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를 석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11조). 또한 수사기관이 체포한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를 구금하려고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금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검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 체포한 날로부터 10일안으로 조사하여 이들을 예심에 넘기도록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검사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체포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범죄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동법 제66조).

관계법조	형사소송법 제66조 : 이 법 제65조에 따라 체포한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를 구금하려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으로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겨야 한다.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에 범죄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내놓아야 한다.
------	--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
------	--

○ 수사의 감시

북한에서 수사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담당한다. 수사일군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수사시작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한 후 수사시작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 58조). 또한 검사는 수사행위에 직접 참가하거나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위법적인 수사행위를 시정하거나 수사일군에게 필요한 수사행위를 서면으로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대한 감시를 한다(동법 제66조). 이는 검사의 감시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협의의 수사기관의 업무에는 수사의 핵심부분에 해당하는 예심행위가 제외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의 수사란 한국에 있어 내사단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계법조	형사소송법 제69조 : 수사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검사는 수사행위에 참가하거나 사건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적인 수사행위를 바로잡거나 수사일군에게 필요한 수사행위를 할 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	--

Ⅱ. 豫審에 관한 用語

○ 피심자

북한 형사소송법상 피심자는 공소제기전에 예심단계에서 예심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는 혐의자라고 한다(북한 형사소송법상 혐의자는 한국의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해당

한다). 한국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예심절차가 없으므로 피심자란 개념은 북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특유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피심자는 예심절차에서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날로부터 7일 안에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받은 검사는 3일 안으로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피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62조).

<p>관 계 법 조 항</p>	<p>형사소송법 제17조 :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는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 : 예심은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피심자를 확정하고 그의 범죄사실을 남김없이 밝히며 연루자를 적발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을 임무로 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립심결정에 의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정식으로 추궁받게 된 사람. 형사소송에서 피의자가 피심자로 결정되면 그에게는 소추가 제시되고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소송상 강제가 적용된다. 피심자는 예심기관의 부름에 응하며 심문에 대답할 의무를 진다.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예심을 받는 사람, 곧 예심과정에 있는 범죄자.</p>

○ 사건의 기각

북한의 검사는 예심원이 기소장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사건기각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건을 기각할 수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상 사건기각사유로는 피심자가 14세 미만일 때, 피심자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않을 때, 형사책임을 추궁할 법적 기간이 지났을 때, 특사·대사로 형벌이 면제되었을 때, 확정된 판결·판정이 있는 때, 피심자가 사망한 때, 예심을 시작한 다음 6개월이 지나도록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 만한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하였을 때, 피심자가 정신병상태에서 죄가 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죄를 범한

뒤에 정신이상인 것이 증명되었으며 앞으로도 그의 정신상태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2조, 제161조).

그리고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기각결정은 한국 형사소송법상의 불기소처분인 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결정 등에 각각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로서 회부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의 무혐의처분, 형사미성년자 또는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죄안됨결정, 형사시효만료 내지 형면제 또는 확정판결의 존재 또는 피의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 공소권 없음 등의 결정을 내리는데 비해, 북한은 이 경우에 대해 사건을 기각하고 있다. 아울러 죄에 해당되나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데 대해서도 북한은 이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 법 조	형사소송법 제12조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한 뒤에 그것이 나타났을 때에는 형사사건을 기각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제기된 문제나 안전같은 것을 무효로 인정하거나 취소하여 도로 물리치는 것.

### ○ 예심행위

예심행위는 한국의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는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특이한 제도이다. 예심행위는 피심자에 대한 범죄의 유무 및 책임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서 수사의 핵심부분에 해당된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상 사회안전기관이나 국가보위기관의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혐의자에 대해 구류의 보전처분을 할 수 없다. 또한 혐의자를 체포하더라도 검사의 체포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예심기관에 이관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는 많

는 제약이 있다. 이에 비해 예심기관은 피심자에 대해 광범위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 피심자를 심문하여 예심조서를 작성하며, 증인 및 감정인 심문을 하고 기소장을 작성하는 등 수사의 실체를 이루는 행위를 한다. 북한의 1992년 형사소송법은 모든 범죄사건에 있어서 수사후 필요적으로 예심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종래 형사소송법상 절차의 혼란을 배제하고 예심절차를 일원화하였다(동법 제59조, 제67조).

관계법조항	형사소송법 제75조 : 예심원은 사건이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긴급한 예심행위를 한 다음 검사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넘기는 결정을 하고 해당 관할 예심원에게 보내야 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형사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를 모으며 조사검토하는 소송 단계. 예심을 형사소송에서 사건제기를 통하여 범죄가 수행되었거나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기초우에서 그 사건을 더 조사규명하며 범죄가 실지 범해졌는가, 그 진상은 어떠한가, 범죄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히며 이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모으며 조사검토하는 단계이다.

### ○ 예심의 감시

북한에서 예심에 대한 감시는 수사에 대한 감시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담당한다. 검사는 예심행위에 참가하거나 예심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한 예심행위를 시정하거나 예심원에게 필요한 예심행위를 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79조). 또한 증인이나 감정인·통역원·해석인·입회인·피해자·피심자와 그의 보증인은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7일내에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의견을 받은 검사는 3일 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심원은 이와 같은 의견이 자기에게 제기되었을 때에는 48시간 내에 의견을 붙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견이 제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검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심절차



는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심절차는 계속된다(동법 제162조).

관계법조	형사소송법 제79조 : 예심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검사는 예심행위에 참가하거나 예심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적인 예심행위를 바로잡거나 예심원에게 필요한 예심행위를 할 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예심기간의 연장은 해당 상급기간의 승인이 있어야만 한다. 예심이 우리 당 정책과 법령의 요구대로 정확하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검사가 한다.

○ 예심시작결정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예심원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으면 48시간 내에 예심시작결정을 하고 예심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심원은 예심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와 범죄자를 적발하였을 경우 검사에게 이를 알리고 예심시작결정을 하거나 또는 해당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겨주어야 한다(동법 제80조).

관계법조	형사소송법 제80조 : 예심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으면 48시간 안으로 예심시작결정을 하고 예심을 시작하여야 한다. 예심원은 예심과정에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와 범죄자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검사에게 알리고 예심시작결정을 하거나 해당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겨주어야 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예심은 예심수리로부터 시작하여 립심, 피심자심문, 보전처분, 예심종결, 기소장작성의 체계로 진행되며 이 모든 과정에서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증거가 수집, 조사, 검토된다.

○ 형사책임추궁결정(서)

북한 형사소송법상 형사책임추궁결정이란 예심원이 수집된 증거에 근거

하여 형사책임을 질 사람과 그 책임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심원은 증거를 찾아내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심자를 확정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여야 한다. 피심자에게 있어 형사책임추궁결정은 북한의 형사소송절차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피심자는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받은 때부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심자신문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고 그 결정서등본을 즉시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48시간 내에 피심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그 결정사실을 피심자에게 알려줄 때에는 동시에 변호인을 선정하여 원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어야 하며, 이 내용을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동법 제81조, 제83조, 제84조). 예심원의 형사책임추궁결정은 피심자를 확정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얻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를 입증하는데 충분한 증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이미 적용한 형법조항을 바꾸거나 보충할 사실이 밝혀진 경우 형사책임추궁의 변경 및 추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동법 제85조).

관 계 법 조 항	형사소송법 제81조 : 예심원은 증거를 찾아내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피심자를 확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예심원이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형사책임을 질 사람과 그 책임의 범위를 정식으로 결정하는 행위.

### ○ 예심의 종결

북한의 형사소송법상 예심의 종결이란 예심원이 형사사건을 재판소에 넘기기 위하여 예심을 종결하는 결정을 말한다. 예심원은 예심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났을 때, 즉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만한 충분한 증거를 얻었다고 판

단한 때에는 예심을 종결하여야 한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상 예심종결절차를 보면, 예심종결사실을 피심자에게 고지하고 관련기록을 열람시킨다. 이 때 피심자의 의견을 들어 예심계속의 여부를 판단한 뒤 예심종결의 판단을 하게 되면 예심과정을 기록한 조서를 작성한 후 검사의 참가하에 예심을 종결하게 된다(동법 제156조 내지 제158조). 예심원은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예심을 종결하여야 하며, 예심을 더 하도록 재판소에서 돌려보낸 사건에 대한 예심은 1개월 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종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급 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까지 예심을 계속할 수 있다(동법 제73조). 북한의 형사소송법상 예심을 종결하면 사건의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예심종결일로부터 3일 내에 기소장을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p>관계법조</p>	<p>형사소송법 제156조 : 예심원은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만한 충분한 증거를 얻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을 끝낸다는 것을 피심자에게 알려주고 그의 범죄와 관련되는 사건기록을 보여주어야 하며 신청할 것이 없는가를 물어 보아야 한다.</p> <p>형사소송법 제157조 : 예심을 끝내는 수속은 검사의 참가밑에 하여야 한다.</p> <p>형사소송법 제158조 : 예심을 끝낼 때에는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예심원이 형사사건을 재판소에 넘기기 위하여 예심을 끝맺는다는 것을 확정하는 소송행위. 형사소송에서 예심은 보통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데 필요한 모든 조사가 다 되었을 때에 끝나며 간혹 심리를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을 기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 끝난다.</p>

○ 구 인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구인이란 예심을 받는 사람과 재판을 받는 사람 또는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 법기관의 호출에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이 제때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그들을 강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까지 데려오는 법기관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예심원은 구류되어 있지 않는 피심자를 심문하고자 할 경우 우선 피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고, 피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때에는 구인한다. 북한에서의 구인은 구인결정서에 따라서 사회안전원이나 국가보위기관이 집행한다.

관계 법 조	형사소송법 제87조 : 구류되어 있지 않는 피심자를 불러 심문하려 할 때에는 그에게 소환장을 보낸다. 피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오지 않을 때에는 구인한다. 구인은 구인결정서에 따라 사회안전, 국가보위기관이 집행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예심을 받는 사람과 재판을 받는 사람 또는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 법기관의 호출에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이 제때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그들을 강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까지 데려오는 법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 계호일군(계호원)

북한에서 계호일군(계호원)은 범죄자를 지키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관계 법 조	형사소송법 제88조 : 구류되어 있는 피심자는 심문할 때에는 예심원의 요구에 따라 계호일군이 그를 예심장소까지 호송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범죄자를 지키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사람.

○ 예심의 중지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예심원으로 하여금 피심자가 중병에 있거나 일시적

으로 정신이상(精神異常)이 생겨서 예심(預審)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을 중지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의감정의사 또는 인민병원 의사협의회의 감정이 있어야 하고, 예심중지결정과 함께 피심자에 대한 치료대책을 세워야 한다(동법 제90조). 그리고 이후 예심중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예심계속결정을 하고, 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동법 제91조). 한편 북한의 구형사소송법 제104조는 피심자가 도주하거나 그 거처가 불분명할 때에 예심원은 수색결정서를 작성하고, 수색결정서를 작성한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피심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히 있는 때에는 예심을 중지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형법학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여전히 예심의 중지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관계법조항	형사소송법 제90조 : 예심원은 피심자가 중병에 있거나 일시적으로 정신이상(精神異常)이 생겨 예심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을 중지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대책을 세워야 한다. 앞항의 경우 법의감정의사의 감정 또는 인민병원의 의사협의감정이 있어야 한다.
-------	--

○ 법의감정의사

북한에서 법의감정의사란 범죄사건의 증거가 될 자료를 사체·증거물·문건 등을 의학적·생물학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관계법조항	형사소송법 제90조 : 예심원은 피심자가 중병에 있거나 일시적으로 정신이상(精神異常)이 생겨 예심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을 중지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대책을 세워야 한다. 앞항의 경우 법의감정의사의 감정 또는 인민병원의 의사협의감정이 있어야 한다.
-------	--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범죄사건의 증거로 리용될 자료를 의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검사하는 감정을 하는 의사.
------	---

○ 피심자심문

북한의 형사소송에서 피심자심문이라 함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심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 이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심자의 진술을 통하여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피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86조는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형사책임 추궁결정을 통지한 후 48시간 이내에 그를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류되어 있는 피심자를 심문할 때에는 예심원의 요구에 따라 계호일군이 그를 예심장소까지 호송한다. 또한 구류되어 있지 않는 피심자를 심문하려는 경우에는 피심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먼저 피심자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피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불응할 때에는 구인한다. 구인은 구인결정서에 따라서 사회안전원이나 국가보위기관이 집행한다(동법 제87조).

관계 법 조	형사소송법 제95조 : 예심원은 피심자가 여럿인 때에는 서로 련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피심자가 없는 데서 피심자심문을 하여야 한다. 범죄사건을 밝히는 데 필요할 때에는 피심자와 피심자, 피심자와 증인을 서로 대면시켜 놓고 심문할 수 있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법기관일군들이 사건의 정확한 취급처리를 위하여 피심자들로부터 진술 또는 설명을 받는 소송행위

○ 구 속

일반적으로 구속이라 함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가장 강력한 강제처분이다. 북한에서는 구속은 수사 기관이 범죄혐의자를 체포한 경우와 예심기관이나 재판소의 구류보전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 및 재판소가 내린 유죄판결의 집행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구속제도가 계급적 원수들과 악질 범죄자들의 책동을 저지시키며, 그들의 죄행을 낱낱이 밝히고 처벌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된다고 한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상 구속처분은 구류처분·자택구속·불리거처분 등 세 종류가 있다. 먼저 피심자를 구류하는 구류처분은 피심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강제처분으로서 1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을 저지른 피심자가 증거인멸, 조사방해 또는 예심이나 재판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임신한 피심자에 대해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의 구속처분을 할 수 없다(동법 제106조). 자택구속이란 피심자를 자기 집에 억류하는 구속처분이다. 이 때 예심기관은 2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위 보증인들로부터 피심자를 언제든 예심원 또는 재판소의 요구대로 출석시키겠다는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104조·제109조). 불리거처분이라 함은 피심자로 하여금 예심원이 지정한 지역 또는 거처로부터 허가없이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을 말하는데, 이 경우 예심원은 피심자로부터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104조·제110조). 한편,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과정에서 언제든지 그 이유를 밝힌 결정으로 구속처분을 해제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동법 제111조).

관계법조항	형사소송법 제100조 : 예심원은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사건조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법인을 구류장이나 또는 자기집에 가두어 두는 것

○ 구류기간

북한의 형사소송법상 예심원이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예심을 2개월 안에 끝낼 수 없을 때에는 시(구역)·군예심기관과 도(직할시)예심기관은 도(직할시) 검찰소 소장에게, 중앙예심기관은 중앙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1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구류기간을 더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2개월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예심기관은 최대한 5개월까지 피심자를 구류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관 계 법 조	형사소송법 제108조 :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예심을 2개월 안에 끝낼 수 없을 때에는 시(구역), 군 예심기관과 도(직할시)예심기관은 도(직할시)검찰소 소장, 중앙예심기관은 중앙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구류기간을 1개월간 늘일 수 있다. 구류기간을 더 늘이려 할 때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2개월간 다시 늘일 수 있다. 구류기간에 예심을 끝내지 못하였을 때에는 피심자를 내놓고 예심을 계속할 수 있다.
------------------	---

○ 심리실험

북한의 형사소송법 제116조가 규정하는 심리실험이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과거의 사실·사정들을 실험의 방법으로 재현하여 검토하는 심리행위를 말한다. 심리실험은 실험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특별한 형태의 검증으로서 확증할 필요가 있는 사건·사정들에 대한 증인·피해자·피심자의 지각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된다고 한다. 또한 심리실험은 실험장소, 시간의 선정, 도구 및 수단, 준비, 참가인원의 확정 등 준비사업에 기초하여 진행되며 그 결과는 실험조서, 약도, 사진 등으로 고착된다고 한다. 한편, 실험의 결과 얻어진 긍정적인 대답은 제기된 문제의 해결에 있



어서 어떤 행위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증명할 수는 있으나 그 범죄를 확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실험에서 얻어진 부정적인 대답은 어떤 행위나 사건이 없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심리시험은 증인·피심자·피해자의 진술의 정확성여부와 수집된 증거 기타 범죄와 관련된 문제들을 확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범죄자 특히 적대분자들과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관계법조항	형사소송법 제116조 : 수사일군, 예심원은 장소나 물체의 상태와 특징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리실험을 할 수 있다. 심리실험을 할 때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하며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지난 시기의 사실들을 실험의 방법으로 재현하여 검토하는 심리행위. 지난 시기의 일들을 회상시켜 범죄자나 범죄에 사용된 도구, 범죄 장소 등을 검토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사회안전원

북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안전부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범죄, 정보, 질서 등 북한내의 경찰업무와 교도업무를 담당한다.

관계법조항	형사소송법 제133조 : 수색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안전원 그 밖의 경비원으로 수색장소에 경비를 세울 수 있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회안전사업을 직접 담당 수행하는 일군

○ 재산담보처분

북한의 형사소송법상 재산담보처분이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

체, 국민의 재산을 그 소유자 및 보관자가 임의적으로 이용·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을 원상대로 보관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소송상 강제처분을 말한다. 북한의 구형사소송법은 재산담보처분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재산담보처분제도를 신설하여 예심원은 형법에 재산몰수형이 규정되어 있는 사건을 취급할 때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담보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51조). 이와 함께 예심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와 국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시켜 주기 위해서도 보상할 책임이 있는 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심원은 피심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기관·기업소·단체와 국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동법 제152조).

<p>관계법조</p>	<p>형사소송법 제153조 :                  재산담보처분을 하려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밝힌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산담보처분을 할 때에는 그에 관한 결정서를 담보처분 당하는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2명의 립회인을 세우고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만을 담보처분하여야 한다.                  재산담보처분을 한 다음에는 재산담보처분조서와 2통의 재산목록을 만들어야 하며 재산목록 1통은 재산보관자에게 주어야 한다. 예심원은 재산보관자에게 담보처분한 재산을 정확히 보관할 데 대한 책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재산담보처분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해제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민사 또는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서 의의가 있는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국민들의 재산을 그 소유자 및 보관자가 제 맘대로 이용·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며, 그것을 원상 그대로 보관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소송상 강제처분.</p>

○ 기소장

북한에서 기소장이라 함은 예심결과의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 사건을 재판할 것을 요구하는 검사의 소추문건을 말한다. 예심원은 예심을 끝내고 피심자를 재판에 회부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심의 종결을 피심자에게 고지하고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며, 피심자로 하여금 새로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여야 한다. 이 때 피심자가 그 사건에 의의가 있는 사항으로서 아직 조사하지 않은 것을 신청하는 등 피심자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예심을 계속 진행하여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 위 신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유불인 결정으로 이를 거부한다. 예심원이 피심자의 추가신청에 의하여 예심기록을 보충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사건기록도 다시 피심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56조). 예심원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예심을 종결하고 기소장을 작성한다. 이 처럼 복판에서 예심원에게 기소장 작성권한이 있다는 것은 예심원이 사실상 수사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소장에는 첫째로 피심자와 범행 일시·장소 및 범죄의 동기·목적·수단·방법·결과 등 예심에서 조사확정된 사실과 이를 증명하는 증거, 둘째로 피심자의 형사책임을 확정하며 형벌의 정도를 판정하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사정, 셋째로 피심자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형법조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기소장에는 피심자와 재판정에서 소환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주소, 피심자를 구류한 날짜, 증거물, 손해배상청구와 재산담보처분 등의 정황을 밝힌 문건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59조).

관 계 법 조	형사소송법 제159조 : 예심이 끝나면 예심원은 기소장을 만든다. 기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피심자와 그가 죄를 범한 날자, 시간, 장소와 범죄의 동기, 목적, 수단, 방법, 결과 같은 예심에서 조사확증된 사실과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 피심자의 형사책임을 확정하며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사정 피심자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형법의 조항
------------------	---

관계법조항	기소장에는 피심자, 재판에 불려야 할 사람들의 이름, 사는 곳, 피심자를 구류한 날자, 증거물, 손해보상청구와 재산담보처분 정형을 밝힌 문건을 붙여야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예심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확인한데 기초하여 해당사건을 재판할 것을 요구하여 재판소에 내는 소송문건.

○ 기 소

기소란 검사가 예심의 기록을 종합한 사건기록을 재판소에 보내어 재판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활동을 말한다. 기소는 범죄의 수사 및 법집행에 대한 감시와 더불어 검사의 기본직무 중의 하나이다. 다만,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자동적으로 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아니며, 기소된 사건을 접수한 재판소가 당해 사건을 공판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공판준비위원회를 통하여 따로 결정한다.

관계법조항	형사소송법 제165조 : 검사는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게 예심이 충분하고 옳게 진행되었을 때에는 피심자를 재판소에 기소한다. 피심자를 기소할 데 대하여 결정한 검사는 기소장과 함께 사건기록을 재판소에 넘겨야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검사가 예심의 결과를 종합한 사건기록을 재판소에 보내면서 재판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활동

## 第4節 裁判 및 上訴 · 特別訴訟節次에 관한 用語의 概念

### I. 裁判 및 上訴에 관한 用語

#### ○ 판결서

북한의 재판소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판결서를 작성한다. 판결서의 첫 부분(이유부분)에는 재판날짜와 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의 이름, 사건명, 재판심리의 공개여부, 피소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손해보상청구자의 이름과 사는 곳, 범죄사실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 그 밖의 사건의 성질에 따른 특별사항을 기재한다. 판결서의 다음부분(주문부분)에는 피소자의 죄의 유무, 적용법조 및 선고하는 형벌 또는 교양처분을 지적하고 손해보상청구·증거물·구속처분·재산담보처분 등에 대한 문제의 처리결과를 기재한다(동법 제249조). 아울러 판결서에는 판결에 대한 상소절차도 적시하고,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날인한다(동법 제34조).

관 계 법 조 항	<p>형사소송법 제34조 :</p> <p>수사, 예심, 재판준비, 재판에서는 진술서, 조서, 결정서, 판결서, 판정서를 만들어야 한다.</p> <p>수사, 예심에서 만든 진술서, 조서와 그것을 고친 데는 작성자의 도장과 진술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으며 결정서에는 작성자가 도장을 찍는다.</p> <p>재판준비조서와 재판조서에는 재판서기와 재판장이 도장을 찍으며 고친 데는 작성자가 도장을 찍는다.</p> <p>판결서, 판정서에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도장을 찍는다.</p> <p>사건조사에 립회인이 참가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립회인도 도장을 찍는다.</p> <p>담보처분한 재산, 압수품, 몰수품, 증거물에 대한 조서에는 품명, 형태, 품질, 규격, 수량, 소유관계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작성자, 소유자, 립회인이 도장을 찍는다.</p>
-----------------------	---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판결의 내용과 그 근거를 적은 문건
------	--

○ 재판조서

북한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재판조서는 재판이 끝난 날로부터 3일 안에 재판서기가 작성하고 재판장과 재판서기가 날인한다. 재판조서에는 재판날짜와 장소, 재판소성원, 검사·변호인·재판서기의 이름, 사건명, 피소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손해배상청구자의 이름과 주소, 재판진행순서에 따라 재판소가 한 모든 행위, 재판관계자들과 증인 및 감정인들이 제기한 의견과 진술, 재판심리과정에서 재판소가 내린 판정들, 논고와 변론의 내용, 피소자의 최후진술 등을 기재한다(동법 제236조). 그리고 재판관계자들은 재판조서작성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5일 안으로 조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조서에 누락된 것이 있거나 부정확한 표현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이의 정정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재판장은 청구된 의견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정으로 조서를 고치고 부당한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판정으로 이를 거부한다(동법 제237조).

관계법조항	<p>형사소송법 제34조 :</p> <p>수사, 예심, 재판준비, 재판에서는 진술서, 조서, 결정서, 판결서, 판정서를 만들어야 한다.</p> <p>수사, 예심에서 만든 진술서, 조서와 그것을 고친 데는 작성자의 도장과 진술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으며 결정서에는 작성자가 도장을 찍는다.</p> <p>재판준비조서와 재판조서에는 재판서기와 재판장이 도장을 찍으며 고친 데는 작성자가 도장을 찍는다.</p> <p>판결서, 판정서에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도장을 찍는다.</p> <p>사건조사에 립회인이 참가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립회인도 도장을 찍는다.</p> <p>담보처분한 재산, 압수품, 몰수품, 증거물에 대한 조서에는 품명, 형태, 품질, 규격, 수량, 소유관계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작성자, 소유자, 립회인이 도장을 찍는다.</p>
-------	---

○ (재판)관할

관할이라고 함은 국가사회생활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들을 처리함에 있어 해당 국가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사업범위를 말한다. 관할은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국가사회경제활동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빠짐없이 그리고 중복됨이 없이 질서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다. 관할에는 크게 행정관할과 재판관할이 있는 바, 재판관할이라고 함은 각 재판소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 즉 특정재판소가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따라서 각 재판소는 재판관할의 분류에 따라 자기 관할에 속하는 사건들만을 심리판결하여야 하며, 재판관할의 위반은 소송법위반으로 이에 따른 판결은 취소의 근거가 된다.

북한의 재판관할의 기본구조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심으로 심리할 재판소를 정하고 있고, 중앙재판소가 제1심으로 심리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재판소에 상소·항의할 수 있도록 하는 2심급제로 되어 있다. 다만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재판소 각부 또는 판사회에 비상상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북한의 재판관할제도의 특징은 상급재판소의 권한이 매우 광범위하고 강대하다는 점에 있다. 즉, 상급재판소는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하급재판소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직접 1심으로 재판을 하거나 또는 동급의 다른 하급재판소로 이송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1조·제184조).

관 계 법 조	<p>형사소송법 제185조 : 재판소는 관할지역 안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사건심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자가 사는 곳, 적발된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p> <p>형사소송법 제186조 : 사건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같은 급의 여러 재판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사건을 가장 먼저 심리하기 시작한 재판소에서 재판한다.</p>
------------------	--

<p>관계법조항</p>	<p>형사소송법 제265조 :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심하게 어기어 채택한 판결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는 다음과 같다. 재판소구성에 관한 이 법의 요구를 어겼을 때 재판관할을 어겼을 때 피소자를 재판에 참가시키지 않았을 때 법에 따라 기각하여야 할 사건을 기각하지 않았을 때 변호인을 참가시키지 않았을 때 앞항의 경우에는 판결 가운데서 상소, 항의가 제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도 제2심재판에서 함께 취소할 수 있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국가사회생활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각급재판소의 권한과 임무에 따라 사건의 범위와 종류를 나누어 처리하는 사업범위</p>

○ 현지재판

북한의 특유한 공개재판제도인 현지재판이란 범죄자가 범죄를 감행한 현지에 나가 군중 속에서 진행되는 공개재판을 말한다. 북한에서 현지재판의 의의는 범죄자가 범죄를 감행한 현지에서 공판을 진행함으로써 더 많은 군중들을 재판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게 하며, 현지에서 수집한 생생한 자료와 증거들을 가지고 범죄행위를 낱낱이 폭로하고 범죄자를 징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판일군들의 책임성과 재판의 교양적 역할을 높일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 이와 같은 현지재판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은 형사소송을 직업적 법관에 의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절차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적 통제와 제재를 통하여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등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북한은 형사소송절차에도 군중노선 내지 천리마운동을 도입하여 재판을 전문가에 의한 진실발견의 절차로 파악하기 보다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옹



호하기 위한 정치사업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관 계 법 조 항	형사소송법 제179조 : 재판소는 군중을 각성시키며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현지재판을 조직진행한다. 이 경우에는 노동자, 농민의 대표가 범죄자의 죄행을 폭로규탄하게 할 수 있으며 피소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이 있거나 범죄의 틈을 준 해당 관계자들을 참가시켜 교훈을 찾도록 할 수 있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범죄가 감행된 장소와 범죄자가 살던 곳 또는 원·피고가 살고 있는 곳에 나가서 많은 군중의 참가밑에 진행되는 재판 = 현지공개 재판.

○ (증거재판의 원칙)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제35조에서 증거수사, 증거예심, 증거기소,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92년 형사소송법에 새로이 규정된 것으로 범죄의 표징을 이루는 사실들과 형벌을 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 등은 반드시 증거로 확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증거재판주의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재판소뿐만 아니라 수사일군, 예심원들도 수사 및 예심절차에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확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함으로써 증거제도가 재판절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제3장)이 수사와 예심(제4장) 보다 먼저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사 및 예심절차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경우도 증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증인이 수사 및 예심절차에서 거짓증언을 할 경우 재판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와 같이 처벌한다(동법 제60조, 제148조).

아울러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던 구 형사소송법과 달리 강압적 방법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였으며(동법 제93조), 피심자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둬으로써(동법 제94조) 진실보한 면을 보이고 있다.

관계법조항	형사소송법 제35조 :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북한용례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판결의 기초로 되는 재판소의 사실인정이 반드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공화국소송법의 원칙. 증거재판의 원칙은 민사사건, 형사사건을 불문하고 재판사건에서 입증의 대상으로 되는 모든 사실들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고 리해관계 있는 당사자들이 참가한 공개한 공판에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증거에 기초하여 인정될 것을 요구한다.

### ○ 증거문서

증거문서는 사람의 의사가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증거적 의의를 갖는 모든 물체를 말한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나 예심기관, 재판소가 작성한 각종 조서, 진술서 등 소송서류를 비롯하여 그 내용이 증거적 의의를 가지는 문서를 증거문서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9조). 북한은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증거문서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증거문서의 증거조사방법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재판심리에서는 증거물과 증거문서들을 철저히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재판관계자들은 사실심리과정에서 언제든지 증거물과 증거문서를 조사검토할 수 있다”(동법 제226조)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조항	형사소송법 제39조 : 증거문서로는 수사, 예심기관과 재판소가 만든 각종 조서, 진술서 같은 소송서류를 비롯하여 그 내용이 증거적 의의를 가지는 문서가 될 수 있다.
-------	---

○ 증거

증거는 사건해결을 위하여 반드시 확정하여야 할 사실들을 밝히고 해명하는데 이용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여기에는 증거방법과 증거자료의 두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증거방법(입증수단)은 증인, 감정인, 증거물, 증거문서 등과 같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원천 그 자체를 말하며, 증거자료(증거사실)은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은 내용 그 자체를 의미한다.

북한에서 증거제도는 사건해결에서 과학성, 객관성을 보장하여 근로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창조적 생활을 법적으로 가장 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소송제도라고 한다. 또한 증거제도는 무엇보다 판사를 비롯한 재판일군들로 하여금 사건해결에서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객관적 현실·객관적 진실을 찾을 수 있게 하며,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소송상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p>관계법조항</p>	<p>형사소송법 제40조 :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법이 정한데 따라 제한을 받음이 없이 필요한 모든 증거를 찾아낼 수 있으며 그것을 리용할 수 있다.</p> <p>형사소송법 제41조 : 증거는 군중의 힘에 의거하며 과학적 방법에 기초하여 찾아내야 한다.</p> <p>형사소송법 제44조 : 증거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p>
<p>북한용례</p>	<p>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예심, 경찰, 재판기관이 당사법정책에 기초하여 제기된 사건의 사실, 사정들을 밝히고 확정하는데 토대가 되는 자료.</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사실을 증명할만한 근거나 표적. 예심, 검찰, 재판기관이 제기된 사건의 사실적 사정 등을 밝히고 확정하는데 리용되는 자료.</p>

## ○ 증거물

북한 형사소송법상 증거물은 범행에 사용하였거나 범죄의 흔적이 있는 물건, 범죄행위의 대상으로 된 물건, 범죄와 범죄자를 적발하며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 물건을 말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상 증거물은 그것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얻어냈는가를 조서에 밝혀 증거물첨부결정서를 붙여 사건기록과 함께 그 사건을 조사심리하는 기관이 보관한다. 그리고 사건을 조사심리하는 기관이 보관할 수 없는 증거물은 봉인하여 관계자에게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다. 또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 예심원, 검사, 재판소에 보낼 때에는 증거물을 사건기록과 함께 넘겨주어야 하며, 수사·예심기관이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줄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증거문건을 검증조서 등과 함께 사건기록에 붙이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6조, 제48조).

관계법조항	형사소송법 제46조 : 증거물은 그것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얻어냈는가를 밝힌 조서와 증거물첨부결정서를 붙여 사건기록과 함께 그 사건을 조사심리하는 기관이 보관한다. 사건을 조사심리하는 기관이 보관할 수 없는 증거물은 봉인하여 관계자에게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증거로 되는 물건.

## ○ 항의

북한의 형사소송법상 항의란 판결·판정 또는 관리문건들이 당정책과 법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것을 변경하거나 시정할 것을 요구하여 해당 상급기관에 제기하는 검사의 의견을 말한다. 북한에서 상소제도는 피소자·변호인·손해배상청구자 등 재판관계자의 의견제기(불복신청)에 근거하여 제2심재판소가 제1심 재판소에서 내린 판결 또는 판정의 합법성과 근거

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특히 검사의 불복신청은 이를 항의하고 하여 재판 관계자들의 불복신청인 상소와 용어상 구별하고 있다. 항의는 검사의 준법성감시기능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되며, 또한 당정책에 맞게 법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하고, 재판기관 기타 국가관리기관·기업소·단체들의 사업을 부단히 개선강화하도록 보장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한다. 검사의 항의에는 판결에 대한 항의, 판정에 대한 항의, 위법부당한 관리문건에 대한 항의가 있다.

<p>관 계 법 조 항</p>	<p>형사소송법 제251조 : 제1심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 피소자, 변호인, 손해배상청구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으며 검사는 항의할 수 있다. 상소, 항의가 제기되면 그 판결, 판정은 집행되지 않는다.</p> <p>형사소송법 제253조 : 시(구역), 군검찰소 검사는 해당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도(직할시)검찰소 검사는 해당 도(직할시)재판소 및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특별검찰소 검사는 해당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중앙검찰소 검사는 각 도(직할시)재판소 및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다. 하급검찰소 검사의 항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상급검찰소 검사는 그 항의를 취소하여야 한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판결, 판정이 법에 어긋나게 내려졌다고 인정될 때 재판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검사의 행위</p>

○ 상 소

제1심 재판소가 내린 판결이나 판정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검사 이외의 소송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제2심 재판소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에서는 검사가 제2심재판소에 대하여 제1심 재판소가 내린 판결 또는 판정의 합법성과 근거성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항의라고 하여 다른 재판관계자들의 불복신청인 상소와 용어상 구별하고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상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가 내린 판결이나 판

정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심판결의 합법성과 근거성을 심사함으로써 판결의 정당성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제2심재판소는 제1심판결이나 판정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자료와 상소자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 또는 판정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여야 한다.

한편 북한 형사소송법 제273조가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는 상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제1심판결이나 판정에 대하여 제2심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 제2심재판소가 제1심판결 등을 심사하여 내린 판정은 종국적이어서 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소는 판결이나 판정의 전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나 판결서 또는 판정서의 등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소장을 제1심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하며(동법 제252조), 제2심재판소는 상소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동법 제260조).

북한에서는 상소제도는 당이 요구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입장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인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는데 복무하고 또한 하급재판소에 대한 상급재판소의 지도방조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한다.

<p>관계법조항</p>	<p>형사소송법 제251조 : 제1심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 피소자, 변호인, 손해배상청구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으며 검사는 항의할 수 있다. 상소, 항의가 제기되면 그 판결, 판정은 집행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59조 : 제2심재판소에서는 사건기록과 상소, 항의자료에 근거하여 제1심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으며 과학적인 증거자료에 기초하였는가를 일반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p>
<p>북한용례</p>	<p>조선말대사천(사회과학출판사, 1992) : 재판소가 내린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검사 그 밖의 소송당사자들이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p>

## II. 特別訴訟節次에 관한 用語

### ○ 비상상소

비상상소라 함은 확정된 판결이나 판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중앙재판소에 제기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는 소송상의 제도로써 북한 형사소송법 제275조는 『확정된 판결·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날 때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은 비상상소의 절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이 비상상소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확정된 판결·판정에서 당 사법정책의 정확한 관철과 법령해석 및 적용에서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방치할 수 없는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에 있다고 한다. 비상상소는 이미 확정되어 집행되었거나 집행 중에 있는 판결이나 판정을 시정하기 위한 소송상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이나 판정의 존엄성과 권위를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상상소제도의 의의가 상실되므로 북한에서도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한다. 또한 비상상소제도는 북한에서 2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상소심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한 법령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확정판결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상 비상상소의 대상은 각급 재판소에서 내린 모든 확정판결과 판정이다. 따라서 중앙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하고 내린 판정도 다시 비상상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중앙재판소 판사회의가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하고 내린 판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상상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중앙검찰소 소장은 법령의 정확한 준수와 그 집행을 감시할 헌법상 임무로부터 중앙재판소 판사회의 판정에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 자기의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형사소송법상 비상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확정된 판결·판정에 나타나 있는 위법성과 무근거성이다. 비상상소 제기의 근거가 되는 위법성과 무근거성이라 함은 법을 위반한 것이 사건기록상 명

백히 나타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정도가 당 정책의 정확한 집행과 법령의 해석 및 그 적용의 통일성을 보장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정도로 중중하고 본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한국의 형사소송법도 비상상소를 인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비상상소와 비교할 때 청구권자 및 효력 등에서 차이가 있다. 즉, 한국의 비상상소제도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되는 때에 검찰총장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파기판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북한의 비상상소제도는 청구권자가 중앙검찰소 소장과 중앙재판소 소장이며, 판결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도록 되어 있다.

관계법조항	형사소송법 제275조 :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날 때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은 비상상소의 절차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278조 : 비상상소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서 법을 본질적으로 어겼다는 것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을 때에 할 수 있다.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날 때 그것을 중앙재판소에 제기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는 소송상 제도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확정된 판결, 판정이 당 사법정책에 어긋나며 근본적인 점에서 법을 위반하였을 때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함으로써 당 사법정책과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요구를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제도

○ 재심

북한 형사소송법상 재심이라 함은 판결 또는 판정이 확정된 후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확정판결 또는 판정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상 제도를 의미한다. 재심은 확정판결이나 판정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라는 점에서 미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제도인 상소와 구별되며, 사실오인을 시정하기 위한 비상구제절차인 점에서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고 청구권자가 중앙재판소 소



장이나 중앙검찰소 소장으로 되어 있는 비상상소와 구별된다.

한국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북한 형사소송법에는 재심이 판결의 받은 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인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북한 형사소송법 제287조에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은 그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고, 구 형사소송법 제271조에서는 무죄판결에 대한 재심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외에도 재심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법조항	형사소송법 제286조 : 판결 또는 판정이 확정된 사건의 재심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을 때 제기한다. 1.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았던 증거가 거짓이었을 때 2. 판결,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로써 재판할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알려졌을 때
북한용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 재판소의 판결이나 판정이 확정된 후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그 판결, 판정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미 내린 판결, 판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것 법학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1) : 판결, 판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새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그 판결, 판정을 마스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소송상 제도



[부록 I]

# 北韓의 刑事關聯 法令 立法動向



[부록 I]

北韓의 刑事關聯 法令 立法動向

○ 소군정시기의 형사관련 입법동향 (1945.8.15 ~ 1948.9.8)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형법일반	• 벌금액 개정에 관한 건	1946. 1. 1
	• 채형과 벌금병과에 관한 건	1946. 1. 1
	• 결정·지령·명령등 위반에 관한 건	1946. 1.26
	• 농산물매상불응등 처벌에 관한 건	1946. 1.26
	• 조세채납처벌에 관한 건	1946. 2.26
	• 과료액개정에 관한 건	1946. 3.11
	• 축우절도범처벌에 관한 건	1946. 3.15
	• 국가·사회단체·소비조합재산보호에 관한 법령	1946.12.16
	• 뇌물 및 기타 직무태만처벌에 관한 법	1946.12.26
	• 개인재산보호에 관한 법령	1947. 1.14
	• 생명, 건강, 자유, 명예보호에 관한 법령	1947. 1.14
	• 봉건유습잔재를 퇴치하는 법령	1947. 1.24
	• 인민보건을 침해하는 죄에 관한 법령	1947. 1.24
	• 果實現物稅滯納 及 脫稅者罰則에 관한 決定書	1947. 1.27
• 자유형각개정에 관한 결정서	1947. 2. 3	
형사소송법	• 사법기관의 형사재판에 관한 규정	1946. 5.14
	• 檢察所豫審 及 保安機關의 刑事事件審理에 관한 法令	1946. 6.20
	• 『사법기관의 형사재판에 관한 규정』중 추가개정에 관한 결정서	1947. 2. 3
법원·법무	• 재판소조직에 관한 건	1945.11.23
	• 檢察所組織 及 設置에 관한 件	1945.11.27
	• 辯護士의 資格監督 及 登錄에 관한 件	1945.11.28
	• 임시인민위원회사법국 재판소, 검찰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기본원칙	1946. 3. 6
	• 임시인민위원회사법국 재판소, 검찰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기본원칙 증보	1946. 4.19
• 임시인민위원회회결정서	1946. 6. 8	

분 야	법 령 명	공포예정일
법원·법무	· 수수료, 일당 등 금액개정에 관한 건	1946. 6.20
	· 재판소, 검찰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기본원칙 중 개정의 건	1946. 7. 9
	· 판사선거에 관한 결정서	1947. 1.14
	· 공선변호사보수에 관한 건	1947. 1.20
	· 참심원 일당금에 관한 건	1947. 1.20
	· 변호사에 관한 규정(1947년)	1947. 2. 7
	· 『임시인민위원회사법국 재판소, 검찰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기본원칙』 중 개정에 관한 결정서	1947. 8.27
	· 참심원의 재판활동참가협조에 관하여	1948. 2.12

○ 1948년 헌법시대 (1948. 9. 8 ~ 1972. 10. 27)

분 야	법 령 명	공포예정일
형법일반	· 중앙은행권을 위조 또는 그 위폐를 사용함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1949. 7. 9
	· 중앙은행권을 위조 또는 그의 위폐를 사용함에 대한 처벌에 관한 상임위원회정령 승인에 관하여	1949. 9.10
	· 형법 채택에 관하여	1950. 3. 3
	· 이승만괴뢰정부의 국방군의 불의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대책에 관하여	1950. 6.25
	· 전시조건하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형법적용에 관한 지도적 지시	1950. 7.22
	· 미제국주의와 그 주구 이승만 매국도당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편으로 도주한 민족반역자들의 물산을 등록하며 이를 처분할 데 관한 결정서	1951. 1. 5
	· 적에게 임시 강점당하였던 지역에서의 반동단체에 가담하였던 자들을 처벌함에 관하여	1951. 1. 5
	· 미제국주의자와 그 주구 이승만매국역도와 결탁하여 인민을 탄압하고, 애국자를 무참히 학살한 악질반국가적 범죄자를 처단하는 데 관하여	1951. 4.17
	· 조선인민군 복무자와 그의 가족들중 적의 일시적 강점시기에 죄를 범한 자들에게 형사책임 및 사회적 재를 면제함에 관하여	1954. 2.23
	·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보상로동에 관한 규정	1968. 7.
	· 벌금에 관한 규정	1972. 4.17

분 야	법 령 명	공포예정일
형사소송 법	· 형사소송법 채택에 관하여	1950. 3. 3
	· 전시에 노동자, 사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결근한 사건 및 직장 또는 작업에서 임의로 리탈한 사건을 참심원의 참가없이 시, 군(구역) 인민재판소의 판사 단독으로 심리함에 관하여	1950. 9.18
	· 자수자취급절차에 관한 규정	1951. 2.10
	· 인민의 신소 및 소원을 제때에 바르게 해결하는 조치	1952.12.17
	· 형사소송법 제83조와 제84조를 변경함에 관하여	1954. 6.15
	· 형사소송법 제8조에 보충을 가함에 관하여	1954. 6.15
	· 반혁명분자와의 투쟁을 강화할 데 관하여	1957. 5.31
	· 신소·청원에 관한 규정	1962. 1.2.
	· 신소·청원처리활동을 강화할 데 대하여	1968.10.24
	· 신소·청원 및 검열에 관한 규정	1970. 2. 3
법원·법무	· 대사실시에 대하여(1949년)	1948. 9.10
	· 공증소에 관한 규정	1948.11. 1
	· 변호사에 관한 규정(1948년)	1948.11. 1
	· 인민군재판소에 관한 규정	1948.11. 1
	· 집행문을 표기할 수 있는 문서에 관한 규정	1949.11.17
	· 재판소구성법 채택에 관하여	1950. 3. 1
	· 참심원의 로동임금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1950. 3.29
	· 군중심판회에 관한 규정	1951. 2.16
	· 대사실시에 대하여(1952년)	1952.11.18
	· 전시군사재판소에 관한 규정	1952.11.29
	· 미제 무력 침범자들을 반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와 관련하여 대사를 실시함에 관하여	1953. 7.28
	· 판결, 판정의 집행에 관한 규정	1956. 9.25
	· 조선인민의 민족적 명절 8·15해방 15주년을 맞이하여 대사를 실시함에 관하여	1960. 8. 9
	· 검찰기관에 관한 규정	1961. 8.23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20주년에 즈음하여 대사를 실시함에 대하여	1968. 6. 6
· 대사를 실시함에 대하여	1971.11.29	
· 대사를 실시함에 대하여	1972. 1.25	

○ 1972년 헌법시대 - 1992년 헌법시대 (1972.10.28 ~ 현재)

분 야	법 령 명	공포제정일
형법일반	• 형 법	1974.12.19
	• 벌금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하여	1975. 4.11
	• 벌금을 올바르게 적용할 데 대하여	1977.10. 2
	•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에 끼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1978. 9.24
	• 벌금규정을 채택할 데 대하여	1980. 6.30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1974.12.19
	• 형사소송법	1992. 1.15
법원 · 법무	•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20돐에 즈음하여 대사를 실시함에 대하여	1975. 9.22
	• 재판소구성법	1976. 1.10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30돐에 즈음하여 대사를 실시함에 대하여	1978. 7.19
	•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	1982.12.15



[부록 Ⅱ]

# 現行 北韓刑法 및 刑事訴訟法 全文



[부록 II]

## 現行 北韓 刑法 및 刑事訴訟法 全文

###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刑法

(1987. 2. 5. 최고인민회의 성설회의 결정 제2호로 채택)

#### 제1장 형법의 기본

-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 제2조 국가는 범죄와의 투쟁에서 노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한다.
- 제3조 국가는 모든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
- 제4조 국가는 범죄행위의 엄중성 정도와 범죄자의 개준성 정도를 고려하여 매 범죄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한다.
- 제5조 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하는 행위를 감행한 자라 하더라도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 제6조 국가는 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죄행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자수한 자에 대하여서는 관대히 용서한다.
- 제7조 이 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 밖에서 죄를 범한 우리나라공민과 우리나라에서 죄를 범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외교 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형사책임은 그때마다 외교적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 다른 나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거나 조선공민을 침해하

는 죄를 범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 범죄행위를 수행한 당시의 형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종전 형법에서 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죄로 보지 않거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종전 법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 제2장 범죄 및 형벌에 대한 일반규정

### 제1절 범 죄

제9조 범죄는 국가주권과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제10조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꼭 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그와 유사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침해대상과 사회관계, 주관적 표징과 범인의 표징의 한계를 넘어 류추할 수 없다.

제11조 범죄행위를 한 당시에 14살 이상 되는 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14살 이상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교양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만성정신병, 일시적인 정신이상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가리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의료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죄를 범한 자가 판결을 내릴 당시에 정신병상태에 있을 때에는 의료처분을 적용하며 회복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술에 취하여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 형사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 및 사회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해치려는 위급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방위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지 않았다면 범죄로 되지 않는다.

제14조 형사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급한 사태를 긴급히 피하는 데 그 길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한 결과 일어난 손실이 구원한 이익보다 적을 때에는 범죄로 되지 않는다.

제15조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범죄의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범죄의 준비자와 미수자에 대한 형벌은 범죄행위의 위험성 정도, 범죄의 실현 정도, 범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같은 것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16조 범죄행위를 감행하다가 도중에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그만둔 범죄행위에 대하여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지로 한 행위가 다른 무거운 범죄의 표징을 갖춘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제17조 범죄조직체에서 주모자와 추종자는 그 조직체가 목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하며 주모자는 보다 엄격히 처벌한다.

제18조 범죄조직체가 아닌 공범에서 추진자, 방조자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실행자, 추진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그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행위의 위험성 정도를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19조 범죄를 감행할 당시에 관계하지 않고 범죄가 감행된 다음에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주었거나 또는 범죄가 감행되었거나 준비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0조 해로운 긴급사태를 능히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 제2절 형 벌

제21조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 형
2. 로동교화형
3. 선거권박탈형
4. 재산몰수형
5.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제22조 사형, 로동교화형은 죄를 범한 자에게 적용하는 기본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은 부가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과 재산몰수형은 함께 줄 수 있다.

제23조 범죄행위를 한 당시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 수 없으며 임신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제24조 로동교화형 기간은 6개월부터 15년까지로 한다.

로동교화형은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제25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류되어 있는 기간은 로동교화형 기간에 계산하여 넣는다

제26조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범죄에 대하여서만 적용할 수 있다.

재판소는 반국가 범죄사건을 재판할 때에는 선거권 박탈문제를 심의하여야 한다.

선거권의 박탈기간은 4년을 넘을 수 없으며 로동교화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27조 재산몰수형은 반국가범죄에만 적용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을 전부 국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이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가족이 최저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일용 필수품과 돈을 남겨놓아야 한다.

제28조 재산몰수형이 취소되었거나 죄가 없어서 사건이 기각되었을 때에는 몰수하였던 재산을 돌려준다.

현물로 돌려줄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에 해당하는 값을 물어준다.

제29조 재산몰수대상자가 재산담보처분이 있기 전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가운데서 법이 따로 정한 순위에 따라 물어준다. 그러나 재산담보처분이 있는 다음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물어주지 않는다.

제30조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준 일정한 자격을 완전히 빼앗거나 일시적으로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재판소는 이 법 제79조, 제81조, 제94조, 제98-100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자격을 박탈할 것인가, 자격정지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의하여야 한다.

자격정지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으며 로동교화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31조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형벌을 적용한다.

형벌은 범죄의 성격, 범죄의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감행정도, 범죄의 결과, 범죄자의 개준성 정도같은 것을 참작하여 정한다.

앞항의 경우 이 법 해당 조항에 규정된 형벌의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32조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 무겁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주모자와 주동분자인 때
2. 여러번 또는 상습적으로 혹은 여럿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3. 잔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4. 자기의 보호 밑에 있거나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5. 전시 또는 재해상태를 리용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제33조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추종자와 피동분자인 때
2. 처음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3. 강한 정신적 자극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4. 미성인이 죄를 범하였을 때
5.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 죄를 범하였을 때
6. 자백 또는 고백하였을 때

제34조 재판소는 특별한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보다 더 낮게 형벌을 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판결서에 밝히고 해당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형벌의 종류는 바꿀 수 없다.

제35조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개의 죄를 함께 재판할 경우에는 매개 범죄별로 해당한 형벌을 정한 다음 범죄의 총체적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범죄들 가운데서 형벌을 가장 높이 정한 조항의 형벌에 처한다.

제36조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판결이 확정된 다음 그 형벌의 집행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새로 범한 죄에 대하여 따로 형벌을 정하고 그것을 남은 형기에 합한다. 이 경우 해당 형벌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제37조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 판결을 받은 자의 개준성 정도, 범죄의 위험성 정도에 비추어 그를 교화소에 보내어 로동교화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1. 3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의 유예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
  2. 3년을 넘어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의 유예기간은 5년부터 7년까지
-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에 새로운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게 내렸던 판결의 집행은 끝난 것으로 인정한다.

제38조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에 새로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집행을 유예한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범한 죄에 대하여 정한 형벌에 합할 수 있다.

형벌을 합하는 경우 로동교화형 기간은 15년을 넘을 수 없다.

제39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형벌은 특사 또는 대사로 면제한다.

특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 실시하며 대사는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가 실시한다.

제40조 로동교화형을 받은 자가 범죄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교화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의 절반이 지난 다음 남은 기간의 로동교화형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로동교화형을 받고 있는 자를 형기가 끝나기 전에 내놓을 데 대한 제의는 로동교화형을 집행하는 해당 교화소가 하며 이 제의는 재판소가 심의 판정한다.

제41조 특사, 대사를 받은 자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자들에 대하여서는 특사, 대사를 받은 날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날부터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람과 같이 인정하며 법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42조 죄를 범한 때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1.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죄에 대하여서는 8년
2. 5년을 넘어 10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죄에 대하여서는 10년
3. 10년을 넘는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죄에 대하여서는 15년

반국가범죄와 고의적 살인죄에 대하여서는 앞항의 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43조 이 법 제42조에 규정된 기간이 넘기 전에 범죄자가 새로운 죄를 범하였을 때,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였을 때, 형사사건 제기결정이 있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 제3장 반국가범죄

#### 제1절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

제44조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하였거나 폭동에 참가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추진자, 주모자, 주동분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 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5조 공화국에 반항할 목적으로 간부들과 애국적 인민들에 대하여 테로행위를 감행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 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준비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6조 공화국을 전복, 문란, 약화시키거나 그 밖의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7조 공화국공민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48조 공화국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간첩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9조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추기거나 거기에 자금을 대주어 공화국에 대하여 무장간섭을 하게 하거나 외교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며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약을 폐기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0조 반국가적 목적 밑에 파괴암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1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감행한 자는 3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절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제52조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그와 야합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을 탄압, 박해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정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53조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 해외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위한 투쟁을 탄압, 박해하는 적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3절 반국가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죄

제54조 반국가범죄자 또는 반국가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 자로서 공범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5조 반국가범죄가 준비되고 있거나 감행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 또는 반국가범죄가 감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 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4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 제1절 사회주의적 소유를 침해하는 범죄

제56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훔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럿이 공모하여 또는 대량 혹은 중요한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1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7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혹은 중요하거나 대량의 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2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8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속여가진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중요한 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9조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실행하는 자 혹은 관리일군이 직무상 또는 의무실행상 자기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중요한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0조 이 법 제56-59조에 지적된 여러 가지 행위를 하여 략취한 총량이 대량인 경우에는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1조 특히 대량 또는 특히 중요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략취한 자는 6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2조 책임일군이 비법적으로 상금, 우대제, 생활비를 적용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공동탐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3조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강도한 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재산을 강도하였거나 여러번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혹은 무기, 흥기를 리용하여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를 죽게 하였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6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4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 손상시킨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엄중한 손해를 주었거나 방화, 폭파같은 위험한 방법으로 파괴, 손상시켰거나 인명피해를 가져오게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5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과실로 파괴, 손상시켜 엄중한 손해를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66조 화폐, 국가유가증권, 공화국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폐를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것인 줄 알면서 써먹은 자는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7조 돈표, 물자인수위임장, 량표같은 것을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것인 줄 알면서 써먹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8조 리기적 목적으로 공화국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폐를 팔았거나 산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비법적으로 거래한 화폐는 몰수한다.

제69조 상습적으로 암거래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제70조 허가없이 물건을 다른 나라에 내가거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밀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대량 또는 상습적으로 혹은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밀수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를 관리일군이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제71조 철도, 수상, 항공, 운수부문 일군이 운수규정과 로동규률을 어겨 기차, 배, 비행기를 전복, 파괴, 손상시켰거나 그 정상적 운행에 지장을 주었거나 인명피해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많은 인명에 피해를 주었거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2조 인민경제계획을 되는데로 세우거나 국가계획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하거나 계획 및 계약규률을 어기는 행위를 여러 번 하여 인민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에 큰 혼란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로

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3조 자재공급일군이 고의적으로 자재공급 또는 판매규률을 여러번혹심하게 어겨 경제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에 큰 지장을 주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4조 많은 원료, 자재, 자금 또는 특히 중요한 설비 같은 것을 류용, 낭비, 사장하여 인민경제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에 큰 지장을 주었거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에 엄중한 손해를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5조 원료, 자재를 비롯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무책임하게 보관, 취급하여 그것을 많이 부패, 변질, 류실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6조 기업관리의 책임일군이 설비에 대한 점검, 보수를 규정대로 조직하지 않았거나 설비를 되는대로 다루게 하여 그것을 파손시켰거나 상당한 기간 생산을 멈추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7조 설비와 물자를 비법적으로 팔거나 주거나 바꾸거나 훔쳐다가 자기기관, 단체에서 쓰거나 다른 기관, 단체에 넘겨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기관, 단체에 넘겨준 대가로 돈 또는 물건을 받아먹을 목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훔쳐가지고 있거나 돈 또는 물건을 받고 설비와 물자를 기관, 단체에 비법적으로 넘겨준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8조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제품규격, 제품검사에 관한 규정을 어겨 오작품 또는 불합격품을 생산하였거나 생산하게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엄중한 손해를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9조 오작설계로 시공하게 하거나 설계문건이 없이 또는 설계를 어겨 오작시공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0조 농업생산의 과학기술공정을 어겼거나 농산작업을 조잡하게 하여 농업생산에 큰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1조 집짐승을 기르는 일군이 위생방역 또는 사양관리에 관한 규정을 어겨 많은 집짐승을 죽게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2조 상품공급과 판매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큰 불편을 준 자 또는 상품의 성질을 비법적으로 고쳤거나 값을 속여 판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3조 계량계측기구의 눈금과 량을 비법적으로 고친 자 또는 계량계측기구의 눈금과 량이 틀린다는 것을 알면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3절 국토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84조 많은 토지를 람용하였거나 폐경시킨 자 또는 토지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많은 토지를 류실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5조 광석, 석탄 그 밖의 지하자원을 되는대로 캐여 국가에 엄중한 손실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6조 과실로 산불을 일으켜 산림자원에 많은 손실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7조 림지의 나무를 되는대로 또는 허가없이 찍거나 산을 개간하여 산림자원에 엄중한 손실을 준 자는 6개월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8조 허가없이 또는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 혹은 금지된 방법으로 물고기, 리로운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여 수산자원, 동식물자원에 손실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9조 강하천 또는 농경지에 해로운 물질을 흘려보내거나 유독가스를 방출시키는 것과 같은 공해현상을 일으켜 수산자원과 농업생산에 해를 주었거나 인민생활에 큰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0조 국가건물 또는 공공시설물을 제때에 보수하지 않아 못쓰게 만들었거나 그 수명을 짧게 하였거나 구조를 비법적으로 고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1조 강하천보호에 관한 법규를 어겨 동뚝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였거

나 강하천보호림을 찍은 자는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4절 사회주의노동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92조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의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 보호 및 노동안전시설을 갖추어 주지 않아 인명피해 또는 그 밖에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3조 노동안전기술규정과 작업규칙을 어겨 인명피해 또는 그 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4조 자동차, 트랙도르를 운전하는 자가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어겨 인명피해 또는 그 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 명의 인명피해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5조 사회주의분배원칙을 고의적으로 어겨 노동의 량과 질에 대한 평가를 심히 그릇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6조 여성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직종의 로동을 시킨 자는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5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하는 범죄

제97조 국가에서 보존관리하는 문화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고의적으로 손상시킨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8조 탐욕, 질투 그 밖에 비렬한 동기 밑에 저작, 발명, 창의고안, 문학 예술작품을 고의적으로 그릇되게 평가하여 몰살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창작품을 자기의 이름으로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9조 유치원, 탁아소일군이 어린이에 대한 보호관리를 심히 불성실하게 하여 중상을 입게 하였거나 죽게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00조 의료일군이 환자에 대한 치료와 간호를 심히 불성실하게 하였거나 약품을 잘못 주어 건강에 큰 장애를 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환자를 죽게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01조 의료일군이 아닌 자가 리기적 목적에서 의료행위를 하여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불구로 되게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02조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거나 마약, 독약을 제조, 보관, 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6장 국가의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 제1절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 103조 반국가적 목적이 없이 집단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사회질서를 흑심하게 문란시키는 것과 같은 소동을 일으킨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여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살인, 파괴같은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항의 행위를 한 주모자와 주동분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04조 폭행, 협박, 모욕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일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05조 사회적 혼란과 국가에 대한 불신임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짓 또는 부정확한 풍설을 퍼뜨려 사회에 혼란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06조 리기적 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문서, 공민증, 증명서를 감추었거나 처분하였거나 또는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것인줄 알면서 써먹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7조 화물수송 또는 소포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방사성, 폭발성, 인화성 물질을 부쳤거나 부쳐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6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8조 법이 정한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9조 경비근무를 수행하는 자가 근무규정을 어긴 결과 경비대상물에 엄중한 손실을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0조 군사적 경비 및 차단근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반항하여 그의 근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1조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를 훔쳤거나 빼앗거나 고의적으로 파괴, 손상시킨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2조 무기, 탄약, 그 밖의 군수물자를 잘못 보관취급하여 그것을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3조 무기, 탄약같은 것을 비법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4조 폭약, 퇴관같은 폭발물을 훔쳤거나 비법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5조 국가 및 군사비밀을 누설한 자 또는 비밀문서를 분실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6조 다른 사람이 비행기 또는 배를 몰고 허가없이 우리나라 령공, 령해에 들어왔거나 령공, 령해 밖으로 나가며 지정된 항로, 비행고도를 비롯한 비행, 항해규칙을 어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비행기 또는 배를 몰수할 수 있다.

제117조 허가없이 국경을 넘는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8조 국경관리부문에 근무하는 관리일군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를 도와준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9조 허가없이 지정된 항해구역 또는 어로구역을 마음대로 리탈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0조 범죄에 대한 거짓신고를 한 자 또는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이 수사, 예심, 재판심리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1조 로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춘 자로서 공범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2조 이 법 제63조, 제141조, 제160조의 범죄가 준비되고 있거나 감행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3조 교화받고 있는 자 또는 구구보전처분결정에 따라 갇혀 있는 자가 도망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시설을 파괴하였거나 경비원에게 폭행을 하고 도망친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절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

제124조 관리일군이 리기적 목적으로 직권 또는 직위를 람용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게 한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5조 관리일군이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6조 관리일군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사업을 지연시켰거나 무질서하게 만들며 국가에 손실을 주었거나 인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것과 같이 직무를 태만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7조 관리일군이 공민의 신소, 청원을 고의적으로 묵살하였거나 그릇되게 처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8조 관리일군이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9조 사람을 불법구속, 불법구인하였거나 범죄자를 비법적으로 놓아준자 또는 진술을 강요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하였거나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0조 관리일군이 퇴물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퇴물을 대량 또는 강요하여 받았거나 책임적 직위에 있는 자가 퇴물을 받은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퇴물로 받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 제7장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131조 파렴치할 불량자적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2조 미성인에게 범죄를 감행하도록 추기거나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하며 불량자로 되게 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3조 관리일군이 아닌 자가 관리일군으로 가장하여 또는 관리일군이 다른 관리일군의 직권을 행세하여 국가의 위신을 훼손시켰거나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4조 돈 또는 물건을 걸고 도박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제135조 주은 돈 또는 물건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진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6조 늙은이, 어린이 또는 로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가 그들을 고의적으로 돌보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7조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거나 자기의 보호 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 팔  
시하여 그의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자살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  
화형에 처한다.

제138조 죽을 위협에 처하여 있는 사람을 해당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거나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방조를 주지 않아 그를 죽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9조 묘를 파괴, 손상한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0조 도적질한 물건인줄 알면서 그것을 사거나 팔아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8장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 제1절 공민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

제141조 탐욕, 질투 그 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또는 다른 중한 범죄를 감출  
목적에서 또는 잔인하게 혹은 여러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방  
법으로 사람을 죽였거나 부양간호해야 할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을 죽인 자  
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에 처한다.

사람을 죽인 행위가 가벼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제142조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때문에 일어난 발작적 격분상태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3조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거나 직무집행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4조 사람을 과실로 죽인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5조 사람의 생명에 위협할 정도의 상해를 입혔거나 눈, 귀 그 밖의 기  
능을 잃게 하였거나 얼굴에 흉한 허물을 남기는 상처를 입혔거나 또는  
정신병을 일으키게 하였거나 로동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중상을 입힌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가 죽었거나 잔악한 방법으로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6조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때문에 일어난 발작적 격분상태에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7조 과실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8조 사람의 건강에 해를 주는 경상을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잔악한 방법으로 경상을 입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9조 사람을 때리는 것과 같은 폭행을 한 자는 6개월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잔악한 방법으로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여러번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0조 리기적 목적 또는 복수적 동기에서 어린이를 훔쳤거나 감춘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1조 비법적으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2조 사람을 모욕하였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3조 폭행, 협박하는 방법으로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리용하여 여성을 강간한 자, 15살에 이르지 못한 여성과 성교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여성에 대하여 하였거나 륭간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4조 직무상 또는 의무실행상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강요하여 성교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여성에 대하여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를 타락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절 공민의 개인소유를 침해하는 범죄

제 155조 공민의 재산을 훔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공민의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56조 공민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여러번 혹은 여럿이 공모하여 공민의 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57조 공민의 재산을 속여먹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58조 공민의 재산을 횡령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59조 공민의 재산을 특히 대량 약취한 자 또는 재산약취행위를 하여 여러번 법적 처벌을 받은 자로서 공민의 재산을 대량 약취한 경우에는 6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60조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협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공민의 재산을 강도한 자는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혹은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를 죽게 하였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61조 공민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刑事訴訟法

(1992. 1. 15.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채택)

###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제2조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활동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한다.

제3조 국가는 반국가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어 극소수의 적대분자와 주동분자를 철저히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옹계 배합한다.

제4조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활동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한다.

제5조 국가는 공민들 속에서 준법교양과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범죄를 미리 막는다.

제6조 국가는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데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한다.

### 제2장 일반규정

제7조 수사, 예심, 검찰, 재판기관들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취급과 처리는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방법, 절차에 따라 한다.

제8조 수사는 사회안전, 국가보위기관의 수사일군이 한다.

검사는 필요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예심은 사회안전, 검찰, 국가보위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제10조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는 검사만이 한다.

제11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류할 수 없다.

사람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48시간 안으로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체포일자, 리유 같은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검사는 비법적으로 체포구류되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

제12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한 뒤에 그것이 나타났을 때에는 형사사건을 기각한다.

1. 14살에 이르지 못한 자의 행위인 때
2. 피심자, 피소자의 행위가 죄로 되지 않을 때 또는 죄로는 되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못할 때
3.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지났을 때
4. 특사, 대사로 형벌이 면제되었을 때
5. 확정된 판결, 판정이 있는 행위인 때
6. 형사책임을 추궁받아야 할 자가 죽었을 때

제13조 피심자, 피소자를 사회적 교양을 통하여 개조할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형벌을 주지 않고 사회적 교양에 넘길 수 있다.

사회적 교양에 넘긴 자가 형법에 규정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기간에 새로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에게 적용하였던 교양처분을 취소하고 형벌을 줄 수 있다.

제14조 사건의 조사심리는 조선말로 한다.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역을 붙인다.

다른 나라 사람은 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자기 나라 글로 써낼 수 있다.

제15조 재판은 각급 재판소가 하며 형벌의 적용은 재판소의 판결로 한다.

제16조 모든 재판은 공개한다.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

향이 미칠 수 있을 때에는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는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제18조 형사재판 이외의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 사실이 죄로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심리확정되어야 한다.

제19조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보상할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보상청구는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한 때부터 재판심리를 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손해보상청구에는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 손해보상을 청구하지 못한 피해자는 따로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국가, 사회 또는 공민의 이익을 위하여 재판소에 손해보상청구를 직접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 손해보상청구는 해당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서 함께 심리한다. 그러나 그것이 형사사건심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따로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는 재판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

손해보상청구의 기각은 재판에서만 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손해보상청구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이미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한 재판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에도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 다시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제21조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은 자신과 친척이 해당 형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 참가할 수 없다.

제22조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 인민참심원은 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23조 제1심재판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24조 이 법 제93조의 요구를 어기여 사건을 과장, 날조한 것이 재판소가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낸 판정의 근거로 된 때 이미 그 사건을 예심하였던 예심원은 다시 예심할 수 없다.

제25조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는 자기가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으로 될 수 없다.

제26조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은 해당 사건의 조사심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증인은 손해보상청구자로 될 수 있다.

제27조 소송관계자는 이 법 제21-26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 또는 검사에게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수사일군, 예심원,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을 바꾸어줄 데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를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은 재판에서 사실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사실심리가 시작된 다음에 그들을 바꾸어야 할 사유가 생겼거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사실심리가 시작된 다음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 재판에 참가한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을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은 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은 바꿀 대상으로 지적된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을 내놓고 그 밖의 재판소성원들이 판정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재판소성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는 바꾸어야 한다.

제30조 검사는 수사일군, 예심원,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을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일 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검사의 해결이 있을 때까지 수사, 예심은 계속하여야 한다.

제31조 형사사건의 취급처리기간은 시간, 날, 달, 해로 계산한다.

기간은 그것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다음 날 또는 다음 시간부터 계산한다.

날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날 24시로 끝난다.

달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달 가운데서 그 기간을 계산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이 지나면 끝난다. 마지막 달 가운데서 그 기간을 계산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이 없을 때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이 지나면 끝난다.

기간이 끝나는 날이 국가적 명절일이거나 일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첫 로동일이 지나면 기간이 끝난다.

제32조 상소장, 항의서 그 밖의 문서를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냈을 때에는 그 기간 안에 낸 것으로 인정한다.

이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이 그 기간을 늘여줄 수 있다.

제33조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은 형사사건을 조사해명하는 데 동원된 기간의 생활비 또는 로력보수와 러비를 자기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받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부른 기관에서 러비를 받는다.

제34조 수사, 예심, 재판준비, 재판에서는 진술서, 조서, 결정서, 판결서, 판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수사, 예심에서 만든 진술서, 조서와 그것을 고친 데는 작성자의 도장과 진술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으며 결정서에는 작성자가 도장을 찍는다.

재판준비조서와 재판조서에는 재판서기와 재판장이 도장을 찍으며 고친 데는 작성자가 도장을 찍는다.

판결서, 판정서에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도장을 찍는다.

사건조사에 립회인이 참가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립회인도 도장을 찍는다.

담보처분한 재산, 압수품, 몰수품, 증거물에 대한 조서에는 품명, 형태, 품질, 규격, 수량, 소유관계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작성자, 소유

자, 립회인이 도장을 찍는다.

### 제3장 증거

제35조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36조 범죄의 표징을 이루는 사실들과 형벌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 같은 것은 반드시 증거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37조 증거는 증인의 말, 감정결과, 검증결과, 증거물, 증거문서, 피소자의 말 같은 데서 얻어낸 것이어야 한다.

제38조 증거물로는 범죄행위를 감행하는 데 썼거나 범죄의 흔적이 있는 물건, 범죄행위의 대상으로 된 물건, 범죄와 범죄자를 적발하며 범죄사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 물건이 될 수 있다.

제39조 증거문서로는 수사, 예심기관과 재판소가 만든 각종 조서, 진술서 같은 소송서류를 비롯하여 그 내용이 증거적 의의를 가지는 문서가 될 수 있다.

제40조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법이 정한 데 따라 제한을 받음이 없이 필요한 모든 증거를 찾아낼 수 있으며 그것을 리용할 수 있다.

제41조 증거는 균중의 힘에 의거하며 과학적 방법에 기초하여 찾아내야 한다.

제42조 범죄현장 또는 증거물을 발견하였거나 증거로 되는 사실을 안 사람은 그에 대하여 사회안전, 검찰, 국가보위기관에 곧 알리고 범죄현장상태가 달라지거나 증거물이 못쓰게 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야 한다.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가 진술을 요구하거나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물건, 문서를 요구할 때에는 누구나 그에 응하여야 한다.

제43조 찾아낸 증거는 조서, 진술서 같은 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고착시켜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사진을 찍거나 도면을 그리거나 록음, 록화할 수 있다.

제44조 증거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45조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법이 규정한 데 의하여 수집되고

조사검토된 증거들을 자기의 확신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46조 증거물은 그것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얻어냈는가를 밝힌 조서와 증거물첨부결정서를 붙여 사건기록과 함께 그 사건을 조사심리하는 기관이 보관한다.

사건을 조사심리하는 기관이 보관할 수 없는 증거물은 봉인하여 관계자에게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다.

제47조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 예심원, 검사, 재판소에 보낼 때에는 증거물을 사건기록과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제48조 썩거나 못쓰게 될 수 있는 증거물은 수사, 예심기관의 결정으로 임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겨줄 수 있다.

수사, 예심기관이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줄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거문건을 검증조서 같은 것과 함께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다.

제49조 판결, 판정, 사건기각결정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증거물의 처리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

## 제4장 수사와 예심

### 제1절 수 사

제50조 형사사건취급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로부터 시작된다.

수사를 할 필요가 없는 형사사건취급은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거나 예심시작결정을 한 때로부터 시작된다.

제51조 수사시작결정은 수사일군이 한다.

제52조 수사시작결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신고 또는 직접 얻은 범죄자료에 기초하여 한다.

제5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범죄행위가 준비되고 있거나 수행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곧 사회안전, 검찰, 국가보위기관에 신

고하여야 한다.

제54조 범죄에 대한 신고는 써내거나 말로 할 수 있다.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주소와 이름을 밝혀야 한다.

신고를 받는 기관은 신고자에게 거짓신고를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고를 받을 때에는 신고조서를 만들어야 하며 조서에는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신고자에게 거짓신고에 대한 책임을 알려준 정형 같은 것을 적어야 한다.

제55조 사회안전, 검찰, 국가보위기관은 범죄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관할에 관계없이 다 받아야 하며 받은 신고 가운데서 자기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곧 해당 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56조 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기관은 1개월 안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고자는 신고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 해당 상급기관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

제57조 수사일군은 수사를 하여야 할 범죄가 있다는 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곧 그 근거를 밝힌 수사시작결정을 하고 수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58조 수사일군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로부터 24시간 안으로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검사는 결정으로 수사시작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9조 수사는 법에 따라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넘기는 것을 임무로 한다.

제60조 수사일군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진술을 받을 수 있다.

수사일군은 진술자에게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1조 수사일군은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검증, 검진, 수색, 압수를 할 수 있으며 감정을 맡길 수 있다.

제62조 수사일군은 범죄자를 적발한 다음에는 증거수집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때를 놓치면 범죄의 흔적이 없어지거나 증거를 얻을 수 없거나 고착시킬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이 증거수집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경우에는 수집할 수 있다.

제63조 수사일군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다음 그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때에는 검사에게 알리고 사건을 넘기는 결정을 하여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제64조 수사일군은 자기의 관할지역 밖에서 개별적인 수사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관할지역의 수사일군에게 맡길 수 있다.

개별적인 수사행위를 맡은 수사일군은 수사를 정확히 하고 그 결과를 곧 회보하여야 한다.

제65조 다음과 같은 때에는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1. 범죄자가 범죄행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감행하다가 또는 감행한 즉시에 발견되었을 때
2. 피해자 또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 범죄혐의자를 범죄자라고 가리켰을 때
3.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에서 범죄의 흔적이 나타났을 때
4. 범죄혐의자가 도망치려 하거나 범죄자로서 뒤쫓기우고 있을 때
5. 범죄혐의자의 사는 곳이 딱딱하지 않을 때

제66조 이 법 제65조에 따라 체포한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를 구금하려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으로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겨야 한다.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에 범죄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내놓아야 한다.

제67조 수사일군은 범죄자가 적발, 확인되면 곧 그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고 예심에 넘겨야 한다.



제68조 수사일군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다음 이 법 제12조에 규정된 사유가 나타났을 때에는 수사시작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69조 수사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검사는 수사행위에 참가하거나 사건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적인 수사행위를 바로잡거나 수사일군에게 필요한 수사행위를 할 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 제2절 예심의 임무와 관할

제70조 예심은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피심자를 확정하고 그의 범죄사실을 남김없이 밝히며 련루자를 적발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을 임무로 한다.

제71조 예심원은 현실적으로 나타난 행동과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피심자가 범한 죄의 성격, 죄를 저지른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행위의 정도와 결과, 피심자가 범죄수행에서 논 역할과 책임의 정도 같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들을 사실 그대로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제72조 예심원은 사건의 전모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들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피심자, 증인, 감정인을 심문하며 감정을 맡기거나 검증, 검진, 수색, 압수를 할 수 있다.

제73조 예심원은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안으로 끝내야 한다.

예심을 더하기 위하여 재판소에서 돌려보낸 사건에 대한 예심은 1개월 안으로 끝내야 한다.

제1항의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특별히 복잡한 사건에 대한 예심은 이 법 제108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까지 할 수 있다.

제74조 예심원은 자기 관할지역 안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예심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 밑에 해당 관할예심원에게 알리고 범죄자가 사는 곳 또는 사건을 적발한 지역의 해당 관할예심원이 예심할 수

있다.

반국가범죄사건은 국가보위기관 예심원이 예심하며 일반범죄사건은 그것을 적발한 사회안전기관 또는 검찰기관 예심원이 예심한다.

군사상 범죄사건과 군대 안의 일반범죄사건은 군사검찰기관 예심원이 예심하며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범한 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의 정상적 활동을 침해하는 범죄사건은 그것을 적발한 철도안전부, 철도검찰소 예심원이 예심한다.

제75조 예심원은 사건이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긴급한 예심행위만을 한 다음 검사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넘기는 결정을 하고 해당관할 예심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76조 예심원은 자기의 관할지역 밖에서 개별적인 예심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맡길 수 있다.

개별적인 예심행위를 맡은 예심원은 예심을 정확히 하고 그 결과를 10일 안으로 회보하여야 한다.

제77조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범하였거나 혼자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한 사건으로서 그것이 서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할 사건이 따로 제기되었을 때에는 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범한 사건이라도 사건을 분리하는 결정을 하고 따로 갈라서 취급할 수 있다.

사건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8조 예심자료는 예심원의 승인없이 공개할 수 없다.

제79조 예심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검사는 예심행위에 참가하거나 예심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적인 예심행위를 바로잡거나 예심원에게 필요한 예심행위를 할 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 제3절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

제80조 예심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으면 48시간 안으로 예심시작결정을 하고 예심을 시작하여야 한다.

예심원은 예심과정에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와 범죄자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검사에게 알리고 예심시작결정을 하거나 해당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81조 예심원은 증거를 찾아내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피심자를 확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2조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는 예심원의 이름, 결정하는 날자, 피심자의 이름, 적용한 형법조항,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되는 리유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83조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였을 때 그것을 48시간 안으로 피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피심자에게 알려줄 때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며 그 정형을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 밝혀야 한다.

제84조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 결정서등본을 곧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85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이미 적용한 형법조항을 바꾸거나 보충할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4절 피심자심문

제86조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추궁결정을 알려준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그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87조 구류되어 있지 않는 피심자를 불러 심문하려 할 때에는 그에게 소환장을 보낸다.

피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오지 않을 때에는 구인한다.

구인은 구인결정서에 따라 사회안전, 국가보위기관이 집행한다.

제88조 구류되어 있는 피심자를 심문할 때에는 예심원의 요구에 따라 계호 일군이 그를 예심장소까지 호송한다.

제89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도망쳤거나 사는 곳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수색결정을 한다.

수색결정서에는 피심자를 찾아내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적어야 하며 그 결정서를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류의 구속처분결정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90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중병에 있거나 일시적으로 정신이상이 생겨 예심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을 중지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대책을 세워야 한다.

앞항의 경우 법의감정의사의 감정 또는 인민병원의 의사협의감정이 있어야 한다.

제91조 예심을 중지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예심을 계속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하여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92조 피심자가 정신병상태에서 죄로 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죄를 범한 뒤에 정신이상이 생긴 것이 입증되었으며 앞으로도 그의 정신상태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사건을 기각하며 검사는 의료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앞항의 경우 법의감정의사의 감정이 있어야 한다.

제93조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범죄사실을 시인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받은 피심자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

제94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자백하였거나 고백한 경우에도 자백이나 고백과 결부되는 다른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피심자의 자백이나 고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그의 죄행이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

피심자가 자기의 죄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것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때에는 피심자의 죄행이 증명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95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여럿인 때에는 서로 련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피심자가 없는 데서 피심자심문을 하여야 한다.

범죄사건을 밝히는 데 필요할 때에는 피심자와 피심자, 피심자와 증인을 서로 대면시켜 놓고 심문할 수 있다.

제96조 피심자를 심문할 때에는 피심자가 먼저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말하게 하여야 한다.

제97조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을 심문할 때에는 통역을 붙여야 하며 병어리, 귀머거리로 심문할 때에는 그의 의사표시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야 한다.

예심원은 통역원과 해석인에게 통역 또는 해석을 의식적으로 그릇되게 할 때에는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통역원 또는 해석인이 심문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밝혀야 한다.

제98조 피심자를 심문하였을 때에는 심문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심문조서에는 범죄와 관련하여 피심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피심자가 말한 것을 조서에 자기가 직접 쓰게할 수 있다.

제99조 예심원은 피심자에 대한 심문이 끝나면 그에게 조서를 읽어보게 하거나 읽어준 다음 피심자에게 그가 말한 것이 조서에 옳게 씌여졌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조서를 고칠 데 대한 피심자의 신청이 있을 때 그것이 정당하면 고쳐주며 부당할 때에는 거부하고 그에 대하여 조서에 밝혀야 한다.

### 제5절 구속처분

제100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사건조사를 방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1조 구속처분을 할 때에는 피심자에게 적용한 형법조항과 구속처분을 하는 이유를 밝힌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102조 구속처분결정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검사는 예심원에게 구속처분결정을 하거나 취소하거나 고칠 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103조 구속처분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피심자에게 곧 알려주어야 한다.

제104조 구속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피심자를 구류하는 구속처분
2. 피심자를 자기 집에 억류하는 구속처분
3. 피심자를 정해진 지역 또는 사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구속처분

제105조 구속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하여야 한다.

제106조 구류의 구속처분은 1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심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조사를 방해하거나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할 수 있다.

임신한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 구류의 구속처분을 할 수 없다.

제107조 구류의 구속처분결정에 따라 피심자를 체포할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류의 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피심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결정서등본을 보내야 한다.

제108조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예심을 2개월 안에 끝낼 수 없을 때에는 시(구역), 군 예심기관과 도(직할시)예심기관은 도(직할시)검찰소 소장, 중앙예심기관은 중앙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구류기간을 1개월간 늘일 수 있다.

구류기간을 더 늘이려 할 때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2개월간 다시 늘일 수 있다.

구류기간에 예심을 끝내지 못하였을 때에는 피심자를 내놓고 예심을 계

속할 수 있다.

제109조 피심자를 자기 집에 억류하는 구속처분을 할 때에는 2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보증인으로부터 피심자를 언제든지 예심원 또는 재판소의 요구대로 보내겠다는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110조 피심자를 정해진 지역 또는 사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구속처분을 할 때에는 피심자로부터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11조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과정에 언제든지 리유를 밝힌 결정으로 구속처분을 해제하거나 그 종류를 바꿀 수 있다.

## 제6절 검증과 검진

제112조 수사일군, 예심원은 범죄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찾아내며 증거물의 특징을 고착시키기 위하여 범죄현장 또는 증거물을 검증하며 사람의 몸에서 사건과 관련된 흔적과 특징을 찾아내기 위하여 검진을 한다.

검사와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검증과 검진을 할 수 있다.

제113조 범죄현장에서 찾아냈거나 압수한 물건과 문서는 현장에서 검증한다. 검증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곳에 옮겨 검증할 수 있다.

제114조 검증과 검진을 할 때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하며 녀성을 검진할 때에는 녀성을 립회시켜야 한다.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검증에 감정인을 참가시킬 수 있으며 법의감정 의 사에게 검진을 시킬 수 있다.

제115조 검증과 검진을 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서에는 검증, 검진한 차례로 그 당시의 상태와 특징, 검증과 검진결과를 써야 하며 략도와 사진을 붙일 수 있다.

법의감정사가 검진하였을 때에는 그가 검진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116조 수사일군, 예심원은 장소나 물체의 상태와 특징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리실험을 할 수 있다.

심리실험을 할 때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하며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 제7절 감 정

제117조 수사일군, 예심원은 사건조사에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에는 감정을 맡겨야 한다.

검사와 재판소도 감정을 맡길 수 있다.

제118조 비정상적인 주검, 몸에 입은 상해정도와 정신병의 증상이 있는 증인, 범죄자의 정신상태는 반드시 감정하여야 한다.

제119조 감정은 국가의 전문적인 감정기관에 맡겨야 한다.

해당 부문의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때에는 그 부문의 국가적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감정시킬 수 있다.

제120조 감정을 맡길 때에는 감정할 것들과 감정인의 의무를 밝힌 결정, 판정을 하여야 하며 결정서, 판정서를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121조 감정을 맡길 때에는 감정인에게 감정하여야 할 것으로 자료와 함께 알려주며 감정하는데 필요한 것을 그가 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22조 감정을 맡은 기관 또는 감정인은 의무적으로 감정하여야 하며 감정을 맡긴 기관이 부를 때에는 제때에 와야 한다.

제123조 감정인은 감정이 끝나면 감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감정서에는 감정에서 밝혀낸 사실을 그대로 써야 한다.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때에는 감정서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124조 감정인은 감정을 맡긴 기관의 승인 밑에 기록상 자료를 보거나 증인 또는 범죄자에게 물어볼 수 있으며 감정을 맡긴 기관에 감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요구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전문일군을 붙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5조 감정자료가 정확하지 못하거나 감정에서 사실이 잘 밝혀지지 못하였을 때 또는 감정결과에 의문이 생길 때에는 이유를 밝힌 결정, 판정으로 그 감정인에게 다시 감정시키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 수 있다.



제126조 감정을 맡기는 기관은 감정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을 피심자, 피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27조 감정을 맡긴 기관은 감정에서 명백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감정을 심문할 수 있다.

감정인을 심문할 때의 절차는 이 법 제98-99조, 제148조에 따른다.

제128조 한 사건의 감정에 여러 감정인이 참가한 경우 그들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때에는 그들이 모두 자기의 의견을 말하게 한 다음 개별적으로 심문하거나 서로 대면시켜 놓고 심문할 수 있다.

### 제8절 수색과 압수

제129조 수사일군, 예심원은 범죄자를 찾아내며 범죄사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물건이나 문서를 찾아내고 고착시키기 위하여 수색, 압수를 할 수 있다.

제130조 수색은 범죄자가 숨어있거나 범죄사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물건, 문서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제131조 수색, 압수는 검사의 승인 밑에 한다.

수사일군, 예심원이 수색, 압수하려 할 때에는 수색, 압수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 제65조에 따라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검사의 승인없이 그의 몸 또는 거처를 수색하고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

제132조 수색, 압수를 할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은 수색, 압수결정서를 수색, 압수당하는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33조 수색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안전원 그 밖의 경비원으로 수색장소에 경비를 세울 수 있다.

제134조 수색, 압수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낮에 하여야 한다.

제135조 수색, 압수를 할 때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건 또는 문서를 압수할 때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를 립회시켜야 한다.

체신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편지, 전보 같은 것을 압수하려 할 때에는 해당 체신기관의 대표자를 립회시켜야 한다.

녀성의 몸을 수색할 때에는 녀성을 립회시켜야 한다.

제136조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대표부, 령사대표부, 무역대표부의 건물 또는 살림집을 범죄 및 범죄자의 적발과 관련하여 수색하거나 물건, 문서 같은 것을 압수하려 할 때에는 우리나라 외교부를 통하여 외교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색, 압수를 할 때에는 검사가 참가하며 해당 대표부의 대표자와 우리나라 대외사업일군을 립회시켜야 한다.

제137조 수색하는 과정에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비밀을 알았을 때에는 그것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8조 압수를 할 때에는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는 물건과 문서만을 압수하여야 한다.

물건 또는 문서를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품목록을 만들어 사건기록에 붙여야 하며 압수당한 사람에게는 압수품목록등본을 주어야 한다.

제139조 수색, 압수를 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서에는 수색, 압수를 한 결과와 함께 제기된 의견을 밝혀야 한다.

### 제9절 증인심문

제140조 증인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보고 느낀 것이 있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법 제25-26조에 규정된 사람과 정신병 그 밖의 신체상 결함으로 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본 사실을 옳게 리해할 수 없거나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으로 될 수 없다.

제141조 증인심문은 증인이 있는 곳에 가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할 때에는 증인을 불러다 심문할 수 있다.

제142조 증인은 예심원이 부르면 제때에 와야 한다. 정당한 리유없이 오지 않을 때에는 그를 구인할 수 있다.

구인은 구인결정에 따라 사회안전, 국가보위기관이 집행한다.

검사와 재판소가 증인을 구인할 때에도 앞항을 적용한다.

제 143조 증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여야 하며 물음에 대답하여야 한다

제 144조 증인은 심문을 받을 때 위협이나 강제로부터 보호되며 자기가한 진술을 조서에 직접 쓰거나 수정 또는 첨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45조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 또는 병어리, 귀머거리를 증인으로 심문할때의 절차는 이 법 제97조에 따른다.

제 146조 증인심문은 다른 증인이 없는 데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예심원은 증인심문이 끝날 때까지 그 사건의 증인들이 서로 련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필요할 때에는 증인을 대면시켜 놓고 심문할 수 있다.

제 147조 14살에 이르지 못한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교원, 부모, 후견인 그 밖의 보호자들 가운데서 립회인을 세워야 한다.

제 148조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먼저 증인의 신분, 피심자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다음 심문하는 리유와 증인의 의무를 설명하여 주고 그에게 범죄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할 때에는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 149조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먼저 말하게 하여야 한다.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이 법 제98-99조에 따라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 150조 예심원은 사건해결과 관련된 사람 또는 물건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와 비슷한 여러 사람 또는 물건을 피심자 혹은 증인에게 보이고 갈라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2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하며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 제10절 재산담보처분

제 151조 예심원은 형법에 재산몰수형이 규정되어 있는 사건을 취급할 때에

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담보처분을 하여야 한다.

예심원은 범죄행위로 입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와 국민들의 재산상손해를 보상시켜주기 위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는 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2조 예심원은 피심자의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손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53조 재산담보처분을 하려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밝힌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산담보처분을 할 때에는 그에 관한 결정서를 담보처분 당하는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2명의 립회인을 세우고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만을 담보처분하여야 한다.

재산담보처분을 한 다음에는 재산담보처분조서와 2통의 재산목록을 만들어야 하며 재산목록 1통은 재산보관자에게 주어야 한다.

예심원은 재산보관자에게 담보처분한 재산을 정확히 보관할 데 대한 책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재산담보처분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해제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154조 재산담보처분결정에 근거하여 담보처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재산이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밝힌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155조 담보처분한 재산 가운데서 썩거나 못쓰게 될 수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는 해당 기관에 넘겨주고 그 이유를 밝힌 결정서와 근거문건을 사건 기록에 붙여야 한다.

### 제11절 예심종결

제156조 예심원은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 만한 충분한 증거를 얻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심을 끝낸다는 것을 피심자에게 알려주고 그의 범죄와 관련되는 사건기록을 보여주어야 하며 신청할 것이 없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피심자의 신청이 정당할 때에는 예심을 더하며 부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그것을 거부하여야 한다.

피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예심을 더하였을 때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을 피심자에게 보여야 한다.

제157조 예심을 끝내는 수속은 검사의 참가 밑에 하여야 한다.

제158조 예심을 끝낼 때에는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159조 예심이 끝나면 예심원은 기소장을 만든다.

기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1. 피심자와 그가 죄를 범한 날자, 시간, 장소와 범죄의 동기, 목적, 수단, 방법, 결과 같은 예심에서 조사확증된 사실과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
2. 피심사의 형사책임을 확정하며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사정
3. 피심자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형법의 조항

기소장에는 피심자, 재판에 불러야 할 사람들의 이름, 사는 곳, 피심자를 구류한 날자, 증거물, 손해보상청구와 재산담보처분 정형을 밝힌 문건을 붙여야 한다.

제160조 예심원은 예심을 끝낸 날부터 3일 안으로 기소장을 사건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

제161조 예심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형사사건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1. 이 법 제12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
2. 예심을 시작한 다음 6개월이 지나도록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 만한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하였을 때

사건을 기각하는 결정은 피심자, 피해자,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사건을 기각할 때에는 구속처분, 재산담보처분에 관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야 하며 증거물 가운데서 임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것은 몰수하고 그 밖의 물건은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62조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 립회인, 피해자, 피심자와 피심자의 보증인은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7일 안으로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받은 검사는 3일 안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예심원은 제1항의 의견이 자기에게 제기되었을 때에는 48시간 안으로 의견을 붙여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심은 계속하여야 한다.

## 제5장 검사의 사건처리

제163조 예심원으로부터 기소장과 사건기록을 받은 검사는 10일 안으로 그것을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제164조 검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중심을 두고 기소장과 사건기록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건의 전모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들이 정확하게 밝혀졌으며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있는가
2. 예심과정에 이 법에 규정된 요구들이 지켜졌는가
3.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형법조항이 옳게 적용되었는가
4. 기소장이 옳게 만들어졌는가

제165조 검사는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게 예심이 충분하고 옳게 진행되었을 때에는 피심자를 재판소에 기소한다.

피심자를 재판소에 기소할 때 대하여 결정한 검사는 기소장과 함께 사건기록을 재판소에 넘겨야 한다.

제166조 검사는 예심을 추가 또는 보충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서면으로 지적하여 예심원에게 돌려보낸다.

검사는 필요에 따라 기소장을 다시 만들거나 고칠 수 있다.

제1항에 의하여 예심을 추가 또는 보충한 기간은 이 법 제73조에 규정된 예심기간에 넣는다.

제 167조 검사는 사건심리를 중지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소를 중지하여야 하며 사건을 기각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건을 기각하여야 한다.

사건을 기각할 때의 증거물처리절차는 이 법 제161조 제3항에 따른다.

제 168조 검사는 이 법 제13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급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를 사회적 교양에 넘기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6장 변호

제 169조 피심자, 피소자는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받은 때부터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정하여 그의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제 170조 변호사와 피심자, 피소자의 근친자, 소속단체 대표자는 변호인이 될 수 있다. 그 밖의 사람은 검사 또는 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변호인으로 될 수 있다.

제 171조 피심자가 변호인을 선정하였을 때 예심기관은 3일안으로 피심자가 선정한 변호인에게 그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 172조 변호인이 선정됨이 없이 사건이 재판소에 기소되었을 때에는 재판소가 해당 변호사회에 의뢰하여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 173조 변호인은 법에 따라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고 피심자, 피소자의 권리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한다.

제 174조 변호인은 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안 때부터 피심자, 피소자를 만나 담화할 수 있다.

예심기관 또는 재판소는 피심자, 피소자가 요구할 때에는 변호인과 만나게 해주어야 한다.

제 175조 변호인은 예심이 끝난 다음 언제든지 사건기록을 볼 수 있다.

제 176조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를 변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확인할 수 있다.

제 177조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받은 검사는 3일 안으로 처리하고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7장 재판

### 제1절 재판의 임무와 관할

제178조 재판은 법에 따라 재판소가 재판관계자들의 참가 밑에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범죄자와 범죄사실을 정확히 확정하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옳게 분석평가한 데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임무로 한다.

제179조 재판소는 균중을 각성시키며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현지재판을 조직진행한다. 이 경우에는 노동자, 농민의 대표가 범죄자의 죄행을 폭로규탄하게 할 수 있으며 피소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이 있거나 범죄의 틈을 준 해당 관계자들을 참가시켜 교훈을 찾도록 할 수 있다.

제180조 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제181조 도(직할시) 재판소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1. 반국가범죄
2. 형법의 조항에 사형 또는 15년까지의 노동교화형이 규정된 일반범죄  
도(직할시)재판소는 도(직할시) 안의 인민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 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도(직할시)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 안의 인민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제182조 군사재판소는 다음의 사건을 재판한다.

1.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군인, 사회안전원이 범한 죄
2. 군사기관, 사회안전기관의 종업원이 범한 죄
3. 이 밖에 법에 따라 그 관할에 속하는 범죄

제183조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범한 죄와 철도운수사업의 정상적 활동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제184조 중앙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의 제1심 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중앙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어떤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사건 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같은 급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제185조 재판소는 관할지역 안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사건심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자가 사는 곳, 적발된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재판할 수 있다.

제186조 사건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같은 급의 여러 재판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 시작한 재판소에서 재판한다.

제187조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죄를 범한 피소자 또는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명의 피소자를 함께 재판하게 되는 경우 그 가운데서 일부가 상급재판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상급재판소에서 재판하며 일부가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특별재판소에서 재판한다.

군사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 사건일 때에는 군사재판소 이외의 재판소에서 재판할 수 있다.

제188조 다른 재판소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다시 다른 재판소에 넘겨줄 수 없다.

넘겨받은 사건이 다른 급 또는 다른 종류의 재판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상급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재판소에 그것을 넘겨주어야 한다.

제189조 재판소는 사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 제2절 재판준비

제190조 기소된 사건은 재판준비회의를 거쳐 재판에 넘긴다.

제191조 재판준비회의는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재판준비회의에는 재판서기가 참가한다.

제192조 재판준비회의에는 검사가 참가한다. 재판준비회의날자를 3일 전에

검사에게 알린다. 검사가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준비회의를 할 수 있다.

제193조 재판준비회의에서는 판사가 사건보고를 한 다음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해당 판정을 한다.

판정은 재판소성원들이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한다.

제194조 재판준비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예심에서의 사건조사가 충분히 되었는가
2. 기소사실이 근거가 있는가
3. 형법조항이 옳게 적용되었는가
4. 예심에서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를 지켰는가
5. 피심자의 신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6. 피심자에 대한 구속처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195조 재판준비회의에서는 사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예심이 충분하며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심자를 재판에 넘기는 판정을 한다.
2. 예심에서의 사건조사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기소장에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잘못이 있을 때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한다.
3. 기소된 범죄사실자체에는 다름이 없으나 법조항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판정으로 그것을 고친다.
4. 사건을 기각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각하는 판정을 한다.

제196조 재판준비회의에서 피심자를 재판에 넘기는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할 날자, 장소, 재판심리에 참가시킬 증인, 감정인과 재판심리를 공개 또는 비공개하겠는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197조 재판준비회의에서 내린 판정에 대하여서는 검사만이 상급재판소에 항의할 수 있다.

검사는 판정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재판에 넘기는 판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3일 안으로, 그 밖의 사건에 대하여서는 10일 안으로 항의서를 재판소에 내야 한다.

재판소는 검사가 항의하기 위하여 요구할 때에는 판정서등본을 판정을 내린 날부터 2일 안으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198조 재판소는 피소자에게 재판심리를 하기 3일 전에 기소장등본을 보내야 한다.

재판준비회의에서 기소된 범조항을 고치는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피소자와 변호인에게 재판심리를 하기 3일 전에 판정서등본을 보내야 한다.

제199조 재판소는 재판심리를 하기 3일 전에 검사, 피소자, 변호인에게 재판심리날자를 알려야 한다.

제200조 사건이 재판소에 기소된 다음에 그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문제는 재판소만이 해결한다.

재판심리가 있기 전에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신청과 의견은 사건을 받은 판사가 혼자서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201조 판사는 현지재판의 교양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료해를 할 수 있다.

증인, 감정인을 대상으로 현지료해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와 함께 만나야 한다. 검사의 동의 밑에 판사 혼자서도 만날 수 있다.

### 제3절 재판심리

제202조 재판심리는 재판장인 판사와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재판심리에는 재판서기가 참가한다.

제203조 한 사건은 같은 재판소성원으로 재판한다.

재판심리를 하다가 재판소성원을 바꾸었을 때에는 재판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

제204조 재판심리는 검사와 변호인의 참가 밑에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가 참가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제205조 재판심리에는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피소자가 재판심리에 참가할 것을 거부하거나 재판을 회피할 때에는 피

소자를 구인하여 재판한다. 피소자를 구인하는 절차는 이 법 제87조에 따른다.

제206조 손해보상청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는다.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는 따로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207조 재판장은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재판심리와 재판관계자들의 활동을 지휘하며 그들이 재판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통제한다.

제208조 재판심리에서 검사는 피소자의 죄행을 철저히 폭로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며 그 죄행의 정도에 맞는 법적 책임이 피소자에게 지워지도록 한다.

제209조 재판심리에서 변호인은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고 피소자의 행위가 옳게 분석평가되며 그의 법적 권리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한다.

제210조 재판장은 재판시작을 알리고 피소자가 본인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한 다음 그에게 기소장등본을 받았는가를 묻고 재판에서의 그의 권리를 알려 준다.

제211조 재판장은 피소자와 재판관계자들에게 재판소성원과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을 알려준 다음 그들을 바꿀 데 대한 의견이 없는가를 묻는다.

제212조 재판장은 재판심리에 부른 증인, 감정인 가운데서 오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피소자와 재판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으며 새 증거를 신청할 것이 없는가를 묻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213조 사실심리는 재판서기가 기소장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기소사실을 인정하는가를 묻는다.

제214조 재판소는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심리순서를 정한다.

제215조 피소자에 대한 심문은 피소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먼저 말하게 한 다음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 재판장, 인민참심원의 차례로 한다.

- 여러 명의 피소자를 함께 재판할 때에는 변호인이 심문한 다음 그 사건의 다른 피소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준다.
- 제216조 여러 명의 피소자를 함께 재판할 때 재판소는 사건의 성질을 고려하여 피소자들을 한 사람씩 재판정에 불러다 심문할 수 있다.
- 제217조 피소자가 재판장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 재판질서를 문란시킬 때에는 재판소의 판정으로 피소자를 재판정에서 내보내고 심리를 계속한다. 이 때에는 사실심리를 끝낸 다음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 제218조 증인에 대한 심문은 순서에 따라 한 사람씩 재판정에 불러다 한다. 재판장은 먼저 증인이 본인이 틀림없는가, 피소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거짓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 다음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게 한다.
- 제219조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를 재판에서 심리할 것을 요구한 사람이 먼저 증인에게 질문하게 한다. 그 다음에 재판관계자들이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증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 재판장은 피소자에게도 증인에게 물어볼 기회를 준다. 이미 심문한 증인을 다른 증인 앞에서 다시 심문하거나 증인들을 대면시켜 놓고 심문할 수 있다. 14살에 이르지 못한 증인을 심문할 때의 절차는 이 법 제147조에 따른다.
- 제220조 심문을 받은 증인은 그 사건의 심리가 끝나기 전에 재판소에서 떠날 수 없다. 재판장은 필요에 따라 재판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미 심문을 받은 증인을 그 사건심리가 끝나기 전에 보낼 수 있다.
- 제221조 재판심리에서는 필요한 경우 예심조서를 읽는 방법으로 증거를 검토할 수 있다.
- 제222조 재판심리에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을 때에는 언제든지 증인심문을 그만둘 수 있다.
- 제223조 감정인은 처음부터 재판에 참가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감정시킬 때에만 참가시킬 수 있다.

제224조 재판심리에서 감정을 맡기거나 감정인을 심문할 때의 절차는 이법 제120-121조, 제126-128조에 따른다.

재판심리에서 감정을 새로 시킨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감정결과를 말하게 하며 감정서를 내게 한다.

제225조 재판소는 감정결과가 완전하지 못하거나 의문이 있을 때 또는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다시 감정을 시킬 수 있다.

제226조 재판심리에서는 증거물과 증거문서들을 철저히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재판관계자들은 사실심리과정에 언제든지 증거물과 증거문서들을 조사검토할 수 있다.

제227조 재판소는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관계자들의 참가 밑에 범죠헌장을 검증하거나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앞항의 검증 또는 증거자료의 확인은 재판소의 위임에 따라 재판장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서를 만들어야 하며 그것은 재판심리에서 검토되어야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228조 재판소는 증거를 더 수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심리를 미루고 재판관계자들의 참가 밑에 증거를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재판소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낸다.

제229조 재판장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을 때에는 증거심리를 끝내고 손해보상청구에 대한 심리를 한 다음 재판관계자들에게 심리할 것이 더 없는가를 묻고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피소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이 있거나 범죠헌의 틈을 준 해당 관계자가 재판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를 내세워 교훈을 찾게 한 다음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제230조 사실심리가 끝나면 재판소는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의 순서로 론고와 변론을 하도록 한다.

재판심리에 노동자, 농민의 대표가 참가한 때에는 그가 먼저 피소자의 죄행을 폭로규탄하게 한다.

제231조 재판심리에서 검토되지 않은 증거는 론고 또는 변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제232조 재판장은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이 보충적인 론고 또는 변론을 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그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233조 재판장은 론고와 변론이 있는 다음 피소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준다.

재판소는 사건해결에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이 피소자의 마지막 말에서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심리하기 위하여 재판심리를 다시 한다.

제234조 재판장은 피소자의 마지막 말이 끝나면 재판심리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고 인민참심원들과 함께 합의실에서 판결을 채택하기 위한 협의를 한다.

제235조 재판소는 피소자가 중병에 걸렸거나 정신이상이가 생겼을 때에는 그의 병이 나을 때까지 사건심리를 중지한다.

피소자의 정신병이 나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건을 기각하며 의료처분을 적용할 데 대한 판정을 한다.

제236조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서를 만든다.

1. 재판날자, 장소
2. 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
4. 피소자의 이름, 신분관계
5. 손해보상청구자의 이름, 사는 곳
6. 재판진행순서에 따라 재판소가 한 모든 행위
7. 재판관계자들과 증인, 감정인들이 제기한 의견과 그들이 한 말
8. 재판심리과정에 재판소가 내린 판정들
9. 론고와 변론의 내용
10. 피소자가 한 마지막 말

제237조 재판조서는 재판이 끝난 날부터 3일 안으로 만들어야 한다.

재판관계자는 재판조서작성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5일 안으로 조서를 볼 수 있으며 조서에 빠진 것이 있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안으로 고칠 데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재판장은 제기된 의견이 옳을 때에는 판정으로 조서를 고치며 부당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판정으로 거부한다.

#### 제4절 기소의 추가와 변경

제238조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이미 기소된 범죄 밖에 새 범조항을 추가하여야 할 새로운 범죄사실이 피소자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새 범조항을 추가는 하지 않으나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범죄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또는 기소된 범조항을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있는 범조항으로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밝힌 판정으로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돌려보낸다.

제239조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기소된 범조항을 가벼운 형벌을 줄 수 있는 범조항으로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계속 심리하여 판결할 수 있다.

제240조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기소된 범죄사실 자체에는 다름이 없으나 범조항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판정으로 고친다.

범조항을 고치는 것이 피소자에게 가벼운 형벌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계속 심리하여 판결하며 그것이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있는 것일 때에는 피소자와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심리를 10일까지 미루어준다.

제241조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피소자 아닌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처리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듣고 형사책임을 추궁할 데 대한 판정을 하여 검사에게 보낸다. 이 경우에 재판소는 구속처분판정을 할 수 있다.



## 제5절 판 결

제242조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을 때에는 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내린다.

제243조 판결을 채택할 때에는 해당 사건을 심리한 판사와 인민참심원만이 참가한다.

제244조 판결을 채택할 때에는 다음의 문제들을 심중히 토의결정하여야 한다.

1. 기소된 범죄행위 자체가 있었는가
2. 범죄행위를 그 피소자가 하였는가
3. 범죄행위가 범죄의 표징을 갖추고 있는가
4. 피소자에게 어떤 형벌을 어느 정도 줄 것인가
5. 제기된 손해보상청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6. 증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7. 구속처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8. 담보처분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245조 판결은 재판소성원들이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한다.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은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의견서는 판결을 내릴 때 읽지 않는다.

제24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1. 피소자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
2. 피소자를 사회적 교양에 넘기는 판결
3. 피소자에게 대사를 적용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판결
4. 피소자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

사회적 교양에 넘기는 판결은 형법 제11조 제2항과 이 법 제13조의 사유가 있을 때 내리며 죄가 없다는 판결은 범죄사실자체가 없거나 피소자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또는 피소자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을 때에 내린다.

제247조 재판소는 손해보상청구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1. 손해보상청구가 정당할 때에는 손해를 보상시킨다.
2. 범죄사실자체가 없거나 피소자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보상청구를 기각한다.
3. 피소자의 행위가 죄로 되지 않을 때에는 손해보상청구를 해결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는 따로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248조 판결, 판정을 내릴 때 증거물과 담보처분한 재산에 대한 처리는 이 법 제161조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제249조 재판소는 판결서를 다음과 같이 만든다.

판결서의 첫 부분에는 재판날자와 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의 이름, 사건명,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 정형, 피소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손해보상청구자의 이름과 사는 곳, 범죄사실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과 그에 대한 증거의 설명, 손해보상청구와 그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 그 밖에 사건의 성질에 따라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문제들을 쓴다.

판결서의 다음 부분에는 피소자에게 죄가 있거나 없다는 것을 밝히며 그에게 적용하는 법조항과 형벌 또는 교양처분을 지적하고 손해보상청구, 증거물, 구속처분, 재산담보처분 같은 것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쓴다.

판결서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절차를 지적한다.

제250조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한다.

제251조 제1심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으며 검사는 항의할 수 있다.

상소, 항의가 제기되면 그 판결, 판정은 집행되지 않는다.

제252조 상소, 항의를 하려 할 때에는 판결서 또는 판정서의 등본을 받은날부터 10일 안으로 상소장, 항의서를 제1심재판소에 내야 한다.

판결서, 판정서의 등본은 판결, 판정을 내린 날부터 2일 안으로 검사, 피소자에게 준다.

제253조 시(구역), 군검찰소 검사는 해당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해

여, 도(직할시)검찰소 검사는 해당 도(직할시)재판소 및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특별검찰소 검사는 해당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중앙검찰소 검사는 각 도(직할시)재판소 및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다.

하급검찰소 검사의 항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상급검찰소 검사는 그 항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4조 제1심재판소는 상소, 항의기간이 지나면 받은 상소장, 항의서를 사건기록과 합친 해당 상급재판소에 올려보내야 한다.

제255조 중앙재판소의 제1심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상소, 항의할 수 없으며 중앙재판소 판사회회에 비상상소만을 제기할 수 있다.

제256조 판결은 다음의 경우에 확정된다.

1. 상소, 항의가 없이 그 기간이 지났을 때
2. 상소, 항의가 있으나 제2심재판소에서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을 때
3. 상소, 항의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을 때

판결의 일부에 대하여 상소, 항의가 있는 경우에 남은 부분은 상소, 항의기간이 지나면 확정된다.

제257조 구류되어 있는 피소자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유예를 하거나 사회적 교양에 넘기는 판결 또는 사건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경우에는 피소자를 곧 놓아주어야 한다.

제258조 로동교화형의 기간은 그 판결을 집행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로동교화형을 받은 피소자가 이미 구류되어 있었을 때에는 구류된 날부터 계산한다.

## 제8장 제2심재판

제259조 제2심재판에서는 사건기록과 상소, 항의자료에 근거하여 제1심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으며 과학적인 증거자료에 기초하였는가를 일반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제260조 제2심재판소는 상소, 항의된 사건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61조 제2심재판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제2심재판에는 검사가 참가하며 변호인이 상소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참가시킨다.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 변호인이 참가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재판을 할 수 있다.

재판소는 제2심재판날자를 재판 3일 전에 검사, 변호인에게 알린다.

제262조 제2심재판은 판사의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며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해당 판정을 한다.

제263조 제2심재판에서는 제1심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게 내려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것을 지지하는 판정을 한다.

제264조 제2심재판에서는 예심 또는 제1심재판소에서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범죄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거나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심하게 어겼을 때에는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예심 또는 제1심재판소에 돌려보낸다. 이 경우에 사건을 어느 단계부터 다시 심리하라는 것을 제2심판정서에 지적하여야 한다.

제265조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심하게 어기어 채택한 판결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재판소구성에 관한 이 법의 요구를 어겼을 때
2. 재판관할을 어겼을 때
3. 피소자를 재판에 참가시키지 않았을 때
4. 법에 따라 기각하여야 할 사건을 기각하지 않았을 때
5. 변호인을 참가시키지 않았을 때

알항의 경우에는 판결 가운데서 상소, 항의가 제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도 제2심재판에서 함께 취소할 수 있다.

제266조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가 관할을 어기어 채택한 판결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해당 관할재판소에 보낸다.

제267조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에서 죄로 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죄

로 된다고 판결하였을 때 또는 기각하여야 할 사건을 기각하지 않았을 때에는 판결을 취소하고 직접 그 사건을 기각한다.

제268조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가 인정한 사실과 맞지 않게 법을 적용하였거나 형벌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재판소에 돌려보낸다.

제269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2심재판소가 제1심재판소의 판결을 직접 고칠 수 있다.

1. 제1심재판소가 적용한 법조항보다 가벼운 형벌이 규정된 법조항으로 고치는 경우
2. 제1심재판소가 정한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로 고치는 경우
3. 제1심재판소에서 부가형벌 또는 대사를 적용하여야 할 것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잘못 적용하였을 경우

제270조 제2심재판소가 새로운 심리를 위하여 돌려보낸 사건을 받은 재판소는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271조 피소자의 상소에 근거하여 판결이 취소된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제1심재판소는 처음에 판결을 내린 재판소가 정하였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없다.

제272조 제2심재판소는 판결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필요할 때에는 제1심재판의 부족점을 따로 판정으로 지적한다. 제1심재판소는 이 지적에 따라야 한다.

제273조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서는 상소, 항의할 수 없다.

제274조 재판소는 판정서등본을 판정을 내린 날부터 2일 안으로 검사와 상소인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 제9장 비상상소와 재심

### 제1절 비상상소

제275조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났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

은 비상상소의 절차로 한다.

제276조 비상상소는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제277조 중앙재판소는 비상상소사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78조 비상상소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서 법을 본질적으로 어겼다는 것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을 때에 제기한다.

제279조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어느 재판소에서 처리한 사건이든지 그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 각급 재판소와 검찰소는 비상상소의 제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자기 관할 안에서 처리된 사건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비상상소에 제기하여야 할 사건은 해당 의견을 붙여 사건기록을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에게 보낸다.

비상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건의 기록은 곧 돌려보낸다.

제280조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사건기록을 요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

제281조 중앙재판소 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내린 판정에 대하여 중앙검찰소가 의견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중앙재판소 판사회회에서 다시 심리해결한다.

앞항의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82조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회회에서 심리해결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회는 중앙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회는 그 성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가하여야 할 수 있다.

판사회의 판정은 회의에 참가한 성원들의 다수가결로 채택한다.

제283조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참가한다.

중앙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날자는 3일 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려야 한다.

제284조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는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중앙검찰소 소장 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해당 판정을 채택한다.

제285조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중앙재판소는 이 법 제263-269조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 제2절 재심

제286조 판결 또는 판정이 확정된 사건의 재심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을 때에 제기한다.

1.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았던 증거가 거짓이었을 때
2. 판결,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로써 재판할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알려졌을 때

제287조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은 그 판결을 받은 자가 죽은 다음에도 제기할 수 있다.

제288조 재심제기의 신청은 개인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검사에게 한다. 앞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1개월 안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자기의 의견을 붙여 그것을 중앙검찰소에 보낸다.

검사의 결심으로 재심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의 절차도 같다.

제289조 중앙검찰소 소장은 재심제기신청리유가 정당할 때에는 중앙재판소에 재심을 제기하며 부당할 때에는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한다.

제290조 재심사건은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제291조 재심사건의 심리는 검사의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며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해당 판정을 한다.

재심사건의 심리날자는 3일 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려야 한다.

제292조 중앙재판소는 재심제기의 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예심 또는 제1심재판소에 보내어 다시 심리하게 하거나 직접 기각하며 재심제기리유가 부당할 경우에는 재심을 거부하는 판정을 한다.

제293조 중앙재판소는 재심사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10장 판결, 판정의 집행

제294조 판결, 판정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한다.

제295조 재판장은 판결, 판정이 확정되면 그 집행을 위하여 해당 집행기관에 집행지휘문건을 보낸다.

1. 로동교화형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판결, 판정확정통지서를 보낸다.
2. 사형판결에 대하여서는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 등본을 보낸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집행원에게 집행문을 보낸다.

제296조 판결, 판정의 집행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사형집행은 검사의 참가 밑에 한다.

제297조 사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제298조 사형집행은 사형집행지휘문건을 받은 후에 하며 재산집행은 집행문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하고 해당 재판소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299조 로동교화형을 받은 자가 중병에 있을 때에는 그의 병이 나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로동교화형을 받은 자가 임신한 자일 때에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집행을 정지한다.



제300조 로동교화형을 받고 있는 자가 병으로 병원에 수용되었을 때 그 기간은 로동교화형 집행기간에 넣는다.

제301조 로동교화형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로동교화형 판결을 내린 재판소 또는 로동교화형 집행기관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직할시)재판소가 판정으로 심리해결한다.

제302조 로동교화형을 받고 있는 자를 형기가 끝나기 전에 내놓는 것은 로동교화형 집행기관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직할시)재판소 또는 중앙재판소가 판정으로 심리해결한다.

제303조 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된 신청은 그 판결, 판정을 내린 재판소 또는 그 판결, 판정을 집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심리해결한다.

제304조 이 법 제301-303조에 따라 제기된 문제를 심리하는 재판소는 심리날자를 3일 전에 검사에게 알리며 제303조의 경우에는 판결을 받은 자와 손해보상청구자를 심리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305조 재산몰수형에 대한 집행은 재판소의 집행원이 한다.

집행원의 집행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서는 그 집행원이 속한 재판소의 판사가 심리해결한다.



## 北韓 刑事法上 法律用語 索引

○ 간첩행위(간첩죄) .....	94
○ 강도(죄) .....	112
○ 거짓진술 .....	184
○ 검 사 .....	176
○ 검 증 .....	185
○ 검 진 .....	186
○ 검찰기관(검찰소) .....	175
○ 결정서 .....	165
○ 계호일군(계호원) .....	198
○ (계획 및 규율위반죄) .....	116
○ 계획수행정형 .....	117
○ 고 의 .....	54
○ 공동탐오(죄) .....	111
○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	149
○ 공민증 .....	135
○ 공 범 .....	69
○ 과 실 .....	55
○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 .....	139
○ 교양처분 .....	60
○ 교화소 .....	76
○ 구금(체포) .....	190
○ 구 류 .....	78
○ 구류기간 .....	202
○ 구류보전처분결정 .....	137

○ 구 속 .....	200
○ 구 인 .....	197
○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약취죄) .....	105
○ 국가보위기관(국가안전보위부) .....	163
○ 국가비밀루설(죄) .....	136
○ 국가유가증권 .....	113
○ 국가주권전복음모(죄) .....	88
○ 국토관리 .....	119
○ 국토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	120
○ 군사검찰기관(군사검찰소) .....	177
○ 군사복무(동원기피죄) .....	136
○ 그만둔 범죄행위 .....	66
○ 기 소 .....	206
○ 기소장 .....	204
○ 기 수 .....	64
○ 긴급피난 .....	63
○ 여성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직종 .....	127
○ (농업생산과학기술공정위반죄) .....	117
○ 도(직할시)재판소 .....	174
○ 동 쪽 .....	122
○ 로동계급적 원칙 .....	46
○ 로동교화형 .....	74
○ 로동보호 .....	124
○ 로동안전기술규정 .....	125
○ 류추할 수 없다 .....	59
○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촉죄) .....	96
○ 미성인 .....	147
○ 미 수 .....	65

○ 민족반역행위(죄) .....	99
○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	98
○ 반국가범죄 .....	87
○ (반국가적) 파괴암해행위(죄) .....	96
○ 반동선전선동(죄) .....	91
○ 방조자 .....	71
○ 범 죄 .....	44
○ 범죄의 준비 .....	65
○ 범죄자의 개준성 .....	49
○ 범죄조직체 .....	67
○ 범죄행위 .....	46
○ 범죄행위를 수행한 당시의 형법의 적용 .....	53
○ 범죄행위의 엄중성 .....	49
○ 범죄협의자 .....	189
○ 법의감정의사 .....	199
○ (법일군의 권력람용죄) .....	145
○ 범질서 .....	56
○ 변호사 .....	180
○ 변호인(의 선정) .....	179
○ 불량자(적 행위죄) .....	147
○ 불법의료죄 .....	131
○ 비상상소 .....	217
○ (빼앗은 죄) .....	109
○ 사건의 기각 .....	192
○ 사양관리 .....	118
○ 사 형 .....	73
○ 사회안전기관(사회안전부) .....	162
○ 사회안전원 .....	203

○ (사회적) 위험성 .....	57
○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	102
○ 사회주의로동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	122
○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하는 범죄 .....	128
○ 사회주의분배원칙(위반죄) .....	126
○ 사회주의적 소유 .....	101
○ 사회주의적 소유를 침해하는 범죄 .....	103
○ 사회협동단체 .....	104
○ 상 소 .....	215
○ 상습범 .....	80
○ (상업질서위반죄) .....	119
○ 선거권박탈형 .....	75
○ (속여가진 죄) .....	110
○ 수 사 .....	182
○ 수사시작결정 .....	183
○ 수사의 감시 .....	191
○ 수색·압수 .....	187
○ 신고서, 신고조서 .....	184
○ 신 소 .....	143
○ 신소·청원묵살(죄) .....	145
○ 실행자 .....	70
○ 심리실험 .....	202
○ 암거래(죄) .....	115
○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 총체적 위험성 .....	83
○ 여럿이 공모 .....	108
○ 예심(예심원) .....	85
○ 예심시작결정 .....	195
○ 예심의 감시 .....	194

○ 예심의 종결 .....	196
○ 예심의 중지 .....	198
○ 예심행위 .....	193
○ 외교특권 .....	52
○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	98
○ (외국인에 의한 조선민족해방운동 및 해외조선동포탄압죄) .....	100
○ 외국화폐매매(죄) .....	114
○ 월권행위(죄) .....	141
○ (유치원·탁아소 어린이보호관리질서위반죄) .....	130
○ 은닉범·불신고범·방임범 .....	72
○ (의료사고죄) .....	130
○ 의료처분 .....	61
○ 인 권 .....	156
○ 인민재판소 .....	169
○ 인민참심원 .....	168
○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	132
○ 자격 박탈·자격정지형 .....	76
○ 자 백 .....	81
○ 재산담보처분 .....	203
○ 재산몰수형 .....	75
○ 재 심 .....	218
○ (재판)관할 .....	209
○ 재판기관(재판소) .....	167
○ 재판조서 .....	208
○ 적아식별원칙 .....	156
○ 정당방위 .....	62
○ (조국반역죄) .....	93
○ 조국반역 행위 .....	92

○ 조국의 통일독립 .....	50
○ 주관적 표징 .....	58
○ 주동분자, 피동분자 .....	79
○ 주모자 .....	68
○ 준법교양 .....	159
○ 중앙재판소 .....	172
○ 증거 .....	213
○ 증거문서 .....	212
○ 증거물 .....	214
○ (증거재판의 원칙) .....	211
○ 직권(참용죄) .....	148
○ 직권람용(죄) .....	140
○ 직무집행(방해죄) .....	134
○ 직무태만(죄) .....	142
○ 진술서 .....	164
○ 집단적 소동(죄) .....	133
○ 집행유예 .....	83
○ 창의고안권 .....	129
○ 철도검찰소 .....	178
○ 청 원 .....	144
○ 초과방위 .....	82
○ 추진자 .....	71
○ 추종자 .....	69
○ 테로행위(테로죄) .....	90
○ 토지보호사업 .....	121
○ 특별재판소(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	170
○ (특히) 대량 .....	107
○ (특히 중요한)대량약취죄 .....	111



○ 판결서 .....	207
○ 피소자 .....	178
○ 피심자 .....	191
○ 피심자심문 .....	200
○ 항 의 .....	214
○ 현지재판 .....	210
○ 형 벌 .....	48
○ 형벌을 정함에 있어 가볍게 보는 조건 .....	81
○ 형벌을 정함에 있어 무겁게 보는 조건 .....	78
○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 .....	53
○ 형 법 .....	43
○ 형사소송 .....	153
○ 형사소송법 .....	154
○ 형사재판 .....	163
○ 형사책임 .....	51
○ 형사책임추궁결정(서) .....	195
○ 화폐위조 및 위조화폐사용(죄) .....	113
○ 횡령(죄) .....	110
○ (훔친죄) .....	108



연구보고 96-7  
北韓法律用語의 分析(Ⅱ) - 刑事法編 -

---

1996년 12월 25일 印刷  
1996년 12월 31일 發行

發行人 朴 松 圭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東 洋 商 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11. 제1-190호

---

값 8,000 원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89-8323-014-2 93360

